

제 3 장

무역구제

제 1 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3.1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거나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이 절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수입 당사자는 다음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2) 제2.5조(관세 철폐)제2항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 3.2 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2항에 기술된 조사의 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자와 협의한다.

2.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제2항다호에 따라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 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 제2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 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 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자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
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당사자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철폐)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
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3.3 조 잠정조치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다
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양
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
3.2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그 당사자는 제3.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3.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3.2조제5항나호
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3.4 조 보상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지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해 상호 합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협의한다. 그 당사자는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상품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 실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5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양해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4조제1항가호 및 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각 상품에 대하여 경우에 맞게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 2 절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3.6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자는, 어느 연도에 부속서 3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의 총 수입물량이 부속서 3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합치되게 그 상품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부속서 3에 포함된 그 당사자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적용하는 관세는 부속서 3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정해진다.

4. 어떠한 당사자도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3.1조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또는

다.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른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5. 당사자는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은 제2.16조(상품무역 위원회)에 언급된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어떠한 당사자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부속서 3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나. 그 조치가 부속서 2-가(관세 철폐)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맺은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이던 해당 상품의 모든 공급은 그러한 모든 추가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 물량은 차기 연도에서의 제1항의 발동 목적상 차기 연도 동안 해당 상품의 수입 물량으로 계산될 수 있다.

제 3 절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3.7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

해진 조치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당사자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당사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잠정적 결과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해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절대적 양 또는 가액 기준으로 측정하여 당사자가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수입된 상품의 상위 5대 공급자 중 하나인 경우, 그 당사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간주된다.

4. 어떠한 당사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제3.1조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5. 어떠한 당사자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4 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 3.8 조

일반규정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6조,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 협정”이라 한다)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자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제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6조제5항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조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최대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충분한 방어권을 고려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에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영어의 사용이 양 당사자에 의해 수용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대한민국이 한국어 서면으로 된 명확화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목적상, 제출된 문서의 의미가 대한민국의 조사 당국에 의해 합리적으로 명확하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목적상, 그 요청이 합리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엄격하게 한정되는 경우

4.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 동안 그들의 견해를 표시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부여된다.

제 3.9 조 통보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15 일전에,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회의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제 3.10 조 공공이익의 고려

양 당사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3.11 조 재심에 의한 종료 이후 조사

양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12 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 3.13 조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1. 반덤핑 협정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대상이 된 조치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덤핑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종결된다.

2. 반덤핑 협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별 마진을 결정할 때, 대표적 수출 판매에 근거하여 덤핑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면, 어떠한 관세도 수출 당사자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3.14 조 최소부과 원칙

당사자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핑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 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

진 미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3.15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5 절 제도 규정

제 3.16 조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1.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은 무역구제 협력을 위한 대화의 포럼이다.
2. 작업반은 다음을 그 기능으로 한다.
 - 가. 다른 쪽 당사자의 무역구제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나.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 다.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자의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 라.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
 - 마.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

-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 2)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과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서의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바. 양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력하는 것

3. 작업반은 통상 연례적으로 회합하며, 필요 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 양허표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3.6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

2.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신선, 냉장 그리고 냉동 쇠고기

HSK 세번 0201.10.0000,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그리고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9,900	9,900	10,098	10,299	10,505	10,71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4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0,930	11,149	11,371	11,599	11,831	12,06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0.0	30.0	30.0	30.0	30.0	24.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발동수준 (메트릭톤)	12,309	12,555	12,806	13,062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0	24.0	24.0	24.0	0	

나.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0203.19.1000 그리고 0203.1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163	163	166	169	172	17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22.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79	183	187	190	194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5.8	14.6	13.5	12.4	11.3	0

다.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0808.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7,500	7,500	7,650	7,803	7,959	8,11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5.0	45.0	45.0	45.0	45.0	45.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8,280	8,446	8,615	8,787	8,963	9,14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3.8	33.8	33.8	33.8	33.8	27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발동수준 (메트릭톤)	9,325	9,511	9,702	9,896	10,094	10,29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	27	27	27	22.5	22.5
이행년도	19	20	21	22	23	24
발동수준 (메트릭톤)	10,501	10,711	10,926	11,144	11,367	11,59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22.5
이행년도	25					
발동수준 (메트릭톤)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					

발동수준은 모든 종류의 수입 사과의 총량과 관련된다. 이행 12년차와 그 이후 이행 24년차까지 각 연도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라. 아래에 포함된 맥아 및 맥주맥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003.00.1000 그리고 1107.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14,000	14,000	14,280	14,565	14,856	15,15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502.0	502.0	479.0	455.0	432.0	408.0
1107.10.0000	263.0	263.0	258.0	252.0	246.0	24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5,457	15,766	16,081	16,403	16,731	17,06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385.0	361.0	338.0	315.0	291.0	268.0
1107.10.0000	216.0	207.0	199.0	190.0	181.0	139.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발동수준 (메트릭톤)	17,407	17,755	18,110	18,472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244.0	221.0	197.0	174.0	0	
1107.10.0000	127.0	115.0	103.0	91.5	0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록 2-가-1의 제12항을 참조할 것.

마. 아래에 포함된 감자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8.13.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7,900	37,900	38,658	39,431	40,219	41,02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55.0	455.0	436.0	426.0	416.0	406.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41,844	42,681	43,535	44,405	45,294	46,199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6.0	351.0	336.0	321.0	306.0	235.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발동수준 (메트릭톤)	47,123	48,066	49,027	50,00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15.0	195.0	175.0	155.0	0	

바. 아래에 포함된 **인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302.19.1210, 1302.19.1220 그리고
1302.19.129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00	300	306	312	318	32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331	337	344	351	358	36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발동수준 (메트릭톤)	373	380	388	395	403	41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566.0	566.0
이행년도	19	20				
발동수준 (메트릭톤)	42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66.0	0				

사. 아래에 포함된 **설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701.99.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220	220	224	228	233	23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0	50.0	50.0	50.0	50.0	5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242	247	252	257	262	26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0	50.0	50.0	50.0	50.0	50.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발동수준 (메트릭톤)	273	279	284	290	296	30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0	50.0	50.0	50.0	37.5	37.5
이행년도	19	20	21	22		
발동수준 (메트릭톤)	308	314	32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	37.5	37.5	0		

아. 아래에 포함된 주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2207.10.901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95	95	96	98	100	10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64.0	264.0	258.0	253.0	247.0	241.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04	106	109	111	113	11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17.0	208.0	199.0	191.0	182.0	139.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발동수준 (메트릭톤)	118	120	122	12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27.0	116.0	104.0	91.8	0	

자. 아래에 포함된 **텍스트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그리고 3505.10.509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7,900	37,900	38,658	39,431	40,219	41,02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0	375.0	365.0	355.0	345.0	334.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41,844	42,681	43,535	44,405	45,294	46,199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91.0	275.0	260.0	244.0	228.0	152.0
이행년도	13	14				
발동수준 (메트릭톤)	47,123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1.0	0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록 2-가-1 제15항을 참조할 것.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나. 이행 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다. 이행 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라. 이행 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마. 이행 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바. 이행 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사. 이행 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아. 이행 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자. 이행 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차. 이행 1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카. 이행 1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타. 이행 1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파. 이행 1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하. 이행 1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거. 이행 1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너. **이행 1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더. **이행 1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러. **이행 1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머. **이행 1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버. **이행 2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서. **이행 2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어. **이행 2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저. **이행 2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처. **이행 2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그리고,
- 커. **이행 2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제 4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4.1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상의 서로에 대한 당사자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4.2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정의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또는
 -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 4.3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자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수평적 및 분야별 수준 모두에서 규제 대화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양자 협력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당사자의 기술규정의 질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정보, 경험 및 자료의 교환을 통한 규제 협력과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

나. 적절한 경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적절한 경우,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접근에 불필요한 차이를 피하고 기술요건의 수렴 또는 정합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라. 계량, 표준화, 시험, 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당사자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간 양자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

3.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 장의 조건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하는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4.4 조 기술규정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대로 모범 규제관행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로 하는 데 동의한다. 특히, 양 당사자는 다음에 동의한다.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명시된 대로 양 당사자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한다.

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관련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기초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표준이 추구되는 목적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이유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다. 당사자가 기술규정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그 기술규정에 대한 목적, 법적근거 및 취지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라. 기술규정에 관한 향상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공공 웹사이트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특히 당사자의 기술규정의 준수에 관한 서면 정보와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서면 지침을,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마. 기술규정 개발 과정의 일부가 공공 협의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서면 응답을 제공한다.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통보 이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 그리고

사.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가 적응하도록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며, 실행 가능한 경우,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기술규정의 개발에 관한 모든 공식적 공공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기술규정을 자신의 영역에 걸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이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과 양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령에서의 편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역 문제를 유럽연합 당사자에 통보하면, 그 유럽연합 당사자는 시의적절하게 그 문제를 다루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제 4.5 조 표준

1.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표준화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 및 채택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상의 당사자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이래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8, 2002년 5월 23일, 제9부(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규정된 원칙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

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의 사용

나. 각자의 표준화 과정, 그리고 당사자의 국가 및 지역 표준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의 사용 정도, 그리고
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표준화에 관하여 이행한 협력 협정, 예를 들
어 제3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표준화 문제에 관한 정보

제 4.6 조 적합성 평가 및 인정

1. 양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
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 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
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한 합의
- 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
여하는 인정 절차
- 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정부 지정
-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
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정
- 마. 각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
리고
-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 당사자의 수용

2. 특히 그러한 고려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들 및 유사한 메커
니즘에 관하여 당사자의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 나.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특히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선택하는 데 이용되는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다. 인정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정에 관한 국제표준과 예를
들어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 및 국제인정포럼의 메커니즘을 통하
여, 양 당사자의 인정기관이 관여된 국제협정을 최대한 잘 이용하

는 방법을 고려한다. 그리고
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조제1항2호에 맞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요구한다.

3.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고 투명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기술규정의 개발 및 채택에 관하여 설립한 원칙 및
절차는 강제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4.7 조

시장 감시

양 당사자는 시장 감시 및 집행 활동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
다.

제 4.8 조

적합성 평가 비용

양 당사자는, 수입상품의 강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수수료는 신청자와 적
합성 평가기관의 시설의 위치상의 차이로 인한 통신, 운송 및 그 밖의 비용
을 고려하여, 자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이루어
야 한다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조제2항5호상의 의무를 재
확인하고,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한
다.

제 4.9 조

표시 및 라벨링

1. 양 당사자는 기술규정이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 1항의 규정을 주목하고, 당사자의 기술규정이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2. 특히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상품의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동의한다.

가. 그 당사자는 그 상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그 밖의 목적, 예를 들어 재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그 당사자는 라벨 또는 표시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관련 국내 규정에 비추어 라벨 또는 표시에 제공될 특정 정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 그 당사자가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행한다.

라. 그 당사자는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수용한 국제명칭체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

는 한, 다른 언어의 동시 사용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마. 그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
 이 이에 의해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거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부착하기
 보다 동반 서류에 표시 또는 라벨링을 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노
 력한다.

제 4.10 조 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무
 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노력한다.

2. 조정자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
 여 협의하는 것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 개선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다. 제4.3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규제 대화체의 설치를 준비하는 것

라. 양 당사자가 상호 동의할 경우 비정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작업반의 설치를 준비하는 것

마.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비정부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

리고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
을 검토하는 것

3. 조정자는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서로 연락한다.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1.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2. 유럽연합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유럽연합이 지명하며 이 협정의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통보된다.

제 5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5.1 조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더 나아가, 이 장은 양 당사자의 축산업 여건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 복지 문제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5.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의 제1항에 정의된 조치를 말한다.

제 5.4 조 권리 및 의무

양 당사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당사자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5.5 조 투명성 및 정보교환

양 당사자는

- 가. 무역에 적용 가능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하여 투명성을 추구한다.
- 나. 각 당사자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 적용에 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한다.
- 다.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사안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 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제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요건을 전달한다.

제 5.6 조 국제기준

양 당사자는

- 가.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적용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그리고

나.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에 협력한다.

제 5.7 조

수입요건

1. 당사자의 일반적인 수입요건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전체에 적용된다.

2. 추가적인 특정 수입요건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세계동물보건기구”라 한다)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이하 “국제식물보호협약”이라 한다)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입 당사자가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상황에 관하여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에 부과될 수 있다.

제 5.8 조

동물 및 식물 위생과 연관된 조치

1. 양 당사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여 그러한 지역의 인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2.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양 당사자는 지리적 위치,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서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관리의 효과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3. 양 당사자는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결정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따르는 절차에 관한 신뢰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러한 지

역의 결정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구축한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약 2년 이내에 이러한 신뢰구축 활동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신뢰구축 협력의 성공적인 완료는 제5.10조에 언급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다.

4.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수입 당사자는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상황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따라 수출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에 원칙적으로 근거하도록 하고, 수출 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수출 당사자는 그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임을, 그리고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유지될 것임을 수입 당사자에게 각각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를 위하여 수입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제 5.9 조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

양 당사자는

- 가. 동물복지 분야에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그러한 활동을 위한 작업계획을 채택한다. 그리고
- 나. 국제포럼에서 동물복지 기준, 특히 동물의 기절 및 도축에 관한 기준의 개발에 협력한다.

제 5.10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또는 약정의 개발

나. 이 장의 이행 진전 상황의 점검

다. 제5.8조제3항에 언급된 신뢰구축 활동의 성공적 완료의 확인

라. 동물 유래 생산품 작업장과 적절한 경우 식물 유래 생산품 생산 장소의 승인을 위한 절차의 개발, 그리고

마.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에 도달하기 위해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포럼의 제공.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사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고, 상호 합의한 일자에 1년에 한 번 회합한다. 회의장소 또한 상호 합의된다. 의제는 회의 전에 합의된다. 의장은 양 당사자 간 교대로 한다.

제 5.11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부속서 5

제 6 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 6.1 조 목적 및 원칙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자 및 다자 간 관세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다음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가.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효율적이고 비례 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 1) 각 당사자는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절차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2)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 3) 각 당사자는 최소한의 문서로 상품의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전자시스템이 세관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4) 각 당사자는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한다.
- 5) 각 당사자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사안을 포함하여 국경통제에 관여하는 자신의 관세당국 및 기관이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 6) 각 당사자는 관세사의 이용이 선택적이도록 규정한다.

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양 당사자가 수용한 국제 무역 및 관세 관련 합의문서와 표준에 근거해야 하며,

- 1) 국제 무역 및 관세 관련 합의문서와 표준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합의문서와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 2) 자료 요건 및 절차는 세계관세기구(이하 “세계관세기구”라 한다) 관세자료모델 및 관련된 세계관세기구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된다.

다. 요건 및 절차는 수입자, 수출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한다.

라. 각 당사자는 새로운 또는 개정되는 중요한 요건 및 절차의 채택 이전에 이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 대표와 시의적절하게 협의한다.

마. 위험관리 원칙 또는 절차는 주목할 만한 거래에 준수노력을 집중하도록 적용된다.

바.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사.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는 국가 안보, 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같은 정당한 정책 목적의 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6.2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통관과 그 밖의 무역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당국, 국경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신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과 형식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 각 당사자는 반출 시간을 더욱 줄이도록 노력한다.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최종 처리(“도착전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

다.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신의 관세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이를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¹⁾, 그리고

라.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

제 6.3 조 간소화된 통관절차

양 당사자는 탁송화물의 물리적 도착 전 정보의 사전 전자적 제출 및 처리, 적은 횟수의 개장검사, 그리고 예를 들어 최소한의 문서로 하는 간소화된 신고에 대한 무역원활화를 포함하여 특히 상품의 더욱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결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업자 또는 경제 운영자에게 간소화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6.4 조 위험관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 분석과 선별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위험관리 절차를 위하여 1999년도 *통관절차의 간소*

1) 당사자는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 개정판과 세계관세 기구 위험 관리 지침을 이용한다.

제 6.5 조

투 명 성

1. 각 당사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 규정 및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그 밖의 요건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질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질의처 또는 정보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자는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대표들과 협의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협의 및 정보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중요한 요건 및 절차를 대상으로 하며, 채택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된다.

제 6.6 조

사전심사

1. 무역업자로부터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원산지 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해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를 자신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발급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상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품목 분류 및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자신의 사전심사 결정을,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표한다.

3.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안에 관한 그들 각자의 법령의 변경에 대한 정기적 갱신을 그들의 양자대화회에 포함한다.

제 6.7 조 불복청구 절차

1. 각 당사자는 관세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의 결정에 관하여,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된 관련 인이 그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당사자는 불복청구가, 사법당국이나 행정재판소가 될 수 있는 상위 독립기관에 의한 재심에 앞서, 동일한 기관, 그 감독당국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먼저 심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재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8 조 비밀유지

1. 제6.7조에 따라 요청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 또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의 당국에 제공한 어떠한 정

보도 각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인 성격으로 취급된다.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받은 당사자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는다.

2. 개인 자료는 그 자료를 받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그 특정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인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적용 가능한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어떠한 요건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이를 받은 당사자의 당국에 의해 제공된 것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적 절차와 연계하여 그것을 받은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할 의무가 있거나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에게도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사전에, 그러한 공개를 통보받는다.

5. 당사자의 당국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인에게 법적 절차와 연계된 정보 공개의 모든 가능성을 통보한다.

6. 요청하는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한 인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 또는 그 밖의 당국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개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용 가능한 조치를 적절한 경우 언제나 사용한다.

제 6.9 조

수수료 및 부과금

관세와 제2.3조(관세)에 따라 관세의 정의에서 제외된 항목 외에,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하여,

- 가. 수수료 및 부과금은 해당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나 그러한 수입 또는 수출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나. 수수료 및 부과금은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다. 수수료 및 부과금은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 라. 수수료 및 부과금은 영사서비스에 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다.
- 마.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된다. 이 정보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부과된 이유, 담당 당국,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은 마호에 따른 정보가 공표되고 용이하게 이용 가능해지기 전까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6.10 조 선적 전 검사

어떠한 당사자도 선적 전 검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의 이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6.11 조 통관사후심사

각 당사자는 무역업자에게 효율적인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건 또는 부담을 무역업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6.12 조

관세평가

관세평가협정은,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 및 선택권을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6.13 조

관세협력

1. 양 당사자는 관세 및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자는 국제기구가 이와 연계해서 행한 작업을 고려하여, 관세 사안에서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 이는 새로운 관세 절차의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자는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
4. 양 당사자는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무역에

사용된 문서 및 자료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 나. 관세분석소와 과학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분석 방법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 다. 세관 직원을 교환하는 것
- 라. 관세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관세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
- 마. 무역 및 비즈니스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 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특혜 관세대우를 위한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
-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및 그 밖의 통관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위조품에 대하여 관세당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 재산권 집행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 아.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모든 지역으로부터 양 당사자로 수입, 환적 또는 통과되는 해상화물과 그 밖의 선적의 보안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자는 강화되고 확대된 협력의 목적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1)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 그리고
 - 2) 가장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화물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

5. 양 당사자는 그들 간 기술 협력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준수를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관세와 관세 관련 분야에서 협력 조치의 범위, 시기 및 비용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당사자의 관세 행정기관을 통하여 합의한다.

6. 양 당사자는, 각자의 관세 행정기관과 그 밖의 국경 관련 당국을 통

하여, 심화된 공동 행동이 양 당사자 간 무역을 원활히 하고 공유된 다자간 목적을 증진할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의 관련 활동을 포함한 무역원활화에 관한 관련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 양 당사자는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야의 국제기구,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공통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7. 양 당사자는 이 장,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그들 각자의 관세 법 또는 규정의 이행 및 집행에서 서로 지원한다.

제 6.14 조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

1. 양 당사자는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의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6.15 조

관세 접촉선

1. 양 당사자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정된 접촉선의 목록을 교환한다.

2. 접촉선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영사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

록 노력한다. 사안이 접촉선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이 장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6.16 조

관세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세위원회는 제15.1조(무역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2.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사안,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관세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매년 회합하며, 회합장소는 양 당사자 간 교대로 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는 무역원활화, 품목 분류, 상품의 원산지 및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포함하여, 특히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하여,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건전한 기능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권고 또는 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부속서 6

제 7 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 1 절 일반규정

제 7.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서비스 무역과 설립의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자유화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이에 규정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부조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에 합치되게, 각 당사자는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이 장은 당사자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자신의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신의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 및 부속서에서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¹⁾

제 7.2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나.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에 의해 취하여진 조치를 말한다.

- 1)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 2)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자연인**이란 각자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을 말한다.

마. **법인**이란 회사, 신탁회사, 합명회사, 합작투자, 1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바. **당사자의 법인**이란,

-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법에 따라 각각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

¹⁾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과 부속서에서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등록사무소, 경영본부²⁾ 또는 주영업소를 각각 가지고 있는 법인. 이 법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등록사무소 또는 경영본부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³⁾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인은 각각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는

- 2) 제7.9조가호에 따른 설립의 경우,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자연인에 의해 각각 소유 또는 지배되거나, 1)목 상에 적시된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각각의 법인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은,

-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인에 의해 각각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인에 의해 **소유**된다.
-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의 인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인에 의해 **지배**된다.
-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사. 바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 밖에 설립되고 각각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해운회사도, 자신의 선박이 대한민국 또는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각

2) **경영본부**란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을 말한다.

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세계무역기구에의 통보(WT/REG39/1)와 맞게, 유럽연합 당사자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48조에 내포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와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라는 개념은 GATS 제5조제6항에 규정된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개념과 동등한 것으로 양해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등록사무소 또는 경영본부만을 대한민국의 영역에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는 그 법인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보유한 경우에만 이 협정의 혜택을 부여한다.

각의 법령에 따라 등록되고 대한민국 또는 어느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⁴⁾

- 아. **경제통합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특히 GATS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서비스 무역 및 설립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협정을 말한다.
- 자.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차.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하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라 한다)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카.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타.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인을 말하며, 투자자로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인을 포함한다.

제 7.3 조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위한 양 당사자의 수석대표는 이 장의 이행을 담당하는 당국의 공무원이다.

⁴⁾ 이 호는 설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한다.

나.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이 장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 관련 당국이 제7.46조에 대하여 건전성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 2 절

국경 간 서비스 공급

제 7.4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의 국경 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가. 시청각 서비스⁵⁾

나. 국내연안해상운송, 그리고

다. 다음을 제외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 그리고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4)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2.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5) 이 절의 적용범위로부터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은 문화협력에 대한 의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지급 또는 이용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의 어느 한 쪽 당사자 영역 내 주재

3. 이 절의 목적상,

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 1)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로의 공급, 그리고
- 2)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공급

나.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근거에서 공급되지도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 7.5 조

시장접근

1.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부속서 7-가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

하는 한, 당사자가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신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⁶⁾
-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그리고
-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⁷⁾

제 7.6 조 내국민대우

1. 시장접근 약속이 부속서 7-가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가 그것이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6) 이 호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7.9조가호의 의미에서의 설립을 하거나, 당사자의 영역에 주재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7) 이 호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자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 따라 부담하는 구체적 약속은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열위를 당사자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7 조 약속 목록

1. 이 절에 따라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자유화된 분야와 유보에 의하여 해당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 가능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은 부속서 7-가에 포함된 약속 목록에 규정되어 있다.

2.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과 합치되게 행해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

제 7.8 조 최혜국대우⁸⁾

1.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 후 서명된 경제통합 협정의 맥락에서 자신이 제3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제3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8)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되는 지역경제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는, 이 대우가 부속서 7-나에 규정된 대로 그 지역경제통합협정이 이 절의 맥락에서 취해지는 것보다 중대하게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한 분야별 또는 수평적 약속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에만 제1항의 의무로부터 제외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는 다음에 따라 부여되는 대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GATS 제7조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규정하는 조치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약정, 또는

다. 부속서 7-다에 기재된 최혜국대우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

4. 이 장의 규정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가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설립

제 7.9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가. **설립**이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을 말한다.

1)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⁹⁾, 또는

9) 법인의 “구성” 및 “인수”라는 용어는 지속적인 경제적 연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자본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나. **투자자**란 설립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자 하거나 수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¹⁰⁾

다. **경제활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수행되는 활동, 즉 상업적 근거에서 행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경제운영자와의 경쟁 하에 행해지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제외한 경제적 성격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라. **당사자의 법인의 자회사**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인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마. **법인의 지점**이란 법인격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모회사의 연장과 같이 상시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고 경영진을 보유하며 제3자와 사업을 협상할 물리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어, 그 제3자가 본점이 외국에 있는 모회사와의 법적 연계가 필요한 경우 있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모회사와 직접 거래할 필요없이 그 연장을 구성하는 영업소에서 사업거래를 할 수 있는营业소를 말한다.

제 7.10 조

적용범위

투자 환경, 그리고 특히 양 당사자 간 설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서 설립에 영향을 주는 양 당사자에 의한 조치¹¹⁾에 적용된다.

가. **핵물질의 채굴, 제조 및 처리**¹²⁾

10) 경제활동이 법인에 의해 직접 수행되지 아니하고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와 같이 설립의 다른 형태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법인을 포함한 투자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대우를 그러한 설립을 통해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설립에도 부여되며, 그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 밖에 주재하는 투자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11) 제7.12조로부터 도출되는 대우 외의 투자보호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2)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핵물질의 처리는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 산업 분류에서 code 2330에 포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나. 무기, 군수품 및 전쟁물자¹³⁾의 생산 또는 거래

다. 시청각 서비스¹⁴⁾

라. 국내연안해상운송, 그리고

마. 다음을 제외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 그리고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4)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보조적인 그 밖의 서비스

제 7.11 조

시장접근

1.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부속서 7-가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신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권리,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와 같은 그 밖의 설립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설립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

13) 전쟁물자는 전쟁의 수행 또는 방위 활동과 관련하여 오로지 군사적 용도로 의도되고 제작된 제품에 한정된다.

14) 이 절의 적용범위로부터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은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시된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¹⁵⁾
- 라.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 마.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바.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제7.1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 외에, 특정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투자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의 수행에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제 7.12 조 내국민대우¹⁶⁾

1. 부속서 7-가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자신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가 그것이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설립 또는 투자자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설립 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15) 가호부터 다호까지는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6) 이 조는 국적 및 거주 요건과 같이 설립체의 이사회 구성을 규율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4. 이 조에 따라 부담하는 구체적 약속은 당사자가 관련 설립 또는 투자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열위를 당사자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13 조 약속 목록

1. 이 절에 따라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자유화된 분야와 유보에 의하여 해당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 적용 가능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은 부속서 7-가에 포함된 약속 목록에 규정되어 있다.

2.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 대하여 제1항과 합치되게 행해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

제 7.14 조 최혜국대우¹⁷⁾

1.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 후 서명된 경제통합협정의 맥락에서 자신이 제3국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¹⁸⁾

2.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제3국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지역 경제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는, 이 대우가 부속서 7-나에 규정된 대

17)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8) 이 항에 포함된 의무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투자 보호 규정들로 확대되지 아니한다.

로 그 지역경제통합협정이 이 절의 맥락에서 취해지는 것보다 중대하게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한 분야별 또는 수평적 약속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에만 제1항의 의무로부터 제외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는 다음에 따라 부여되는 대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GATS 제7조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규정하는 조치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약정, 또는

다. 부속서 7-다에 기재된 최혜국대우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

4. 이 장의 규정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가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15 조 그 밖의 협정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가 당사자인 투자와 관련한 기존의 또는 미래의 국제협정에 규정된 더 유리한 대우로부터 양 당사자의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정상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양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협정상의 양 당사자의 국제적인 법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

제 7.16 조

투자의 법적 틀의 검토

1.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투자의 법적 틀,¹⁹⁾ 투자 환경 및 양 당사자 간 투자의 흐름을 국제협정에서의 그들의 약속과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 간격으로 검토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검토의 맥락에서, 양 당사자는 직면해 왔던 투자에 대한 장벽을 평가하고, 투자보호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심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장벽을 다루기 위한 협상을 수행한다.

제 4 절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제 7.17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절은 제7.1조제5항에 따라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과 일시 체류에 관한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절의 목적상,

가. **핵심인력**이란 당사자의 비영리조직 외의 법인 내에 고용된 자연인으로서, 설립체의 설치 또는 적절한 통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핵심인력은 설립체의 설치를 담당하는 상용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로 구성된다.

1) **상용방문자**란 설립체의 설치를 담당하는 고위직에 근무하는

¹⁹⁾ 이는 이 장과 부속서 7-가 및 7-다를 포함한다.

자연인을 말한다. 그들은 일반 공중과의 직접적인 거래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방문국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 2) 기업내 전근자란 최소 1년간 당사자의 법인에 의해 고용되어 있거나 그 법인의 공동경영자(과반수 지분보유자는 제외한다)인 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설립체(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점을 포함한다)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연인을 말한다. 해당 자연인은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

관리자

법인 내에서 고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주로 그 사업체의 이사회나 주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들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아 다음을 포함하여 주로 설립체의 경영을 지휘하는 자연인

- 가) 설립체 또는 설립체의 부서 또는 그 하부 조직을 지휘하는 것
- 나)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것, 그리고
- 다) 채용 및 해고를 직접하거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

전문가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설립체의 생산, 연구 기기, 기술 또는 경영에 필수적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는 자연인. 그러한 지식을 평가함에 있어, 설립체에 특정한 지식뿐 아니라, 해당 인이 공인된 직업단체의 회원인지를 포함하여, 특정한 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직업의 유형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이다.

나. 대졸연수생이란 당사자의 법인에 의해 최소 1년간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경력개발 목적을 위해서나 사업 기술 또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설립체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연인을 말한다.²⁰⁾

다. **상용서비스판매자**란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일시 입국을 하려는 서비스 공급자의 대리인인 자연인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방문국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라.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당사자의 법인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설립체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자 내의 최종 소비자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서비스 공급 이행을 위해 그 다른 쪽 당사자 내에 피고용인을 일시 주재시킬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자연인을 말한다.²¹⁾ 그리고

마. **독립전문가**란 당사자의 영역에서 서비스공급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설립체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자 내의 최종 소비자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선의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서비스 공급 이행을 위해 그 다른 쪽 당사자 내에 일시 주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자연인을 말한다.²²⁾

제 7.18 조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

1. 제3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부속서 7-가에 기재된 유보를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자연인을 자신의 설립체에 파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20) 대졸연수생을 받는 설립체는 체류의 목적이 학사학위 수준에 상응하는 연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체류기간 동안의 연수계획서를 사전 승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21) 이 호에 언급된 서비스 계약은 계약이 이행되는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한다.

22) 이 호에 언급된 서비스 계약은 계약이 이행되는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한다.

피고용인이 제7.17조에 정의된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이어야 한다.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의 일시 입국 및 체류는 기업내 전근자²³⁾에 대해서는 3년, 상용방문자에 대해서는 12개월 기간 내 90일²⁴⁾, 대졸연수생에 대해서는 1년까지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2. 제3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속서 7-가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유지하거나 채택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수량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투자자가 특정 분야에서 핵심인력 또는 대졸연수생으로 파견할 수 있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과 차별적인 제한으로 정의된다.²⁵⁾

제 7.19 조 상용서비스판매자

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부속서 7-가에 기재된 유보를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12개월의 기간 내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용서비스판매자의 일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한다.²⁶⁾

제 7.20 조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

1. 양 당사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와 독립전문가의 일시 입국 및 체류에 관해 GATS에 따른 그들의 약속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자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23)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발효 중인 법 및 규정에 합치되게, 허용된 기간 동안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4) 이 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간의 양자 비자면제협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5) 부속서 7-가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설립체가 고위관리직에 특정 국적의 자연인 또는 자신의 영역에 거주지를 갖는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6) 이 조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간에 체결된 양자 비자면제협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GATS 제19조 및 2001년 11월 14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의 각료선언에 따른 협상의 종결 후 2년 이내에, 무역위원회는 당사자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접근에 관한 약속 목록을 포함한 결정을 채택한다. 그러한 GATS 협상의 결과를 고려하며, 그 약속들이 호혜적이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도록 한다.

제 5 절 규제의 틀

제 1 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제 7.21 조 상호 인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연인이 해당 활동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에서 명시된 필요한 자격 및/또는 직업적 경험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가, 임시 면허를 포함하여, 서비스 분야와 특히 전문직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에 대한 승인, 면허, 영업 및 증명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적용하는 기준을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목적으로, 각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관련 대표 전문직 기관이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무역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권고를 수령하는 때에, 무역위원회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권고를 검토한다.

4.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제2항에 언급된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양 당사자의 관련 규정 간에 충분한 수준의 상응성이 있으면, 양 당사자는 동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요건, 자격, 면허 및 그 밖의 규정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이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을 협상한다.

5. 그러한 모든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과 특히 GATS 제7조와 합치되도록 한다.

6.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호인정협정 작업반은 무역위원회 하에서 운영되고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제2항에 언급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작업반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한다.

가. 작업반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1) 각자의 영역 내 관련 대표 기관이 상호 인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절차, 그리고
- 2) 관련 대표 기관이 상호 인정에 관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작업반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관련 전문직 기관에 의해 제기되는 상호 인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기능한다.

제 7.22 조

투명성 및 비밀 정보

1. 양 당사자는 제12장(투명성)에 따라 설치된 메커니즘을 통해 다음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한다.

가. 상호 인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에 속하거나 이 장에 해당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나.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와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 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한 정보. 그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육, 시험, 경험, 행동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종사 범위, 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자가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의 규제 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4.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 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6. 당사자의 규제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제 7.23 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 또는 설립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설립,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또는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영향을 받은 투자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는 그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공공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개별 분야에 대해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그리고

나.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4. GATS 제6조제4항에 따른 협상의 결과나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이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 협의 후 적절한 경우 이 조는 수정된다.

제 7.24 조 거버넌스

각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및 감독과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이행되고 적용되도록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장한다. 그러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은, 특히,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 원칙*, 2003년 10월 3일 싱가포르에서 승인된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의 *보험감독 핵심 원칙 및 방법론*, 국제증권감독기구의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경제협력개발기구”라 한다)의 *조세정보교환협정*, G20의 *조세정보의 투명성 및 교환에 관한 성명*, 그리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금융조치전담반의 *자금세탁에 관한 40개 권고사항 및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9개 특별 권고사항*이다.

제 2 관 컴퓨터 서비스

제 7.25 조 컴퓨터 서비스

1.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 따라 컴퓨터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다음 항에서 규정된 양해에 동의한다.

2.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연합코드인 CPC²⁷⁾ 84는, 컴퓨터의 작동 및 통신(그 개발과 구현을 포함한다)을 가능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명령어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처리 및 저장, 그리고 고객의 직원을 위한 상담 및 훈련 서비스와 같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기본 기능을 포함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는 이러한 기본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의 묶음 또는 패키지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웹 또는 도메인 호스팅, 데이터 마이닝 서비스 및 그리드 컴퓨팅과 같은 서비스는 각각 기본 컴퓨터 서비스 기능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터넷을 포함하여 망을 통해 전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가.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또는 이를 위한 상담, 전략, 분석, 기획, 규격, 디자인, 개발, 설치, 구현, 통합, 시험, 오류수정, 업데이트, 지원, 기술지원 또는 관리

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또는 이를 위한 상담, 전략, 분석, 기획, 규격, 디자인, 개발, 설치, 구현, 통합, 시험, 오류수정, 업데이트, 적응, 유지, 지원, 기술지원, 관리 또는 사용

다. 데이터 처리, 데이터 저장, 데이터 호스팅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라.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 기계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또는

마.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되고 어디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객의 직원을 위한 훈련서비스

27) CPC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1년 발간 CPC *Prov*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4.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는 은행업무와 같은 그 밖의 서비스를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의 수단 모두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양 당사자는 웹호스팅 또는 어플리케이션 호스팅과 같은 실현 서비스와 은행업무와 같이 전자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콘텐츠 또는 핵심 서비스 간에는 중요한 구별이 있다는 것과, 그러한 경우에는 그 콘텐츠 또는 핵심 서비스는 CPC 84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3 관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제 7.26 조 규제 원칙

이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각 당사자 내에서 독점으로 유보되지 아니한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그러한 원칙은 반경쟁 관행, 보편적 서비스, 개별 면허 및 규제당국의 성격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⁸⁾

제 4 관 통신서비스

제 7.27 조

2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발효 시에 민간배달서비스 공급자를 규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 기존 규제 기관의 규제의 틀을 변경하려고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관은 이 장의 제2절부터 제4절에 따라 자유화된, 방송 외의 기본 통신서비스²⁹⁾에 대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가. **통신서비스**란 전자기 신호의 송신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고, 그 전송을 위해 통신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제공으로 구성되는 경제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당사자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라. 통신 분야의 **규제당국**이란 이 관에 언급된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을 말한다.

마.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1)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될 것, 그리고
-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바. 통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란 필수 설비에 대한 자신의 지배 또는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의 결과로 통신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사. **상호접속**이란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경우, 어느 한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공중 통신 전송 망

29) 이는 MTN/GNS/W/120의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C. 통신서비스 (a)부터 (g)까지에 기재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아. **보편적 서비스**란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³⁰⁾

자.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차.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그리고

카. **번호이동성**이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최종이용자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공급자간에 전환할 때에 품질, 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 7.28 조

규제당국

1.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당국은 모든 통신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법적으로 구별되고 기능적으로 독립된다.

2. 규제당국은 통신서비스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규제당국에 의해 수행될 업무는 특히 그러한 업무가 둘 이상의 기관에 할당된 경우,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고 분명한 형태로 공개된다.

3. 규제당국의 결정과 그에 의해 사용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해 공평하도록 한다.

³⁰⁾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및 이행은 각 당사자에 의해 결정된다.

제 7.29 조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

1. 서비스의 제공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간소화된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2. 허가는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의 귀속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허가를 위한 조건은 공개된다.
3.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은 공개된다.
 - 나. 허가의 거부에 대한 이유는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그리고
 - 다.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자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 수수료³¹⁾는 그 적용 가능한 허가의 관리, 통제 및 집행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³²⁾

제 7.30 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보장장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러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³³⁾에 관여하는 것

31) 허가 수수료는 경매, 입찰이나 그 밖의 허가를 부여하는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급, 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2) 이 호는 이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시에 허가 수수료가 비차별적 방식으로 부과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33)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윤압착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제 7.31 조

상호접속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협상할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 간 상업적 협상에 근거하여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규제당국은 상호접속약정 협상의 과정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공급자가 그 정보를 오직 그 정보가 공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의 비밀성을 항상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3.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가. 비차별적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서비스에 대해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

나.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

4.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된다.

5. 지배적 사업자는 그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한다.³⁴⁾

제 7.32 조 번호이동성

각 당사자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자신의 영역 내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제 7.33 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2.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되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34)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제 7.34 조 보편적 서비스

1. 각 당사자는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그 자체로 반경쟁적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무의 운영은 경쟁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며, 각 당사자에 의해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를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 7.35 조 정보의 비밀성

각 당사자는 서비스 무역을 제한함이 없이 공중 통신 전송 망과 공중에 게 이용 가능한 통신 서비스에 의한 통신 및 관련 트래픽 데이터의 비밀성을 보장한다.

제 7.36 조 통신 분쟁의 해결

구제신청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서비스 공급자는 이 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당사

자의 규제당국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이 관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제당국은 분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최단기의 기한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불복심사 및 사법심사

2.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규제당국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는

가.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심사기관에 불복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³⁵⁾ 그 불복심사기관이 성격상 사법적이지 아니한 경우 그 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서면 이유가 항상 제공되며 그 판정 또는 결정은 또한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불복심사기관에 의해 취하여진 판정 또는 결정은 실효적으로 집행된다. 그리고

나. 당사자의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얻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심사의 신청이 규제당국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제 5 관 금융서비스

35)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불복심사기관은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와 독립적이다.

제 7.37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관은 제2절부터 제4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가) 생명보험

나) 비생명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자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적인 서비스

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 공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2) 소비자신용, 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여신

3) 금융리스

4)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5) 보증 및 약정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산 또는 고객계산으로 거래하는 것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나) 외환

-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마) 양도성 증권, 그리고
-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
-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그리고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8) 자금중개업
-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관리, 연금 기금관리,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 10)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를 포함하는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11)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12)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여, 1)목부터 11)목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적인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자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

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신금융서비스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7.38 조 건전성 조치 예외³⁶⁾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³⁷⁾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 나. 그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2.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

36) 당사자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자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조에 맞게 취해진다.

37)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39 조

투 명 성

양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방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제 7.40 조

자율규제기구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 유가증권이나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결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때, 또는 그 당사자가 그러한 기관에 금융서비스 공급에서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때, 그 당사자는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7.6조, 제7.8조, 제7.12조 및 제7.14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7.41 조

지급 및 결제 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결제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자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7.42 조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자는,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 또는 기존법의 수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자기 자신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사자는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7.43 조 자료 처리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경제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가.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해 자신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나. 각 당사자는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약속³⁸⁾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사생활의

3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세계인권선언*, *전산화된 개인 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지침*(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5/95로 채택)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자료의 국경 이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1980년 9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채택)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지칭한다.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채택한다.

제 7.44 조

구체적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자의 계산으로, 또는 그 당사자의 보증 하에, 또는 그 당사자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45 조

분쟁해결

1. 제14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각각 개인 5인을 추천하고, 양 당사자는 또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 직무를 수행할 개인 5인을 선정한다. 그러한 개인들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지며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자에 대한 행동 규범)를 준수한다.

3. 패널위원들이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제3항, 제14.9조(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제3항, 제14.10조(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제3항, 제14.11조(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제4항, 제14.12조(의무의 정지 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제3항,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칙)의 제6조(교체)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첨에 의해 선정되는 때, 선정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서 이루어진다.

4. 제14.11조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분쟁상의 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자신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동등한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없다.

제 7.46 조 인정

1. 당사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자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자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 시 또는 그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제3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들 간의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당사자와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6 관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제 7.47 조

적용범위·정의 및 원칙

1. 이 관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해상운송 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가. **국제해상운송**은 하나의 운송서류 상에서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을 사용하여 상품을 운반하는 일관운송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로 다른 운송 방식 제공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해상화물취급 서비스**란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1)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2) 화물의 고정/분리, 그리고
- 3)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다. **통관서비스**(‘관세사 서비스’라고도 한다)란, 이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운송을 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라.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란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마. **해운대리업 서비스**란 다음의 목적을 위해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 1)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 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그리고
- 2)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

3. 국제해상운송에서 양 당사자 간 기존의 자유화의 수준에 비추어,
가. 양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국제해운시장 및 무역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나. 각 당사자는 특히,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 통관 시설, 그리고 접근과 선적 및 하역을 위한 시설의 할당뿐만 아니라 항구에의 접근, 항구의 기반시설 및 해상보조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

가 운영하는 선박에 자기 자신의 선박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4.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가. 건화물, 액체화물 및 정기선 무역을 포함하여,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해 제3자와의 미래 양자협정에서 화물공유약정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양자협정에 화물공유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화물공유약정을 실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해상운송에서 서비스의 자유로운 공급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 및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그 밖의 장벽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5.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약속 목록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자기 자신의 또는 제3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관계없이, 불리하지 아니한 설립 및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설립을 하도록 허용한다.

6.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제해상운송 공급자에게 항구에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음의 서비스가 이용하게 되도록 한다.

가. 도선

나. 예선 지원

다. 식량 공급

라. 연료 공급 및 급수

마.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바. 선석배정

사. 항행원조, 그리고

아.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 비상보수시설,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를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 기반 서비스

제 6 절 전자상거래

제 7.48 조 목적 및 원칙

1.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무역 기회, 그 이용 및 발전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 장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자료 보호의 국제기준과 충분히 양립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3. 양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³⁹⁾

제 7.49 조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규제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며, 이 대화는 특히 다음의 문제를 다룬다.

39) 이 장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가. 공중에게 발급되는 전자서명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서비스의 촉진

나.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다. 요청받지 아니한 전자 상업통신의 취급

라. 전자상거래 범위에서의 소비자 보호

마. 종이없는 무역의 발전, 그리고

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련된 그 밖의 문제

2. 대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각각의 법령뿐 아니라 그러한 법령의 이행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제 7 절 예외

제 7.50 조 예외

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설립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안보 또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⁴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투자자

40)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때에만 원용될 수 있다.

또는 서비스의 국내 공급이나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적용되는 경우

라.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 또는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2) 개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계좌의 비밀성의 보호
- 3) 안전

바. 제7.6조 및 제7.12조에 불합치하는 조치. 다만, 대우에서의 차이가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활동, 투자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⁴¹⁾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한정한다.

41)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당사자가 자신의 조세제도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당사자 영역 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 나. 그 당사자 영역에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 다.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 라. 그 당사자 영역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 마. 투자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과세표준의 성격상 차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그 밖의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 바. 당사자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자 또는 지점이나 관련인 또는 동일인의 지점 간의 소득, 이윤, 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이 항과 이 각주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하는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조세의 정의와 개념 또는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유럽연합 당사자

1. 제7.7조(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2. 제7.13조(설립)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3. 제7.18조(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제7.19조(상용서비스판매자)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대한민국

4.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가.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나.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7-가-1
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국경 간 서비스 공급)

1. 아래의 약속 목록은 제7.7조에 따라 자유화된 서비스 분야와, 유보를 통하여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가 약속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와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아래 목록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확인함에 있어,

가.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나.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절차에 관련된 조치가 제7.5조 및 제7.6조의 의미에서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요구,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 인정 획득 요구,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요구)는 비록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아래의 목록은 일정한 서비스 분야 및 하위 분야에서 제7.4조제3항1)목의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실행가능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설립에 관한 약속 목록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공독점 및 배타적 권리의 존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5.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가 부여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아래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직접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7.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형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u>부동산</u> <u>공급형태 1 및 2</u> 오, 불, 사, 체, 덴, 그, 핀, 형, 아, 이, 리, 물, 폴, 루,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오 : 외국의 자연인과 법인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리스뿐 아니라 취득 또는 구매는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해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검토할 권한 있는 지역 당국(Länder)의 인가를 요구함. 불 : 외국 법인과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은 재무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 및 부동산의 제한된 재산권¹⁾을 취득할 수 있음. 그 허가 요건은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과 외국 법인 및 외국인 참여가 결정을 채택하는 데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결정의 채택을 저지할 수 있는 회사는 허가를 조건으로 내각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한 지역에서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사 : 약속 안함. 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체코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의 실체의 토지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덴 : 비거주 물리적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에 의한 농업용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 그 : 법 제1892/90에 따라, 시민이 국경 근접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함. 행정적 관행에 따라, 허가는 직접투자에 용이하게 부여됨.

1) 불가리아 재산법은 다음의 제한된 재산권을 인정함 : 사용권, 건축권, 상부구조물 설치권과 지역권 및 채취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핀 : (아랜드(Åland) 섬): 아랜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아랜드(Åland) 섬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아랜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 형 : 외국의 투자자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음.²⁾ 아 : 국내 또는 외국 회사 또는 외국 국민이 아일랜드 토지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그러한 토지가 (농업 관련 산업이 아닌) 산업용인 경우 “기업, 무역 및 고용부”로부터의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조건으로 이 요건이 면제됨. 이 법은 도시 경계 내의 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부동산 구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리 : 토지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³⁾ 몰 : 부동산 재산권 취득에 관한 몰타 법 및 규정의 요건이 계속 적용됨. 폴 : 외국인(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부동산 취득에는 허가가 요구됨. 국가 소유 재산의 취득(즉, 민영화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 루 : 루마니아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본부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법인뿐 아니라 루마니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증여법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음. 베 : 외국 자본 참여로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법인은 슬로베니아 영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이 슬로베니아에 설립한 지점⁴⁾은 그들이 설립된 목적에 따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만을 취득할 수 있음. 다른 쪽 당사자의 법인 또는 국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속해있는 회사가 국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별 허가를 조건으로 함.

2)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3)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4) 상업회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지점은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활동과 관련하여 지점에 대한 대우는 GATS 제28조 제사항에 따른 현지법인의 그것과 동일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슬 : 외국인인 물리적 및 법적 실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외국인인 실체는 슬로바키아인인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토지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⁵⁾ 공증, “집행관 업무(<i>huissiers de justice</i>)” 또는 그 밖의 “공무원 업무(<i>officiers publics et ministeriels</i>)”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는 제외	<u>공급형태 1 및 2</u> 오, 사, 서, 그, 리, 물, 슬 : 국내(유럽연합 및 회원국)법 업무를 위하여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벨, 핀 : 법률대리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벨기에에서 비형사사건에서 “최고법원(<i>Cour de cassation</i>)”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가 적용됨. 불 : 대한민국 변호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그리고 불가리아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률대리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음. 법률조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시 거주가 요구됨. 프 :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i>)”와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i>)”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와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5)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 지역의 법과 관련하여서만 인가되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연합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그러한 변호사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연합 측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는, 그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그 국가에 속하는 당사자를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형 :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외국 변호사에 대하여 법적 활동의 범위는 법률자문의 제공에 한정됨. 라 : 형사 절차에서의 대리권이 유보되고 서약한 사무변호사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덴 : 법률자문서비스의 마케팅은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와 덴마크에 등록된 법무회사(로펌)에 유보됨.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이 요구됨. 스 : 스웨덴의 직명 "<i>advokat</i>"의 사용만을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협회에의 가입은 거주요건을 조건으로 함.
b) 1.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감사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2, CPC 86213, CPC 86291 및 CPC 86220)	<u>공급형태 1</u> 프, 형, 이, 물, 루, 베 : 약속 안함. 오 :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b) 2. 감사서비스 (회계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1 및 86212)	<u>공급형태 1</u> 벨, 불, 사, 독,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물, 네, 포, 루, 베, 영 : 약속 안함. 오 :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하여, 그리고 특정한 오스트리아법(예를 들어 합자주식회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규정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스 :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한 감사인만이 주주가 되거나 (공식적 목적으로) 자격있는 감사를 행하는 회사에서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음. 승인을 위하여 거주가 요구됨. 리 : 감사 보고서는 리투아니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감사인과 함께 작성하여야 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⁶⁾	<u>공급형태 1</u> 오 :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사 : 세무사는 재무부에 의해 적절하게 인가되어야 함.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사용되는 기준은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허가 부여의 그것과 유사함. 이 기준이 하위 분야에 적용될 경우 그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이 항상 고려됨. 불, 물, 루,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d) 건축설계서비스 그리고 e)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u>공급형태 1</u> 오 : 계획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벨, 불, 사, 그, 이, 물, 폴, 포, 베 : 약속 안함. 독 : 외국에서 수행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 및 수입료에 대한 국내규칙이 적용됨. 형, 루 : 경관건축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f)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u>공급형태 1</u> 오, 베 : 순수한 계획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불, 사, 그, 이, 물, 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6) 1.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h) 의료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독, 텐, 에, 서, 핀, 프, 그, 아, 이, 록, 물, 네, 포, 루, 슬, 영 : 약속 안함. 베 : 사회의료서비스, 위생서비스, 피부의학서비스, 의료/생태 서비스, 혈액공급, 혈액준비와 수혈 및 검시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에, 서, 프, 그, 형, 아, 이, 라, 물, 네, 포, 루, 베, 슬 : 약속 안함. 영 : 수의외과의에게 공급되는 수의실험 및 수의기술 서비스, 일반자문, 지침 및 정보(예를 들어 영양, 행동 및 애완동물 관리)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j) 1. 조산원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에, 서,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록, 물, 네, 포, 루, 베, 슬, 영 : 약속 안함. 핀, 폴 : 간호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⁷⁾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독, 사, 텐, 서, 핀, 프, 그, 아, 이, 록, 몰, 네, 폴, 포, 루, 스, 슬, 베, 영 : 약속 안함. 체, 라, 리 : 우편 주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형 : CPC 632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C. 연구개발서비스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심리학자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CPC 852) ⁸⁾	제한 없음.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유 :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D. 부동산서비스 ⁹⁾	

7)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됨.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조제약의 공급만이 약제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8)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에 기재된 CPC 85201의 일부임.

9)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에, 형, 아,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b) 요금 또는 계약에 근거 (CPC 822)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에, 형, 아,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서비스</u>	
a) 선박 관련 (CPC 83103)	<u>공급형태 1</u> 불, 사, 독, 형, 몰, 루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형, 라 몰, 폴, 루, 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불, 사, 체, 라 몰, 폴, 루, 슬 : 약속 안함. 오, 벨, 독, 텐,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네, 포, 베, 스, 영 : 유럽연합 항공사에 의해 사용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야 함. 단기 리스 계약에 대하여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CPC 83102 및 CPC 83105)	<u>공급형태 1</u> 불, 사, 형, 라, 물, 폴, 루,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 CPC 83107, CPC 83108 및 CPC 83109)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형, 물, 폴, 루, 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e) 개인·가정물품 관련 (CPC 832)	<u>공급형태 1 및 2</u> 벨, 불, 사, 체, 독, 텐,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록,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예 :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기기용 사전녹화 비디오 카세트와 관련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f) 통신장비 임대 (CPC 7541)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u>F. 기타 사업서비스</u>	
a) 광고 (CPC 871)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CPC 864)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d)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u>공급형태 1 및 2</u> 형 :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u>공급형태 1</u> 이 : 생물학자 및 화학분석가 직종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물, 폴, 루, 슬,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불, 사, 체, 물, 폴, 루, 슬, 스 : 약속 안함.
f)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u>공급형태 1</u> 이 : 농경제학자 및 “농업기술자”에게 유보된 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예, 몰, 루,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g)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2의 일부)	<u>공급형태 1</u> 라, 몰, 루,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h) 제조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4의 일부 및 CPC 885의 일부)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직업 소개, 파견 서비스	
i) 1. 임원급 소개서비스 (CPC 87201)	<u>공급형태 1</u> 오, 불, 사, 체, 독, 에, 서, 핀, 아, 라, 리, 물, 폴, 포, 루, 슬, 베,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오,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물,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i) 2. 직업 소개서비스 (CPC 87202)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에, 서, 그, 핀, 프, 아, 이, 록, 라, 리,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오,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물,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i) 3. 사무지원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3)	<u>공급형태 1</u> 오, 불, 사, 체, 독, 에, 핀, 프, 이, 아, 라, 리, 물, 네, 폴, 포, 루, 스, 슬,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오,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물,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i) 4. 가사보조인력, 기타 상업 또는 산업근로자, 간호 및 기타 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4, 87205, 87206, 87209)	<u>공급형태 1 및 2</u> 형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약속 안함 형 : 제한 없음.
j) 1. 조사서비스 (CPC 87301)	<u>공급형태 1 및 2</u>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영 :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u>공급형태 1</u> 형 : CPC 87304, CPC 87305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사, 체, 서, 에, 핀, 프, 이, 라, 리, 물, 포,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형 : CPC 87304, CPC 87305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에, 라, 리, 물,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k)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CPC 8675)	<u>공급형태 1</u> 벨, 불, 사,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룩, 물, 네, 폴, 포, 루, 베, 영 : 탐사서비스에 대해서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l)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u>공급형태 1</u> 해상운송선박에 대하여, 벨, 불, 사, 독, 덴, 서, 핀, 프, 그, 아, 이, 리, 물, 네, 폴, 포, 루, 스, 베, 영 : 약속 안함. 내륙수로운송선박에 대하여, 에, 형, 라를 제외한 유럽연합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독, 사, 체, 덴, 서, 핀, 프, 그, 아, 이, 리, 라, 룩, 물, 네, 폴, 포, 루, 스, 베, 슬,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l) 4.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u>공급형태 1</u> 벨, 블, 사, 체, 독, 텐, 서, 핀, 프, 그, 아, 이, 리, 록, 물, 네,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l)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용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¹⁰⁾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m)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u>공급형태 1</u> 오, 벨, 블,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록, 라,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10)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8868)는 1.F.1)1.부터 1.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는 1.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n) 사진서비스 (CPC 875)	<u>공급형태 1</u> 불, 예, 물, 폴 : 항공사진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라 : 전문사진서비스(CPC 87504)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o) 포장서비스 (CPC 876)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u>공급형태 1</u> 폴 : 서약한 통역사의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형, 슬 : 공식 번역 및 통역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r) 2. 인테리어 디자인 및 기타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u>공급형태 1</u> 독 : 외국에서 수행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수입료에 대하여 국내규칙이 적용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r) 3. 수금대리서비스 (CPC 87902)	<u>공급형태 1 및 2</u>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예,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r) 4. 신용조사서비스 (CPC 87901)	<u>공급형태 1 및 2</u>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¹¹⁾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r) 6. 통신자문서비스 (CPC 7544)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r) 7. 전화응답서비스 (CPC 87903)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목적지가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된 하위 분야 목록에 따른 우편 품목 ¹²⁾ 의 취급 ¹³⁾ 과 관련된 서비스: (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와 다이렉트 메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 ¹⁴⁾ 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기재된 통신문의 취급,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11) CPC 88442에 해당하며 1.F.p)에 기재된 출판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음.

12) “취급”이란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말함.

13)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14) 예를 들어 서장, 엽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i) 주소가 기재된 소포 및 소화물¹⁵⁾의 취급, (iii) 주소가 기재된 출판물¹⁶⁾의 취급, (iv) 등기 또는 보험가입 우편물로서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취급, (v)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특급배달서비스¹⁷⁾, (vi) 주소가 미기재된 품목의 취급, 그리고 (vii) 문서 교환¹⁸⁾ 그러나 하위 분야 (i), (iv) 및 (v)는 중량이 350그램 미만일 경우 그 가격이 공공 기본요금의 5배 미만인 통신품목¹⁹⁾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등기우편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된다. (CPC 751의 일부, CPC 71235의 일부²⁰⁾ 및 CPC 73210의 일부²¹⁾)	

15) 서적, 카탈로그가 이에 포함됨.

16) 잡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17) 특급배달서비스는 더욱 빠른 속도와 신뢰성과 함께 발송지로부터의 수집, 수취인에 대한 개별 배달, 종적 조회, 배송 중 도착지 및 수취인 변경 가능성, 수취 확인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

18) 제3자에 의한 운송 및 임시장소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간 우편품목을 상호 교환하는 자체배달을 허용하는 수단의 제공.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19) “통신품목”이란 발송자가 자체에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주소에 전달 및 배달되는, 모든 유형의 물리적 매체에 서면으로 기재된 통신을 의미함. 서적, 카탈로그,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통신품목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20)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육상 운송

21) 우편물품의 자체 항공 운송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통신서비스 이 서비스는 그 운송을 위하여 통신서비스가 필요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a)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 ²²⁾ , 방송 ²³⁾ 은 제외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b) 위성방송 전송서비스 ²⁴⁾	공급형태 1 및 2 유 :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자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들에 따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이익 목표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벨 : 약속 안함.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22) 이 서비스는 1.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된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의 일부)을 포함하지 않음.

23)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 간의 중계 연결은 포함되지 아니함.

24) 이 서비스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성을 통한,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를 포함함.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 이용의 판매를 포함하나 가정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 서비스는 국내간 연결(위성에 의한 국내영토로부터 국내 영토로의 전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4.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기타 전쟁 물자는 제외) A. 위탁중개인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그리고 CPC 6121의 일부) b) 기타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 B. 도매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도매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b) 통신단말기 도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c) 기타 도매서비스 (CPC 622, 에너지제품 도매서비스²⁵⁾는 제외)	공급형태 1 및 2 오, 베, 스, 핀을 제외한 유 : 화학제품, 귀금속 (그리고 보석)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 불꽃제조 상품, 가연성 물품 및 폭발 장치, 그리고 독성 물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불 : 의료 및 외과 기구, 의료 물질 및 의료용 도구와 같은 의료용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오, 불, 프, 폴, 루 : 담배 및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이 있음. 불, 핀, 폴, 루, 스 : 알콜 음료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불, 체, 핀, 루, 슬, 베 : 의약품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형, 폴 : 상품중개인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프 : 위탁중개인서비스에 대하여, 신선 식품에 대한 국가적 이해가 있는 17개 시장에서 활동하는 매매업자 및 중개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의약품 도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몰 : 위탁중개인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사,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룩, 물, 네, 폴, 포, 슬, 영 :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우편판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²⁵⁾ CPC 62271를 포함하는 이 서비스는 14.D.중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C. 소매서비스²⁶⁾</u>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소매서비스 (CPC 61112,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통신단말기 소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식품 소매서비스 (CPC 631) 그 밖의(비에너지) 물품의 소매서비스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물품²⁷⁾소매서비스 제외 (CPC 63211 및 63297 제외한 CPC 632) <u>D. 프랜차이즈</u> (CPC 8929)	

26) 사업서비스의 1.B.및 1.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에너지서비스의 14.E. 및 14.F에 기재된 에너지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27)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물품의 도매는 1.A.k)의 전문직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5.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u>초등교육서비스</u> (CPC 921)	<u>공급형태 1</u> 불, 사, 핀, 프, 이, 물, 루, 스,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사, 핀, 물, 루, 스, 베 : 약속 안함.
B. <u>중등교육서비스</u> (CPC 922)	<u>공급형태 1</u> 불, 사, 핀, 프, 이, 물, 루,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사, 핀, 물, 루,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1 및 2</u> 라 :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 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u>고등교육서비스</u> (CPC 923)	<u>공급형태 1</u> 오, 불, 사, 핀, 물, 루, 스 : 약속 안함. 프 :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시하며 교육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이 : 서비스 공급자가 국가 공인 졸업장 발급을 인가받기 위한 국적조건이 있음. <u>공급형태 2</u> 오, 불, 사, 핀, 물, 루,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1 및 2</u> 체, 슬 : 중등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 (CPC 92310)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성인교육서비스</u> (CPC 924)	<u>공급형태 1 및 2</u> 사, 편, 물, 루,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1</u> 오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성인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u>E. 기타 교육서비스</u> (CPC 929)	<u>공급형태 1 및 2</u> 오, 벨, 불, 사, 독, 텐,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록,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영 : 약속 안함.
6. 환경서비스 <u>A. 폐수서비스</u> (CPC 9401) ²⁸⁾ <u>B. 고체/ 유해폐기물관리</u> <u>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운송은 제외</u> a)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b)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u>C. 대기 및 기후 보호</u> (CPC 9404) ²⁹⁾	<u>공급형태 1</u> 유 :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28) 하폐수서비스에 해당함.

29) 배기가스 정화서비스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토양 및 수질 개선과 정화 a) 오염된 토양 및 수질 처리와 개선 (CPC 94060의 일부)³⁰⁾ E. 소음 및 진동 저감 (CPC 9405) F.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 a)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의 일부) G. 기타 환경 및 부수 서비스 (CPC 94090)	
7. 금융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오, 벨,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네, 폴, 포, 루, 슬, 스, 베, 영 : 다음에 관련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오 :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현지법인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을 대표하여 모집 활동 및 중개를 하는 것은 금지됨(재보험 및 재재보험은 제외). 국제 상업적 항공운송을 제외하고 강제 항공보험은 유럽연합에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지점만이 인수될 수 있음.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현지법인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이 체결하는 계약(재보험 및 재재보험 계약은 제외)에 대해 더 높은 프리미엄 보험세를 지급함. 더 높은 프리미엄 보험세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30)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의 일부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덴 : 유럽연합에 설립된 회사에 의하여만 강제 항공보험이 인수될 수 있음. 덴마크법 또는 덴마크의 권한 있는 당국이 면허를 부여한 보험회사 외에는,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어떠한 인 또는 회사도, 덴마크 내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 덴마크 선박 또는 덴마크 내 재산에 대하여 덴마크 거주자를 위한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조력할 수 없음. 독 : 유럽연합에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독일에 설립된 지점에 의하여만 강제 항공보험증권을 인수될 수 있다. 외국 보험회사가 독일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독일 내 설립된 지점을 통해서만 국제 운송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독일 내에서 체결할 수 있음. 프 : 육상 운송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은 유럽연합에 설립된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인수될 수 있음. 폴 : 재보험, 재재보험 및 국제무역에서의 상품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포 : 유럽연합에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만 상품, 항공기, 선체 및 책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항공 및 해상운송 보험을 인수할 수 있음. 유럽연합에 설립된 인 또는 회사만이 포르투갈에서 그러한 보험사업에 대한 중개업자로 활동할 수 있음. 루 : 국제시장에 대한 재보험은 재보험된 위험이 국내시장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공급형태 1 오, 벨,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네, 포, 루, 슬, 스, 베, 영 : 다음에 관한 위험에 관련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 보험중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불 : 불가리아 내에서 외국인에게 외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직접 보험에 대하여 약속 안함.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운송보험,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보험 및 불가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에 관한 책임보험은 외국 보험회사에 의해 직접 인수될 수 없음. 외국 보험회사는 오직 유럽연합 내 지점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강제 보험제도뿐 아니라 예금보험 및 유사한 보상 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속 안함. 사, 라, 몰 :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 보험서비스에 대해 약속 안함. 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리 :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보험서비스에 대해 약속 안함. 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b) 리투아니아 내에 위험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육상운송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라, 리, 폴 : 보험 중개에 대하여 약속 안함. 핀 : 유럽연합에 본점이 있거나 핀란드에 지점이 있는 보험자만이 (공동보험 포함) 직접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보험중개서비스의 공급은 유럽연합 내의 상시적인 영업장소를 조건으로 함. 형 :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의한 헝가리 영역 내 직접보험 공급은 헝가리에 등록된 지점 사무소를 통해서만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이 : 보험계리 직종에 대하여 약속 안함. 상품에 대한 운송보험,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보험 및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에 관한 책임보험은 유럽연합에 설립된 보험회사만이 인수할 수 있음. 이 유보는 이탈리아로의 수입품과 관련된 국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스 : 직접보험의 공급은 스웨덴에서 인가된 보험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만 허용됨. 다만, 외국 서비스 공급자 및 스웨덴 보험회사가 같은 그룹의 회사에 속하거나 그들 사이에 협력 협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서 : 보험계리서비스에 대하여, 거주 요건 및 3년간의 관련 경력 요건이 있음. 공급형태 2 오, 벨, 불, 체, 사,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슬, 스, 베, 영 : 중개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 직접보험에 대하여, 불가리아 영역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불가리아 자연인 및 법인은 불가리아에서의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불가리아에서 보험활동을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공급자와만 보험을 체결할 수 있음. 이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 보상은 불가리아 내에서 지급됨. 강제 보험제도뿐 아니라 예금보험 및 기타 유사 보상 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 상품에 대한 운송보험,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보험 및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보험은 유럽연합에 설립된 보험회사에 의하여만 인수될 수 있음. 이 유보는 이탈리아로의 수입품과 관련된 국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보험 제외) 아래에 표시된 모든 하위 분야	공급형태 1 오, 벨, 불,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네, 폴, 포, 슬, 스, 영 :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벨 : 투자자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벨기에 내에서 설립이 요구됨. 불 : 통신네트워크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사 : 양도가능 증권의 거래,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예 : 예금 수취에 대하여, 에스토니아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및 합자주식회사, 현지법인 또는 지점으로서 에스토니아법에 따른 등록이 요구됨. 예 : 투자펀드의 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관리회사의 설립이 요구되며, 유럽연합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리 : 계약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관리회사의 설립이 요구되며, 유럽연합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아 : 투자서비스 또는 투자자문의 제공은 다음의 하나를 요구함. (a) 통상적으로 그 실체가 법인화되거나 제휴 또는 단독 거래자이기를 요구하는 아일랜드에서의 인가(인가는 일정한 경우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서비스 공급자가 아일랜드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 서비스가 사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 본점/등록사무소를 아일랜드 내에 보유, 또는 (b)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의 인가 이 : “금융 판매원(<i>promotori di servizi finanziari</i>)”에 대하여 약속 안함. 라 :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리 : 연금기금 관리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몰 : 예금의 수취, 모든 유형의 대부,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폴 :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금융자료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공공통신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인가된 운영자의 네트워크의 사용이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루 : 금융 리스, 화폐시장 상품, 외환, 파생상품, 환율 및 이자율 상품, 양도성 증권, 그리고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의 거래,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 대한 참여, 자산관리 그리고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지급 및 이전 서비스는 오직 루마니아에서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허용됨. 베 : (a) 재무부 채권의 발행에 대한 참여, 연금기금관리 : 약속 안함. (b) 재무부 채권의 발행에 대한 참여, 연금기금관리,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기타 부수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 분야 : 신용(모든 종류의 차용)의 수취, 그리고 국내의 법적 실체 및 1인 기업의 외국 신용기관으로부터의 보증 및 약정의 인수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외국인은 국내 은행 및 증권중개회사를 통해서만 외국증권을 제공할 수 있음. 슬로베니아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슬로베니아 내에서 법인화되거나 외국 투자 회사 또는 은행의 지점이어야 함. 공급형태 2 블 : 통신네트워크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폴 :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금융자료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공공통신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인가된 운영자의 네트워크의 사용이 요구됨.
8.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병원서비스 (CPC 9311) C.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CPC 93193)	공급형태 1 오, 벨, 블, 독, 사, 체, 덴,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라, 리, 물, 록,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사회서비스</u> (CPC 933)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에, 서, 그, 핀, 프, 형, 아, 이, 록, 물, 폴, 포, 루, 스, 베, 슬,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벨 : 조리원과 요양원 및 양로원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u>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u>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 ³¹⁾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라,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케이터링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u> (CPC 7471)	<u>공급형태 1</u> 불, 형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C. 관광안내서비스</u> (CPC 7472)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형, 이, 리, 물, 폴, 슬,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31)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 부수 서비스 중 12.E.a)의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극장, 라이브 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u>공급형태 1</u>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라, 록,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사, 체, 핀,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불 :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CPC 96192), 그리고 극장 부수 서비스(CPC 96193)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에 : 영화관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CPC 96199)에 대하여 약속 안함. 리, 라 : 영화관운영서비스(CPC 96199의 일부)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B.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에, 형, 리, 몰, 루, 폴, 베, 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불, 사, 체, 형, 리, 몰,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CPC 963)	<u>공급형태 1</u>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라, 록,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벨, 불, 사, 체, 독, 텐,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라, 록,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스포츠서비스 (CPC 9641)	공급형태 1 및 2 오 : 스키학교서비스 및 산악가이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체, 라, 물, 폴, 루, 슬 :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사, 예 : 약속 안함.
E. 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 (CPC 96491)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11.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a) 국제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³²⁾)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b) 국제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³³⁾)	

32)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33)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내수운송	
a) 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1 ³⁴⁾) b) 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2 ³⁵⁾)	공급형태 1 및 2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한 국적기준을 충족하는 운영자에게 운수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오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경영 이사,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되거나 상시적인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의 과반수가 유럽연합 시민에 의해 보유되어야 함. 벨, 사, 체, 에, 핀, 형, 리, 몰, 루, 스, 베, 슬 : 약속 안함.
C. 철도운송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34)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35)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도로운송</u>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b) 화물운송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 제외 ³⁶⁾)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E.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³⁷⁾</u> (CPC 7139)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오, 벨, 블, 사, 체, 독, 덴, 서, 예, 핀, 프, 그, 아, 이, 라, 룩,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36) CPC 71235의 일부로서 통신서비스 중 2.A.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37)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4.B.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2. 운송 부수 서비스 ³⁸⁾	
A. 해운 부수 서비스	<u>공급형태 1</u>
a) 해상화물취급서비스	유 : 해상화물취급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오, 불, 사, 체, 독, 예, 형, 리, 물, 풀, 루, 스, 베, 슬 : 선원 포함 선박대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u>공급형태 2</u>
e) 해운대리업서비스	제한 없음.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 선박대여 (CPC 7213)	
h) 예선서비스 (CPC 7214)	
i) 해상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38) 사업서비스의 1.F.1)1.부터 1.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내수운송 부수 서비스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선원포함 선박대여 (CPC 7223) e) 예선서비스 (CPC 7224) f) 내수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g)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공급형태 1 및 2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운항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유 : 예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독, 예, 편, 형, 라, 리, 물, 루, 슬, 베, 스 : 선원 포함 선박대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예선서비스 (CPC 7113) e)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3)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공급형태 1 유 : 예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도로운송 부수 서비스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운전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e) 도로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4)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예, 형, 라, 리, 물, 풀, 루, 슬, 베, 스 : 운전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E.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지상조업서비스 (케이터링서비스 포함)	공급형태 1 유 : 케이터링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불, 사, 체, 형, 물, 풀, 루, 슬, 베 : 약속 안함.
b) 창고업 (CPC 742의 일부)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c) 화물운송대리업 (CPC 748의 일부)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CPC 734)	공급형태 1 및 2 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되어야 함. 또는 면허를 부여하는 회원국이 허용하는 경우,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도 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소유 및 통제에 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해 소유될 것이 요구됨. 예외적으로, 유럽연합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유럽연합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항공사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유럽연합 항공사에게 유럽연합 항공사에게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음.
e) 판매 및 마케팅 f) 컴퓨터 예약시스템	공급형태 1 및 2 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³⁹⁾를 대한민국에 있는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럽연합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각각 유럽연합 내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가 대한민국의 항공사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는 유럽연합 항공사가 대한민국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F.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⁴⁰⁾ a)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되는 연료 외의 상품 창고업 (CPC 742의 일부)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그,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39) “동등한 대우”라 함은 유럽연합 항공사 및 유럽연합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40)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4.C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3. 기타 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제공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풀, 루, 스,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모든 주어진 운송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이 약속 목록에 명기된 제한을 저해하지 아니함.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풀, 루, 스, 베, 슬 : 약속 안함.
14. 에너지서비스	
A.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⁴¹⁾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B.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CPC 7131)	공급형태 1 유: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C.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연료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핀, 프, 그, 아, 이,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41)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링빗 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 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 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 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 (프레스 펌핑), 스티플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 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부수 서비스 그리고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고체, 액체 및 기체 연료와 관련 제품의 도매서비스</u> (CPC 62271) <u>그리고 전력, 증기 및 온수 도매서비스</u>	<u>공급형태 1</u> 유 : 전력, 증기 및 온수의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E. 자동차연료 소매서비스</u> (CPC 613)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F.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판매</u> (CPC 63297) <u>그리고 전력,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 소매서비스</u>	<u>공급형태 1</u> 유 : 전력,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사, 체, 독, 텐, 서, 프, 그, 아, 이, 룩, 물, 네, 폴, 포, 슬, 영 :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우편주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우편주문에 대하여 제한 없음.)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G.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u> (CPC 887)	<u>공급형태 1</u> 유 :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컨설팅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5.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 서비스 (CPC 9701)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b) 머리미용서비스 (CPC 97021)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d)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미장서비스 (CPC 97029)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 ⁴²⁾ (CPC ver. 1.0 97230)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g) 통신연결서비스 (CPC 7543)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42)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1.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1.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8.A 및 8.C)에 기재됨.

부속서 7-가-2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설립)

1. 아래의 약속 목록은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경제적 활동, 그리고 유보에 의해 그러한 활동에서 대한민국의 설립 및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약속되는 분야 또는 하위분야 그리고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아래 목록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서 설립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가.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나.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다.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제7.11조 및 제7.12조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그리고 일정한 활동이 환경적으로 보호받는 구역 또는 특별히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흥미가 있는 지역에서 수행될 수 없도록 하는 비차별적 요건)는,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7.11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유형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유지되거나 채택되기 위하여 설립에 관한 아래의 약속 목록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6. 아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7.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형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u>부동산</u> 오, 불, 사, 체, 덴, 예, 그, 핀, 형, 아, 이 라, 리, 몰, 폴, 루,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오 : 외국의 자연인과 외국 법인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리스뿐 아니라 취득 또는 구매는 권한 있는 지역 당국(Länder)의 인가를 요구하며, 동 지역 당국은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해가 영향 받는지 여부를 검토함. 불 : 외국의 자연인 및 외국 법인(지점을 통하는 방식 포함)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불가리아의 법인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외국 법인 및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은 재무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 및 부동산의 제한된 재산권¹⁾을 취득할 수 있음. 이러한 허가 요건은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이 결정을 채택하는 데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결정의 채택을 저지할 수 있도록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허가를 조건으로 내각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한 지역에서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사 : 약속 안함. 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체코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의 실체의 토지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덴 : 비거주 물리적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함.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에 의한 농업용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 예 : 농업용 및 임업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²⁾ 그 : 법 제1892/90에 따라, 시민이 국경 근접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함. 행정적 관행에 따라, 허가는 직접투자에 쉽게 부여됨. 핀 : (<u>아랜드(Åland) 섬</u>): 아랜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아랜드(Åland) 섬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아랜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

1) 불가리아 재산법은 다음의 제한된 재산권을 인정함 : 사용권, 건축권, 상부구조물 설치권과 지역권 및 채취권

2)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형 : 외국 투자자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음.³⁾ 아 : 국내 또는 외국 회사 또는 외국 국민이 아일랜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그러한 토지가 (농업관련 산업이 아닌) 산업용인 경우 “기업, 무역 및 고용부”로부터의 이 효과를 위한 증명을 조건으로 이 요건이 면제됨. 이 법은 도시 경계 내의 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부동산 구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라 :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 99년을 넘지 아니하는 토지 리스는 허용됨. 리 : 토지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⁴⁾ 몰 : 부동산 재산권 취득에 관한 몰타 법 및 규정의 요건이 계속 적용됨. 폴 : 외국인(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부동산 취득에는 허가가 요구됨. 국가 소유 재산의 취득(즉, 민영화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 루 : 루마니아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본부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법인뿐 아니라 루마니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증여법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음. 베 : 외국인 자본 참여를 통하여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법인은 슬로베니아 영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이 슬로베니아에 설립한 지점⁵⁾은 그들이 설립된 목적에 따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만을 취득할 수 있음. 다른쪽 당사자 법인 또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회사가 국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별 허가를 조건으로 함. 슬 :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슬로바키아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토지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3)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4)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5) 상업회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지점은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활동과 관련하여 지점에 대한 대우는 GATS 제28조 사항에 따른 현지법인과 동일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공익사업 유 : 국가 또는 지방 수준에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제활동은 공공독점 또는 사적 운영자에 대해서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⁶⁾⁷⁾
모든 분야	설립의 종류 유 :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형성되고, 유럽연합 내에 등록된 사무소, 경영본부 또는 주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의) 현지법인에 부여되는 대우는 대한민국 회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설립한 지점 또는 대리점에 부여되지 아니함.⁸⁾ 불 : 지점의 설립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예 : 최소 경영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이 유럽연합 내에 거주해야 함. 핀 : 핀란드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에서 동업자로서 사업을 행하는 대한민국인은 사업 허가가 필요하고 유럽연합 내에 영구 거주해야 함.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원 및 대리인의 최소 절반이 국적 및 거주요건이 있음. 그러나 특정 회사에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설립자의 절반 및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에 대하여 영구 거주가 요구됨.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동 법인 또한 거주 요건을 조건으로 함. 대한민국의 조직이 핀란드에 지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허가가 요구됨. 대한민국의 조직 또는 유럽연합의 시민이 아닌 자연인에게서는 유한회사의 설립자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됨. 이 : 산업, 상업, 기술 활동에 대한 접근은 거주 허가 및 그 활동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 인가를 조건으로 함. 불, 폴 : 대표사무소의 운영 범위는 그 대표사무소가 대표하는 외국의 모회사의 광고 및 홍보만을 포함할 수 있음. 폴 :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지점에 대하여 약속 안함. 대한민국 투자자는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합자주식회사 (법률서비스의 경우, 오직 등록제휴 및 합자회사)의 형태로만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루 : 상업회사의 집행인 총 수의 절반뿐 아니라 이사회의 단독 집행인 또는 회장은 회사 계약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 상업회사 감사와 그 대리인의 과반수는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

6) 공익사업이 중앙 정부 이하의 수준에서도 종종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별 양허를 열거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약속 목록의 구체적 각주에서는 공익사업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가 예시적이며 비열거적으로 제시될 것임.

7) 이 제한은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8)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54조에 따라 이러한 현지법인들은 유럽연합 법인으로 간주됨. 유럽연합의 경제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연계를 가지는 범위에 서 이 현지법인들은 유럽연합 내부시장의 수혜를 받으며, 이는 특히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설립과 서비스공급의 자유를 포함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스 : (스웨덴에 법적 실체를 설립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회사는 독립적인 경영진과 별도의 회계를 가진 스웨덴에서 설립된 지점을 통하여 상업적 활동을 수행해야 함.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을 가진 건설 프로젝트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상주 대표를 임명하는 요건으로부터 면제됨. 유한회사(합자주식회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설립자에 의해 설립될 수 있음. 설립자 또는 설립자들은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스웨덴인인 법적 실체여야 함. 제휴는 각 동업자가 스웨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설립주체가 될 수 있음. 유사한 조건이 모든 다른 형태의 법적 실체의 설립에 적용됨.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50퍼센트 이상이 스웨덴에 거주해야 함.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또는 스웨덴 시민으로서 스웨덴에서 상업적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활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주 대표를 지방 당국에 등록해야 함. 일정한 경우에 필요 없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 거주 요건은 면제될 수 있음. 베 : 대한민국 회사의 지점 설립은 최소 1년간 원적지국에서 모회사가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함. 슬 : 기업을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위임받은 인으로 상업 등기소에 그 이름이 등록된 대한민국의 자연인은 슬로바키아에서의 거주 허가를 제출할 것이 요구됨.
모든 분야	투자 서 : 외국 정부 및 외국의 공적 실체⁹⁾의 직접적인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회사 또는 그 밖의 실체를 통한, 스페인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함. 불 : 공공(회원국 또는 지자체)의 보유 지분이 총 주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인가가 필요함. 회원국 또는 공공의 재산의 이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경제활동은 양허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외국인 투자자는 민영화에 참여할 수 없음. 외국인 투자자 및 대한민국의 자본참여에 의해 통제를 받는 불가리아 법인은 a) 영해,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부터 천연자원을 시굴, 개발 또는 채굴하고 b) “a)”에 명시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에 지배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됨.

9) 그러한 투자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체에 대한 비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프 : 기존 프랑스 기업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33.33퍼센트를, 또는 상장된 프랑스 회사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대한민국의 구매는 다음의 규제를 조건으로 함. - 연매출이 7천6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프랑스 기업에는 이러한 액수가 만족된다는 사전 통지 및 증명 후 15일이 경과한 후 7백6십만 유로 미만의 투자가 자유로움. - 사전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경제부 장관이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투자 연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인가는 묵시적으로 그 밖의 투자에도 부여됨.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보유는 프랑스 정부가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는, 공공에 제공되는 지분의 변동 가능한 총량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일정한 상업, 산업, 기술적 활동에서 설립을 위하여 경영 이사가 상시 거주 허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 구체적인 인가가 요구됨. 핀 : 대한민국 소유자가 주요 핀란드 회사 또는 주요 핀란드 사업체(1천명 초과를 고용하거나 연매출이 1억6천8백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자산총액¹⁰⁾이 1억6천8백만 유로를 초과)의 의결권의 3분의 1일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하는 지분 취득은 핀란드 당국의 확인을 조건으로 함.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손상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 확인이 거부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은 통신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형 :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한 대한민국인 지분 보유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거나 유지될 수 있음.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의 의결권은 일정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음.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방위, 운송, 통신 및 에너지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많은 지분의 취득은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모든 분야	지리적 구역 핀 : 아랜드 섬에서는, 아랜드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아랜드 섬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는 법인의 설립권에 제한이 있음.

10) 자산총액, 또는 부채총액에 더하여 자본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A. 농업, 수렵업 (ISIC 개정판 3.1: 011, 012, 013, 014, 015)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제외 ¹¹⁾	오, 형, 물, 루 : 농업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사 : 대한민국 투자자의 지분 보유는 49퍼센트까지만 허용됨. 프 : 대한민국 국민의 농업기업 설립 및 대한민국 투자자의 포도밭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아 : 대한민국 거주자가 밀가루 제분 활동을 위하여 설립을 하는 것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B. 임업 및 벌목업 (ISIC 개정판 3.1: 020)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¹²⁾ 는 제외	불 : 벌목 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어업 및 양식업 (ISIC 개정판 3.1: 0501, 0502) 자문 및 컨설팅 ¹³⁾ 서비스는 제외	약속 안함.
3. 광업 및 채석업¹⁴⁾	유 : 유럽연합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¹⁵⁾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대하여 약속 안함.
A. 석탄, 갈탄의 채광; 토탄의 채광 (ISIC 개정판 3.1: 10)	
B.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¹⁶⁾ (ISIC 개정판 3.1: 1110)	
C. 금속 광업 (ISIC 개정판 3.1: 13)	
D. 기타 광업 및 채석업 (ISIC 개정판 3.1: 14)	

11)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12)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13)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1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15)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16) 19.A하의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전에서 요금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광업 부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4. 제조업¹⁷⁾	
A. 음식료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5)	제한 없음.
B. 담배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6)	제한 없음.
C. 직물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7)	제한 없음.
D. 의복 제조업; 모피의 가공 및 염색 (ISIC 개정판 3.1: 18)	제한 없음.
E. 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가방, 핸드백, 안장,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9)	제한 없음.
F.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목제품, 코르크 제품 제조업; 고공업 및 조물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0)	제한 없음.
G.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1)	제한 없음.
H.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사업¹⁸⁾ (ISIC 개정판 3.1: 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업은 제외 ¹⁹⁾)	이 :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적 요건이 있음.
I. 코르크 제조로 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31)	제한 없음.

17) 이 분야는 사업서비스의 6.F.h)에 기재된 제조업 부수 자문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18) 이 분야는 제조활동에 제한되며, 시청각 관련 또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19)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의 6.F.p)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J. 석유 정제품 제조업²⁰⁾</u> (ISIC 개정판 3.1: 232)	유 : 유럽연합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²¹⁾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u>K. 폭발물질 제조업을 제외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4 폭발물질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u>L.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5)	제한 없음.
<u>M.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6)	제한 없음.
<u>N. 제1차 금속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7)	제한 없음.
<u>O. 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8)	제한 없음.
<u>P. 기계 제조업</u>	
a) 일반목적의 기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1)	제한 없음.

20)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21)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526, 2929)	제한 없음.
c)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구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3)	제한 없음.
d) 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0)	제한 없음.
e)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1)	제한 없음.
f)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기기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2)	제한 없음.
<u>Q.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3)	제한 없음.
<u>R.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4)	제한 없음.
<u>S. 기타 (비군사용) 운송장비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5, 군함, 군용 항공기 및 기타 군사용 운송장비 제외)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T. 가구 제조업;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61, 369)	제한 없음.
U. 재활용 (ISIC 개정판 3.1: 37)	제한 없음.
5. 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생산과 자체적 운송 및 유통²²⁾ (원자력 기반 전력 생산은 제외)	
A. 전력생산, 전력의 자체적 운송 및 유통 (ISIC 개정판 3.1: 4010의 일부) ²³⁾	유 : 약속 안함.
B. 기체 연료 생산, 기체 연료의 자체적 유통 (ISIC 개정판 3.1: 4020의 일부) ²⁴⁾	유 : 약속 안함.
C. 증기 및 온수 생산, 증기 및 온수의 자체적 유통 (ISIC 개정판 3.1: 4030의 일부) ²⁵⁾	유 : 유럽연합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²⁶⁾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2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23)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전력 운송 및 유통 시스템은 포함하지 아니함.

24)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및 기체 연료의 운송,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가스의 운송 및 유통, 그리고 천연가스 및 기체 연료의 판매는 포함하지 아니함.

25)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증기 및 온수의 운송 및 유통과 증기 및 온수의 판매는 포함하지 아니함.

26)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6.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²⁷⁾ 공증, “집행관 업무(<i>huissiers de justice</i>)” 또는 다른 “공무원 업무(<i>officiers publics et ministériels</i>)”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는 제외	오 :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자격을 지닌 대한민국 변호사의 지분 참여 및 법무회사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대한민국 변호사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벨 : 비형사사건에서 “최고법원(<i>Cour de cassation</i>)”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가 적용됨. 프 :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i>)”와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i>)”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를 조건으로 함. 덴 :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와 덴마크에 등록된 법무회사만이 덴마크 법무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만이 덴마크 법무회사의 임원이 되거나 경영진이 될 수 있음.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이 요구됨. 프 : 일정한 유형의 법적 형태 (“변호사 조합(<i>association d'avocats</i>)” 및 “변호사 참여 회사(<i>société en participation d'avocat</i>)”)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 완전하게 가입된 변호사를 위하여 유보됨. 프랑스법 또는 유럽연합법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회사 지분의 75퍼센트를 보유한 파트너들의 최소 75퍼센트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 완전하게 가입된 변호사여야 함. 형 : 상업적 주체는 헝가리 변호사(“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i>ügyvéd</i>)”) 또는 변호사 사무소(“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설립한 사무소(<i>ügyvédi iroda</i>)”)와 제휴형태를 취하거나 대표사무소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임. 폴 : 유럽연합 변호사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도 이용 가능하나, 외국 변호사는 등록제휴 및 합자회사의 법적 형태만 이용할 수 있음.

27)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 지역의 법과 관련하여서만 인가됨.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연합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연합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가, 동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동 국가에 속하는 의뢰인을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1. 회계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 86212 “감사서비스” 제외, CPC 86213, CPC 86291 및 CPC 86220)	오 : 대한민국 회계사(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지분 참여 및 오스트리아인인 법인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그 회계사가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사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덴 : 덴마크의 인가된 회계사와 제휴를 하기 위하여 외국 회계사는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함.
b) 2. 감사서비스 (CPC 86211 및 86212 회계서비스 제외)	오 : 대한민국 감사인(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지분 참여 및 오스트리아인인 법인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그 감사인이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사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상황 체 및 슬 : 최소 60퍼센트의 지분 또는 의결권이 국민에게 유보됨. 덴 : 덴마크의 인가된 회계사와 제휴를 하기 위하여 외국 회계사는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함. 핀 : 핀란드 책임회사의 감사인 중 최소 1인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이 있음. 라 : 서약감사인 상업회사에서는 서약감사인 또는 유럽연합의 서약감사인 상업회사가 의결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해야 함. 리 : 75퍼센트 이상의 지분이 유럽연합 감사인 또는 감사회사에 소유되어야 함. 스 :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한 감사인들만이 주식보유자가 되거나 (공식적 목적으로) 자격있는 감사를 행하는 회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 승인을 위해 거주가 요구됨. 베 : 감사회사에서 외국인의 지분은 총 지분의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²⁸⁾	오 : 대한민국 조세 자문사(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지분 참여 및 오스트리아인인 법적 실체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한 제한은 동 조세 자문사가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사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28) 1.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건축설계서비스 및 e)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불 :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민국 투자자는 불가리아 투자자와 제휴하여 또는 하청업체로서 활동해야 함. 라 : 건축설계서비스의 경우, 모든 범위의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프로젝트 계약을 맺을 권리를 얻기 위하여 라트비아에서 프로젝트 분야에 3년간 활동해야 하며, 대학학위가 요구됨.
f)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불 :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민국 투자자는 불가리아 투자자와 제휴하여 또는 하청업체로서 활동해야 함.
h) 의료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사, 예, 핀, 몰 : 약속 안함. 오 : 치의료서비스,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그리고, 치의료서비스,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에 대하여 제한 없음. 독 : 의사와 치과 의사가 공공보험 가입자를 치료하도록 인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 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에서 의사 및 치과 의사의 부족 프 : 유럽연합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및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이용할 수 있음. 라 :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에서 의사 및 치과 의사의 부족 불, 리 : 서비스의 공급은 인구와 기존의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수립되는 보건서비스 계획에 근거한 인가를 조건으로 함. 베 : 사회의료, 위생, 피부의학, 의료/생태 서비스, 혈액공급, 혈액준비, 수혈 및 검시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영 : 국립보건서비스 소속 의사를 위한 설립은 의료 인력계획을 조건으로 함.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오, 사, 예, 몰, 베 : 약속 안함. 불 :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형 :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그 분야의 노동시장 조건 프 :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또는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통해서만 공급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j) 1. 조산원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불, 체, 핀, 형, 물, 베, 슬 : 약속 안함. 프 : 유럽연합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및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이용할 수 있음. 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오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활동만 허용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실존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 불, 물 : 약속 안함. 핀, 베 :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약속 안함. 프 : 유럽연합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및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이용할 수 있음. 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라 : 외국인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의 고용 상황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²⁹⁾	오, 불, 사, 핀, 물, 폴, 루, 스, 베 : 약속 안함. 벨, 독, 덴, 에, 서, 프, 이, 형, 아, 라, 포, 슬 :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약국의 지리적 밀도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	제한 없음.

29) 그 밖의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일부 회원국의 경우, 조제약의 공급만이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연구개발서비스³⁰⁾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유 :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연합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b)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2 심리학자 제공 서비스 제외) ³¹⁾	제한 없음.
c)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유 :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연합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D. 부동산서비스³²⁾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제한 없음.
b) 요금 또는 계약에 기반 (CPC 822)	제한 없음.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은 임대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리 : 선박은 리투아니아인인 자연인 또는 리투아니아에 설립된 회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스 : 대한민국인이 선박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스웨덴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스웨덴의 영향력이 지배적임이 증명되어야 함.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야 함. 항공기는 특정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소유 및 통제(이사의 국적을 포함)에 관한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해야 함. 단기 리스 계약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30)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31)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에 기재된 CPC 85201의 일부임.

32)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자연인 및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CPC 83102 및 CPC 83105)	제한 없음.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 CPC 83107, CPC 83108 및 CPC 83109)	제한 없음.
e) 개인·가정물품 관련 (CPC 832)	제한 없음. 단, 벨 및 프는 CPC 832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f) 통신장비임대 (CPC 7541)	제한 없음.
F.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 (CPC 871)	제한 없음.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CPC 864)	제한 없음.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제한 없음.
d)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형 :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³³⁾ (CPC 8676)	제한 없음.
f)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제한 없음.
g)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2의 일부)	제한 없음.
h) 제조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4의 일부 및 CPC 885의 일부)	제한 없음.
i) 직업소개, 파견 서비스	

33)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은 마케팅 승인 또는 이용 승인의 부여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에 적용됨.(예: 자동차 검사, 식품 검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1. 임원급소개서비스 (CPC 87201)	불, 사, 체, 독, 에, 핀, 라, 리, 물,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서 : 국가 독점
i) 2. 직업소개서비스 (CPC 87202)	오,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물, 폴, 포, 루, 슬 : 약속 안함. 벨, 서, 프, 이 : 국가 독점 독 :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노동 시장의 상황 및 발전
i) 3. 사무지원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3)	오, 불, 사, 체, 독, 에, 핀, 라, 리, 물,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이 : 국가 독점
i) 4. 모델에이전시서비스 (CPC 87209의 일부)	제한 없음.
i) 5. 가사보조인력, 기타 상업 또는 산업근로자, 간호 및 기타 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4, 87205, 87206, 87209)	형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약속 안함. 형 : 제한 없음.
j) 1. 조사서비스 (CPC 87301)	벨, 불, 사, 체, 독, 서, 에,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덴 :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국적 및 거주요건이 있음. 공항수위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물, 폴, 루, 베, 슬 : 국민과 국가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면허가 부여될 수 있음. 서 : 시장접근은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함. 인가 부여 시 내각은 능력, 직업적 일체성과 독립성, 그리고 주민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하여 제공되는 보호가 충분한지를 고려함.
k)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³⁴⁾ (CPC 8675)	프 :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탐사 및 예비조사를 위한 구체적 인가가 요구됨.
l)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제한 없음.

3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은 광업(예: 광물, 석유 및 가스)과 관련된 일정한 활동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라 : 국가 독점 스 : 투자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 공간 및 능력 제한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스 : 투자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 공간 및 능력 제한
l) 4.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제한 없음.
l)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용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³⁵⁾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제한 없음.
m)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제한 없음.
n) 사진서비스 (CPC 875)	제한 없음.
o) 포장서비스 (CPC 876)	제한 없음.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리, 라 : 출판 분야의 설립권은 국가에 등록된 법인에만 부여됨(지점은 불가). 폴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편집장에 대해서 국적요건이 있음. 스 :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출판자 및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요건이 있음.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제한 없음.

35)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CPC 8868)는 6.F.1)1.부터 6.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덴 :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한 인가는 그들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폴 : 서약한 통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형, 슬 : 공식 번역 및 통역에 대하여 약속 안함.
r) 2. 인테리어 디자인 및 기타 전문 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제한 없음.
r) 3. 수금대리서비스 (CPC 87902)	이, 포 :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r) 4. 신용조사서비스 (CPC 87901)	벨 : 소비자 신용데이터 뱅크의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이, 포 :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³⁶⁾	제한 없음.
r) 6. 통신자문서비스 (CPC 7544)	제한 없음.
r) 7. 전화응답서비스 (CPC 87903)	제한 없음.
7. 커뮤니케이션서비스	
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목적지가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된 하위 분야 목록에 따른 우편 품목 ³⁷⁾ 의 취급 ³⁸⁾ 과 관련된 서비스: (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와 다이렉트 메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 ³⁹⁾ 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기재된 통신문의 취급,	제한 없음.

36)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인쇄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37) “취급”이란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말함.

38)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39) 예를 들어 서장, 엽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i) 주소가 기재된 소포 및 소화물⁴⁰⁾의 취급, (iii) 주소가 기재된 출판물⁴¹⁾의 취급, (iv) 등기 또는 보험가입 우편물로서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취급, (v)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특급배달서비스⁴²⁾, (vi) 주소가 미기재된 품목의 취급, 그리고 (vii) 문서 교환⁴³⁾ 그러나 하위 분야 (i), (iv) 및 (v)는 중량이 350그램 미만일 경우 그 가격이 공공 기본요금의 5배 미만인 통신품목⁴⁴⁾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등기우편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제외된다. (CPC 751의 일부, CPC 71235의 일부⁴⁵⁾ 및 CPC 73210의 일부⁴⁶⁾)	

40) 서적, 카탈로그가 이에 포함됨.

41) 잡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42) 특급배달서비스는 더욱 빠른 속도와 신뢰성과 함께 발송지로부터의 수집, 수취인에 대한 개별 배달, 종적 조회, 배송 중 도착지 및 수취인 변경 가능성, 수취 확인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

43) 제3자에 의한 운송 및 임시장소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간 우편품목을 상호 교환하는 자체배달을 허용하는 수단의 제공.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44) “통신품목”이란 발송자가 자체에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주소에 전달 및 배달되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에 서면으로 기재된 통신을 의미함. 서적, 카탈로그,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통신품목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45)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육상 운송

46) 우편물품의 자체 항공 운송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통신서비스 이 서비스는 그 운송을 위하여 통신서비스가 필요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a)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⁴⁷⁾, 방송⁴⁸⁾은 제외	제한 없음. ⁴⁹⁾
b) 위성방송 전송서비스⁵⁰⁾	유 :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기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 틀에 따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이익 목적을 보호하는 의무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벨 : 약속 안함.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제한 없음.
9.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그 밖의 전쟁 물자는 제외) 다음에 언급된 모든 하위 분야⁵¹⁾	오 : 불꽃제조 상품, 가연성 품목 및 폭발 장치, 그리고 독성 물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의약품 및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가진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핀 : 알콜성 음료 및 의약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47) 이 서비스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된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의 일부)을 포함하지 않음.

48)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 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 간의 중계연결은 포함하지 아니함.

49)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일정한 통신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유지함. 그러한 회원국은 미래에도 이러한 지분 보유를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는 시장접근 제한이 아님. 벨기에에서 벨가콤에 대한 정부의 지분 보유와 의결권은 정부기업의 개혁에 관한 1991년 3월 21일자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의 사례와 같이 입법권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됨.

50) 이 서비스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성을 통한,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를 포함함.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 이용의 판매를 포함하나 가정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51)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화학제품, 의약품, 의료 및 외과 기구·의료 물질·의료용 도구와 같은 의료용품, 군사장비 및 귀금속 (그리고 보석)의 유통에 적용되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담배 및 담배제품 및 알콜성 음료의 유통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위탁중개인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제한 없음.
b) 기타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	제한 없음.
B. 도매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도매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제한 없음.
b) 통신단말기 도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제한 없음.
c) 기타 도매서비스 (CPC 622, 에너지제품의 도매서비스 ⁵²⁾ 는 제외)	프, 이 :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 프 : 도매 약국의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약국의 지리적 밀도
C. 소매서비스⁵³⁾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소매서비스 (CPC 61112,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서, 프, 이 :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 벨, 불, 덴, 프, 이, 물, 포 : 백화점(프의 경우 대형 매장에 대해서만)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매장의 수와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

52) CPC 62271을 포함하는 이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D에 기재됨.

53) 사업서비스의 6.B. 및 6.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에너지서비스의 19.E. 및 19.F에 기재된 에너지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통신단말기 소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식품 소매서비스 (CPC 631) 그 밖의 (비에너지) 상품의 소매서비스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 소매서비스 제외⁵⁴⁾ (CPC 63211 및 CPC 63297을 제외한 CPC 632)	아, 스 : 알콜성 음료의 소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스 : 의류, 신발 및 판매지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식품의 일시적인 판매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매장에 대한 영향
D. 프랜차이즈 (CPC 8929)	제한 없음.
10.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B. 중등교육서비스 (CPC 922)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	유 : 교육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적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오 : 고등교육서비스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성인 학교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 외국인인 자연인 및 외국 협회의 초등 및/또는 중등 교육서비스 공급과, 고등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체, 슬 :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중등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CPC 92310)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54)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의 소매는 6.A.k)의 전문직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	사, 편, 물, 루, 스 : 약속 안함. 그 : 초등 및 중등 학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국가 공인 졸업장을 부여하는 고등 교육기관에 대하여 약속 안함. 서, 이 : 공인 졸업장 또는 학위를 발급하도록 인가된 사립 대학의 설립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관련 절차에는 의회의 권고가 포함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설립의 밀도 형, 슬 :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수는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 당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고등학교 및 그 밖의 고등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당국) 라 :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 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베 : 초등교육에 대하여 약속 안함. 중등 및 고등학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E. 기타 교육서비스 (CPC 929)	오, 벨, 블, 사,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록,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영 : 약속 안함. 체, 슬 : 교육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적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11. 환경서비스⁵⁵⁾ A. 폐수서비스 (CPC 9401) ⁵⁶⁾ B. 고체/ 유해폐기물관리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운송은 제외 a)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b)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C. 대기 및 기후 보호 (CPC 9404) ⁵⁷⁾	제한 없음.

55)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56) 하폐수서비스에 해당함.

57) 배기가스 정화서비스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토양 및 수질 개선과 정화 a) 오염 토양 및 수질 처리 및 개선 (CPC 9406의 일부)⁵⁸⁾ E. 소음 및 진동 저감 (CPC 9405) F.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 a)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의 일부) G. 기타 환경 및 부수 서비스 (CPC 9409)	
12. 금융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오 : 대한민국 보험자의 지점 사무소를 위한 면허는, 그 보험자가 대한민국에서 합자주식회사 또는 상호 보험 조합과 대응되거나 동등한 법적 형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거부됨. 불, 서 : 불가리아 또는 스페인에 일정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립하기 전에 대한민국 보험자는 최소 5년간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운영하도록 인가를 받았어야 함. 그 : 설립의 권리는 대표 사무소의 창설 또는 그 밖의 보험회사의 상시 주재를 포함하지 아니함. 단, 그 사무소가 대리점, 지점 또는 본점으로 설립된 경우는 제외함. 핀 :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발기인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최소 절반이 유럽연합 내에 거주지를 보유해야 함. 대한민국 보험자는 법정 연금 보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점으로서 핀란드 내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이 : 지점의 설립 인가는 궁극적으로 감독 당국의 평가를 조건으로 함.

58)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의 일부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불, 폴 : 보험 중개업자에 대해서 국내 법인화가 필요함(지점은 불가). 포 : 포르투갈 내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최소 5년의 사전 운영 경험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직접 지점 설립은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형성된 회사를 위하여 유보되어 있는 보험 중개업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함. 슬 : 대한민국인은 합자주식회사의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현지법인을 통해 보험업을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베 :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회사의 민영화에 참여할 수 없음. 상호 보험 기관으로의 가입은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회사(지점은 불가)와 내국인인 자연인에 제한됨. 자문서비스 및 청구결산서비스에 대해서 법적 실체로서의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스 : 스웨덴에 법인화되지 아니한 보험중개업체는 지점을 통하여만 설립될 수 있음.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유 : 유럽연합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위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동일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본점 및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전문 관리회사를 설립할 경우 계약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관리 활동을 수행할 것이 요구됨. 불 : 연금 보험은 법인화된 연금 보험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지점은 불가). 경영위원회의 회장 및 이사회 의 회장에게는 불가리아 내 영주가 요구됨. 사 :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소 회원(중개사)만이 사이프러스에서 증권 중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중개회사는 사이프러스 회사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경우에만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음(지점 불가). 형 : 대한민국 기관의 지점은 사적 연금 펀드 또는 벤처캐피탈의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함.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최소 2인의 헝가리 시민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외환 규정에 따른 거주를 하고 최소 1년간 헝가리에 영주해야 함. 아 : 집합투자기구가 계약형 투자신탁 및 변동자본회사(양도가능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체인 UCITS는 제외)로 구성된 경우, 수탁인/예탁기관 및 관리회사는 아일랜드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투자 합자회사의 경우 최소 1인의 일반 파트너는 아일랜드 내에 법인화해야 함. 아일랜드 증권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하여 실체는 (a) 법인화 또는 제휴를 통해 아일랜드에서 인가를 받고, 본점/등록사무소를 아일랜드 내에 보유하거나, (b)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이 : 이탈리아에서 설립을 통하여 증권결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이탈리아에서 설립을 통하여 중앙증권예탁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인가받기 위하여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유럽연합의 법령 상 조화된 UCITS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탁자/예탁기관은 이탈리아 또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법인화를 하고 이탈리아에서 지점을 통해 설립할 것이 요구됨. 유럽연합의 법령 상 조화되지 아니한 UCITS의 관리 회사 역시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유럽연합 내에 법적인 본점을 보유한,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및 유럽연합 입법 상 조화된 UCITS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한 UCITS만이 연금 자원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방문판매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개업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인가된 금융판매원을 활용해야 함. 외국 중개업자의 대표사무소는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리 : 자산관리의 목적 상 전문 관리회사로의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리투아니아에 등록 사무소를 보유한 회사만이 자산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포 : 연금기금 관리는 포르투갈에서 법인화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전문화된 회사 및 포르투갈에서 설립되고 생명보험 사업을 행하도록 인가받은 보험회사,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연금기금 관리를 위하여 인가된 실체만이 공급할 수 있음.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루 : 외국 기관의 지점은 자산관리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함. 슬 : 슬로바키아 내 투자서비스는 은행, 투자회사, 투자펀드 및 법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합자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지닌 증권딜러가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베 : 민영화에 따른 은행 지분 보유 및 사적 연금기금(비강제 연금기금)에 대하여 약속 안함. 스 : 저축은행의 설립자는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자연인이어야 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3.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⁵⁹⁾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병원서비스 (CPC 9311) B. 구급차서비스 (CPC 93192) C.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CPC 93193) D. 사회서비스 (CPC 933)	유 : 보건 및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운송시설, 인구밀도, 지리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 오, 베 : 구급차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 병원서비스, 구급차서비스 및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사, 체, 핀, 몰, 스, 슬 : 약속 안함. 형 :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폴 : 구급차서비스,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영 : 구급차서비스,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및 조리원 및 요양원 그리고 양로원 외의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14.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 ⁶⁰⁾	불 :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바, 카페 및 레스토랑에 적용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설립의 밀도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 (CPC 7471)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포 : 포르투갈에 회사 기반을 가진 상업 회사의 설립이 요구됨(지점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제한 없음.
15.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59)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60)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 부수 서비스 중 17.E.a)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사, 체, 핀, 물,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불 :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CPC 96192) 및 극장 부수 서비스(CPC 96193)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에 : 영화관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CPC 96199)에 대하여 약속 안함. 라 : 영화관운영서비스(CPC 96199의 일부)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B.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	프 : 프랑스어로 출판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보유는 그 회사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뉴스통신사 : 약속 안함. 단, 대한민국 뉴스통신사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지사 또는 지국을 설립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뉴스를 배포할 수 없음. 불, 사, 체, 에, 형, 리, 물, 루, 폴, 베, 슬 : 약속 안함. 포 : “Sociedade Anonima”의 법적 형태로 포르투갈에서 법인화된 뉴스회사는 명목주식의 형태로 사회 자본을 보유하여야 함.
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⁶¹⁾ (CPC 963)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룩,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오, 리 : 사적 운영자의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 보유는 허가 또는 면허를 조건으로 함.
D. 스포츠서비스 (CPC 9641)	오, 베 : 스키학교서비스 및 산악가이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에, 라, 물, 폴, 루, 슬 : 약속 안함.
E. 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 (CPC 96491)	제한 없음.
16.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⁶²⁾	

61)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6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및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해운서비스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국제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⁶³⁾) b) 국제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⁶⁴⁾)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B. 내수운송	
a) 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1 ⁶⁵⁾) b) 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2 ⁶⁶⁾)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기반한 조치는, 관련된 국가에 기반하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일정한 운수권을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 또는 상시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 과반수를 유럽연합 시민이 보유해야 함.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형 : 설립시 국가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 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63)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64)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65)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66)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철도운송⁶⁷⁾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D. 도로운송⁶⁸⁾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유 : 외국인 투자자는 운영자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서비스를 제외하고 한 회원국 내에서 운송서비스(연안운송)를 공급할 수 없음. 유 : 택시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오, 불 :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가진 유럽연합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핀, 라 :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 등록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라 및 스 : 설립된 실체는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서 : CPC7122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국내 수요 이, 포 : 리무진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서, 아, 이 : 시내버스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프 : 시내버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67)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적용됨.

68)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화물운송⁶⁹⁾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은 제외 ⁷⁰⁾)	오, 불 :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핀, 라 :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 등록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라 및 스 : 설립된 실체는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이, 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국내 수요
E.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⁷¹⁾⁷²⁾ (CPC 7139)	오 : 배타적 권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17. 운송 부수 서비스⁷³⁾	
A. 해운 부수 서비스⁷⁴⁾ a) 해운화물취급서비스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13) h) 예선서비스 (CPC 7214)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예,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 해운화물취급서비스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 ⁷⁵⁾ 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 불 :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해운대리업서비스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운회사는 그 주사무소를 위한 대리점으로 활동할 지점 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짐. 선박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해운 부수 서비스는 불가리아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음.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69)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일부 회원국에 적용됨.

70) CPC 71235의 일부로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중 7.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71)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B에 기재됨.

7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73) 사업서비스의 6.F.1)1.부터 6.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7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부수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적용됨.

75) 이 조치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해상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케이터링 포함) (CPC 749의 일부)	
B. 내수운송 부수 서비스⁷⁶⁾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23) e) 예선서비스 (CPC 7224) f) 내수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g)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운항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오, 벨, 블,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 또는 상시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 과반수를 유럽연합 시민이 보유해야 함. 단, 창고업, 화물운송대리업, 선적 전 조사는 제외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참여는 49퍼센트로 제한됨. 형 : 설립시 국가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 창고업서비스는 제외 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76)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⁷⁷⁾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예선서비스 (CPC 7113) e)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3)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해서 약속 안함(법인화 필요).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D. 도로운송 부수 서비스⁷⁸⁾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운전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e) 도로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4)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오 : 운전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만 인가가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 핀 : 운전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해서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에 등록된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77)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됨.

78)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E.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지상조업서비스 (케이터링 포함)	유 : 내국민대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활동의 분류는 공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약 및 다른 이유로 2개의 공급자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풀 : 냉동 또는 냉장 물품 및 액체 또는 가스 벌크보관서비스에 대해서, 활동의 분류는 공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약 및 다른 이유로 2개의 공급자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음.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사, 체, 형, 물, 풀, 루, 슬 : 약속 안함. 불 : 외국인인 49퍼센트 지분 제한 조건하에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그리고 지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d)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CPC 734)	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되어야 함. 또는 만약 면허를 부여하는 회원국이 허용하는 경우는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도 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해야 함.
e) 판매 및 마케팅 f) 컴퓨터 예약시스템	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⁷⁹⁾를 대한민국에 있는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럽연합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각각 유럽연합 내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가 대한민국의 항공사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는 유럽연합 항공사가 대한민국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79) “동등한 대우”라 함은 유럽연합 항공사 및 유럽연합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F. 연료 외의 물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⁸⁰⁾ a)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연료 창고업서비스⁸¹⁾ (CPC 742의 일부)	제한 없음.
18. 기타 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제공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폴, 루, 스,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각 운송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이 약속목록에 명기된 제한을 저해하지 아니함.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폴, 루, 스, 베, 슬 : 약속 안함.
19. 에너지서비스	
A. 광업 부수 서비스⁸²⁾ (CPC 883) ⁸³⁾	제한 없음.
B. 연료 파이프라인 운송⁸⁴⁾ (CPC 713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라,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C.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연료 창고업⁸⁵⁾ (CPC 742의 일부)	폴 : 에너지 공급국의 투자자는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음.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80)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C에 기재됨.

81)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3)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링빗 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 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 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 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 (프레스 펌핑), 스티플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 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그리고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8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5)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고체, 액체 및 기체 연료와 관련 제품의 도매서비스</u> (CPC 62271) <u>그리고 전기, 증기 및 온수 도매서비스⁸⁶⁾</u>	유 : 전기, 증기 및 온수의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u>E. 자동차연료 소매서비스</u> (CPC 613) <u>F.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판매</u> (CPC 63297) <u>그리고 전기,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 소매서비스⁸⁷⁾</u>	유 : 자동차연료, 전기,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덴, 프, 이, 물, 포 :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서비스에 대해서 백화점(프의 경우 대형 매장에 대해서만)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매장에 수와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역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
<u>G. 에너지유통 부수 서비스⁸⁸⁾</u> (CPC 887)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아, 형, 이, 록, 리, 물, 네, 폴, 포, 루, 슬, 스, 영 :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그리고 컨설팅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베 : 가스유통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가스 유통에 대하여 제한 없음.
20.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 서비스 (CPC 9701)	제한 없음.
b) 머리카락서비스 (CPC 97021)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86)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7)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8)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미장서비스 (CPC 97029)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기반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 ⁸⁹⁾⁹⁰⁾ (CPC ver. 1.0 97230)	제한 없음.
f) 통신연결서비스 (CPC 7543)	제한 없음.

89)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6.A.h) 의료서비스, 6.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13.A 및 13.C)에 기재됨.

90)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일정한 수원지와 같은 공용구역에서 제공되는 스파서비스 및 의료요법이 아닌 마사지에 적용됨.

부속서 7-가-3

유럽연합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1. 아래의 유보 목록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경제활동으로서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대해 제한이 적용되는 활동을 표시하고 그러한 제한을 명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제한이 적용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 제한을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유럽연합 당사자는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하는(약속 안함으로 남아 있는) 경제활동에서 핵심인력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가.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나.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다.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관한 약속은 그들의 일시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제7.18조 및 제7.19조의 의미에서의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및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에 법적 주소를 보유할 필요)는,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핵심인력 및 대졸 연수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체류기간, 최저임금 및 단체임금협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입국, 체류, 직업 및 사회안전 조치에 관한 유럽연합 당사자의 법과 규정의 모든 요건은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6.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아래의 목록은 설립에 관한 약속 목록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공공 독점과 배타적 권리의 존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8.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그 주요 기준은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공급될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그 지역에서의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9. 아래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10.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형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u>경제적 수요 심사</u> 불, 형: 대졸연수생에 대해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 ¹⁾
모든 분야	<u>기업내 전근자의 범위</u> 불: 기업내 전근자의 수는 각 불가리아 법인에 의해 고용된 유럽연합 시민 수의 연간 평균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100명 이하가 고용된 경우, 기업내 전근자의 수는 인가를 조건으로 총 고용인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음. 형: 대한민국의 법인에서 파트너인 자연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모든 분야	<u>대졸연수생</u> 오, 독, 서, 프, 형 에 대해, 연수는 취득한 학사 학위와 연계되어야 함.
모든 분야	<u>경영 이사 및 감사</u> 오: 법인 지점의 경영 이사들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해야 함. 오스트리아 무역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지점 내의 자연인은 오스트리아에 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핀: 민간 기업인으로서 무역을 행하는 외국인은 무역 허가가 필요하고 유럽연합 내에 영주해야 함.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유한회사의 경영 이사에 적용됨.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영 이사가 상시 거주해야 함. 프: 산업, 상업 또는 기술적 활동의 경영 이사는 거주 허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 구체적 인가가 필요함. 루: 상업회사의 감사와 그 대리인의 과반수는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 스: 법인 또는 지점의 경영 이사는 스웨덴에 거주해야 함.
모든 분야	<u>인정</u> 유: 학위상호인정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은 유럽연합 시민에게만 적용됨. 한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서 규제되는 전문직서비스 영업을 할 권리는 다른 회원국에서 영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 ²⁾

1)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2) 비유럽연합 국가 국민이 그들 자격에 대해 유럽연합 전 지역에 걸치는 자격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 제7.21조에 정의된 틀 내에서 협상된 상호인정협정이 필요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4. 제조업³⁾	
H.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 (ISIC rev. 3.1: 22),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 제외 ⁴⁾	이: 출판업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폴: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편집장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스: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출판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6.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⁵⁾ 공증, “집행관 업무(<i>huissiers de justice</i>)” 또는 다른 “공무원 업무(<i>officiers publics et ministeriels</i>)”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는 제외	오, 사, 서, 그, 리, 물, 루, 슬: (유럽연합 및 회원국) 국내법 업무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스페인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 벨, 핀: 법률대리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벨기에에서 비행사사건에서 “최고법원(<i>Cour de cassation</i>)”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를 조건으로 함. 불: 대한민국 변호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그리고 불가리아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률대리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음. 법률조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주가 요구됨. 프: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i>)”와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i>)”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와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3) 이 분야는 사업서비스의 6.F.h)에 기재된 제조업에 부수된 자문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4)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의 6.F.p)에 기재됨.

5)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 지역의 법과 관련해서만 인가됨.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제
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연합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
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
로 활동하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연합 측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
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그 국가에 속하는 의뢰인을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형: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외국 변호사에 대해 법적 활동의 범위는 법률자문의 제공에 한정되며, 이러한 법률자문은 헝가리 변호사 또는 법무회사와 체결된 협력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함. 라: 형사 절차에서의 법률대리권이 유보된, 서약한 사무변호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덴: 법률자문서비스의 마케팅은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에 제한됨.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이 요구됨. 룩: 룩셈부르크 및 유럽연합 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 스: 스웨덴의 변호사 직명 “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i>advokat</i>)”의 사용만을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협회에의 가입은 거주요건을 조건으로 함.
b) 1.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감사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2, CPC 86213, CPC 86291 및 CPC 86220)	프: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의 제공은 외교부 장관과의 합의에서 경제금융산업 장관의 결정을 조건으로 함. 거주요건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b) 2. 감사서비스 (CPC 86211 및 회계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2)	오: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그리고 특정한 오스트리아법(예: 합자주식회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규정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 덴: 거주요건이 있음. 서: 법정 감사인에 대하여, 그리고 회사법에 관한 제8차 유럽경제공동체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관리자, 이사 및 파트너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핀: 핀란드 책임회사의 감사인 중 최소 1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그: 법정 감사인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회사법에 관한 제8차 유럽경제공동체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관리자, 이사 및 파트너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개별 감사인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이 있음. 스: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승인을 위해 거주가 요구됨.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⁶⁾	오: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 불, 베: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형: 거주요건이 있음.

6) 6.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건축설계서비스 및 e)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예: 최소 1인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컨설턴트)가 에스토니아에 거주해야 함. 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축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그, 형, 슬: 거주요건이 있음.
f)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예: 최소 1인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컨설턴트)가 에스토니아에 거주해야 함. 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축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 슬: 거주요건이 있음. 그, 형: 거주요건이 있음.(CPC 8673의 거주요건은 대졸연수생에게만 적용됨)
h) 의료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체, 이, 슬: 거주요건이 있음. 체, 루, 슬: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벨, 룩: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불, 물: 국적조건이 있음. 독: 공공의 보건상 이익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국적조건이 있음. 덴: 구체적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제한된 인가가 18개월 까지 부여될 수 있고 거주가 요구됨.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연간 설정된 쿼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함. 라: 외국인에 의한 의료 업무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의 의사 및 치과 의사에 대한 경제적 수요에 근거한 지방보건당국으로부터의 허가가 요구됨. 폴: 외국인에 의한 의료 업무를 위해 허가가 요구됨. 외국인 의사는 직능 단체 내에서 제한된 선거권을 가짐. 포: 심리학자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불, 독, 그, 프, 형: 국적조건이 있음. 체 및 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이: 거주요건이 있음. 폴: 국적조건이 있음. 외국인은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j) 1. 조산원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오: 오스트리아에서 전문직 개업을 하기 위해, 해당 인은 해당 직종에서 설립 전에 최소 3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함. 벨, 록: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사, 예, 루: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연간 설정된 쿼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함. 이: 거주요건이 있음. 라: 일정 지역에서의 조산원 총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수요 조건에 따라 지방보건당국이 인가함. 폴: 국적조건이 있음. 외국인은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활동만 허용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실존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 오스트리아에서 전문직 개업을 하기 위해, 해당 인은 해당 직종에서 설립 전에 최소 3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함. 벨, 프, 록: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사, 체, 예, 루, 슬: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형: 국적조건이 있음. 덴: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한된 인가가 18개월 까지 부여될 수 있고 거주가 요구됨. 사, 체, 그, 이: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결정은 지역적 결원 및 부족을 조건으로 함. 라: 일정 지역에서의 간호사 총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수요의 조건에 따라 지방보건당국이 인가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⁷⁾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설정된 쿼터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프랑스의 약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접근이 가능함. 독, 그, 슬: 국적조건이 있음. 형: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CPC 63211)를 제외하고 국적조건이 있음.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D. 부동산서비스⁸⁾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프, 형,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라, 물, 베: 국적조건이 있음.
b)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 (CPC 822)	덴: 달리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요건이 있음. 프, 형,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라, 물, 베: 국적조건이 있음.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은 임대서비스	
e) 개인·가정물품 관련 (CPC 832)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f) 통신장비임대 (CPC 754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7)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됨.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조제약의 공급만이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8)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자연인 및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F. 그 밖의 사업서비스</u>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이, 포: 생물학자 및 화학분석가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f) 농업, 수렵업,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이: 농경제학자 및 “농업기술자(<i>periti agrari</i>)”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벨: 경영 인력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불, 사, 체, 에, 라, 리, 몰, 폴, 루, 베, 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덴: 경영자 및 공항수위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서, 포: 전문 인력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프: 경영 이사 및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경비서비스 및 귀중품 운송을 위해 필요한 인가를 얻기 위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k) 과학·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CPC 8675)	불: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독: 공적으로 지명된 조사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프: 재산권 설립 및 토지법과 관련된 “조사” 활동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l)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몰: 국적조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라: 국적조건이 있음.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유: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l)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물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⁹⁾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다음은 제외: CPC 633, 8861, 8866에 대해, 벨, 독, 텐, 서, 프, 그, 형, 아, 이, 록, 물, 네, 폴, 포, 루, 스, 영 개인·가정물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보석류 제외)에 대해, 불: CPC 63301, 63302, 63303의 일부, 63304, 63309 CPC 633, 8861-8866에 대해, 오 CPC 633, 8861-8866에 대해, 예, 핀, 라, 리 CPC 633, 8861-8865에 대해, 체, 슬 CPC 633, 8861, 8866에 대해, 베
m)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사, 예, 물, 폴, 루, 베: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n) 사진서비스 (CPC 875)	라: 전문사진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폴: 항공사진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스 : 출판업자 및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베: 국적조건이 있음.

9)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8868)는 6.F.1)1.부터 6.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핀: 공인 번역사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덴: 달리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r) 3. 수금대리서비스 (CPC 87902)	벨, 그, 이: 국적조건이 있음.
r) 4. 신용조사서비스 (CPC 87901)	벨, 그, 이: 국적조건이 있음.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¹⁰⁾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험이 있어야 함.
9.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그 밖의 전쟁 물자는 제외)	
C. 소매서비스 ¹¹⁾	
c) 식품 소매서비스 (CPC 631)	프: 담배판매자(즉, buraliste)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0.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 및 지시하고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이: 국가 공인 졸업장을 발행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그: 교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0)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인쇄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11) 사업서비스의 6.B. 및 6.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에너지서비스의 19.E. 및 19.F에 기재된 에너지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중등교육서비스 (CPC 922)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 및 지휘하고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이: 국가 공인 졸업장을 발행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그: 교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라: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 및 지시하고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체, 슬: 중등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 (CPC 92310)를 제외한 고등교육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국가 공인 졸업장을 부여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덴: 교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2. 금융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오: 지점의 경영진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2인의 자연인으로 구성됨. 에: 직접보험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자본참여를 한 보험 합자주식회사의 경영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 보유 비율과 비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경영진 구성원의 절반을 초과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음. 현지법인 또는 독립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에스토니아에 영주해야 함. 서: 보험계리업에 대해 거주요건(또는 그 대체 요건으로 2년의 경험)이 있음. 이: 보험계리업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 핀: 달리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회사의 경영 이사 및 최소 1인의 감사는 유럽연합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달리 회사가 유럽연합에 본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보험회사의 일반 대리업자는 핀란드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 제외)	불: 집행 이사 및 경영 대리인에 대하여 불가리아에서의 영주가 요구됨. 편: 달리 금융감독당국이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여수신 기관의 경영 이사 및 최소 1인의 감사는 유럽연합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중개인(개인)은 유럽연합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이: “금융 판매원(promotori di servizi finanziari)”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영역 내의 거주요건이 있음. 리: 최소 1인의 관리자는 유럽연합의 시민이어야 함. 폴: 은행 임원 중 최소 1인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3.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u>A. 병원서비스</u> (CPC 9311) <u>B. 구급차서비스</u> (CPC 93192) <u>C.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u> (CPC 93193) <u>E. 사회서비스</u> (CPC 933)	프: 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인가가 필요함. 인가 시 국내 관리인의 이용가능성이 고려됨. 라: 의사, 치과 의사, 조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폴: 외국인의 의료 업무에는 인가가 요구됨. 외국인 의사는 직능 단체 내에서 제한된 선거권을 가짐.
14.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u>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u>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 ¹²⁾	불: 불가리아 회사의 자본 중 공공(국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관리자의 수는 불가리아 시민권자인 관리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함.

12)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 부수 서비스 중 17.E.a)의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 (CPC 7471)	불: 불가리아 회사의 자본 중 공공(국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관리자의 수는 불가리아 시민권자인 관리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함.
C.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불, 사, 서, 프, 그, 형, 이, 리, 물, 폴, 포, 슬: 국적조건이 있음.
15.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프: 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인가가 필요함. 2년을 초과하는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인가는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16.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a) 국제여객운송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b) 국제화물운송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유: 선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오: 경영 이사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D. 도로운송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또는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덴: 관리자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불, 물: 국적조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화물운송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은 제외 ¹³⁾)	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또는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물: 국적조건이 있음.
E.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¹⁴⁾ (CPC 7139)	오: 경영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7. 운송 부수 서비스¹⁵⁾	
A. 해운 부수 서비스 a) 해운화물취급서비스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13) h) 예선서비스 (CPC 7214) i) 해상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케이터링 제외) (CPC 749의 일부)	오: 경영 이사의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물: 국적조건이 있음. 덴: 통관서비스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그: 통관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특허 해운대리업자(<i>raccomandatario marittimo</i>)”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

13) CPC 71235의 일부로서 통신서비스 중 7.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14)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B에 기재됨.

15) 사업서비스의 6.F.1)1부터 6.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도로운송 부수 서비스 d) 운전자 포함 상업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또는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물: 국적조건이 있음.
F.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¹⁶⁾ a)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되는 연료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오: 경영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9. 에너지서비스	
A.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¹⁷⁾	슬: 거주요건이 있음.
20.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서비스 (CPC 970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 머리카락서비스 (CPC 9702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d) 기타 미장서비스 (CPC 97029)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¹⁸⁾ (CPC ver. 1.0 97230)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6)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C에 기재됨.

17)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링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 (프레스 펌핑), 스태플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18)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6.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13.A 및 13.C)에 기재됨.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가.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 해

1. 아래의 약속 목록(이하 “이 양허표”라 한다)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서비스 분야, 그리고 유보에 의해 그러한 분야에서 유럽연합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이 양허표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대한민국에 의해 약속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그리고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나.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5조 및 제7.11조에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다.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6조 및 제7.12조에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세 번째 열, 그리고

라.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및 설립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7.5조 및 제7.11조와 제7.6조 및 제7.12조에

따른 양허표 작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기술하는 네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양허표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제7.5조 및 제7.11조와 제7.6조 및 제7.12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7.5조 및 제7.11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7.6조 및 제7.12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¹⁾

1) 이 항의 목적상, 제7.6조 및 제7.12조에 따라 규정된 대우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이고 이 협정의 서명 후 발효될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속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다.

3. 네 가지 다른 공급형태가 이 양허표에 표시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가. “1) 국경 간 공급”의 공급형태는 제7.4조제3항가호1목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나. “2) 해외소비”의 공급형태는 제7.4조제3항가호2목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다. “3) 상업적 주재”의 공급형태는 제7.9조가호에 따라 설립을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라. “4) 자연인의 주재”의 공급형태는 제7.17조에 따라 영업 목적의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4. 제7.11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유형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대한민국에 의해 유지되거나 채택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5. 대한민국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하는 경제활동에서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하여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행해진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관한 대한민국의 약속은 그들의 일시적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가 허용된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는 대한민국의 이민 및 노동 법을 준수한다.

6.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CPC 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7.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제7.5조 및 제7.11조와 제7.6조 및 제7.12조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이 양허표는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에서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및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에 법적 주소를 보유할 필요)는,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유럽연합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제7.1조에 따라, 이 양허표는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이 양허표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www.parlament.gv.at

- 2) 이 유보는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3) 이 유보의 목적상, “공기업”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함.
- 4) 경제적 취약집단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조치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5) <u>핵심인력 및 상용서비스판매자</u>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에 관한 제4절에 따른 약속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u>대졸연수생(GT)</u> 아래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CPC 861, CPC 862, CPC 863, CPC 851, CPC 853, CPC 82201**, CPC 82202**, CPC 82203**, CPC 82204**, CPC 82205**, CPC 82206**, CPC 83104, CPC 832, CPC 86761**, CPC 86763**, CPC 86769**, CPC 633, CPC 8861, CPC 8862, CPC 8863, CPC 8864, CPC 8865, CPC 8866, CPC 874**, CPC 7512**, 통신서비스, CPC 8929**를 제외한 유통서비스, 교육서비스, CPC 9401**, CPC 9402**, CPC 641, CPC 642, CPC 6431**, CPC 7471, CPC 87905, CPC 96191, CPC 96192, CPC 962, CPC 7472, CPC 7211, CPC 7212, CPC 7111, CPC 7112, CPC 71233**, CPC 9702, ISIC 개정판 3.16): 011, 012, 013, 015.	4) 토지취득은 토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	

5)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적용됨. 대졸연수생에 대한 제한 중 이중별표를 가진 CPC 코드에 관하여, “약속 안함”의 범위는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의 관련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약속 범위와 동일함.

6) 이 양허표에 기재된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u>사업서비스</u>			
A. <u>전문직서비스</u>			
a. 법률서비스 (CPC 861) 다음을 제외함. (i)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1)2)3) (a)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1)2)3) 시장접근 열 (b)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됨.	1.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거나 국제 규범인 경우에 허용됨. 2. 원자격국 직명의 본국 언어로의 사용이 허용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사”라는 직명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iv)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b) (a)7)에서 공급이 허용된 법률서비스 외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리고 (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3.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단, 한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7)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감독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d)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www.parlament.gv.at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자연인의 이동은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서만 허용된다. 외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의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서비스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래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			
1.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야 함. 2.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있어야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함. 3.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의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하여야 함. 4.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지사, 현지 사무소, 현지법인 또는 합작기업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대한민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5. 외국법자문사는 일 년에 최소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www.parlament.gv.at

8)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등록된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고용 제한. (b) 외국 공인회계사의 대한민국 내 감사서비스 제공 제한. (c)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a)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b)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등록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1년까지 허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www.parlament.gv.at

9)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대한민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고용 제한. (b) 외국 세무사의 대한민국 내 세무조정 또는 세무대리 서비스 제공 제한. (c)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a) 대한민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b)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세무사 1인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설계서비스 (CPC 8671)	1) 상업적 주재 ¹⁰⁾ 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4)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본국의 법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정규 6개 건축사 시험과목 중 2개 과목인 (i) 건축법규와 (ii) 건축설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e.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상업적 주재는 법인일 필요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의료서비스 (CPC 932) 수산질병관리사 포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설비 자문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연구개발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부동산서비스			
중개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1) 상업적 주체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감정평가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 등 정부의 권한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서비스는 제외	1) 상업적 주체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하여 허용.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83105**)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개인·가정용품 관련 임대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한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F. 기타 사업서비스</u>			
a. 광고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로젝트 경영 및 기타 경영 서비스 (CPC 86601, 866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성분·순도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 ¹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술적 진단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 ¹³⁾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3) 86763, 86769 : CPC 86763, 86769 중 전기제품에 대한 검사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가금류감별서비스 (CPC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를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단 88411, 88450, 88442, 88493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소개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u>상법상</u> 의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직업소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1. 회사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함. 2.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서비스 공급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사업소당 2천만원 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 조사 및 경비 서비스 (CPC 87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에서는 아래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됨. (a) 시설경비 (b) 호송경비 (c) 신변보호 (d) 기계경비, 그리고 (e) 특수경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서비스 (CPC 86751) 지각조사서비스 (CPC 867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표조사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1) 상업적 주제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지도제작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	1) 상업적 주제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단,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1) 인쇄 (CPC 88442**)¹⁴)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4) 88442 : 스크린인쇄, 그라비아인쇄 및 CPC 88442 중 인쇄 관련 서비스업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r. 2) 출판 (CPC 88442**) 신문, 정기 간행물 출판서비스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속기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전문디자인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B. 쿠리어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 ¹⁵⁾ 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우편법 ¹⁶⁾ 상 대한민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 ¹⁷⁾ 를 가지는 신서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 이 약속은 자기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항면장 및 항공기를 보유한 배달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아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서비스 사업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와 관련한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5) “특급배달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및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16)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 관련 서류, 또는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17)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병역의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통신서비스</u> a. 음성전화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서비스 d. 텔렉스서비스 e. 전신서비스 f. 팩시밀리서비스 g. 전용회선서비스 o. 기타 디지털셀룰러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PCS(개인통신서비스) TRS(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 데이터서비스 IAS(인터넷접속서비스) PSTN(공중교환전화망)과 연결된 VoIP(인터넷전화)서비스	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대한민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상업적 약정 없이 위성 설비를 통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신호 전송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¹⁸⁾을 허용함. 2) 제한 없음. 3)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부여됨.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¹⁹⁾ 모두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8) 이 서비스는 오직 위성에 의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방송사업자 간 중계 연결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서비스로 정의됨. 따라서, 이 서비스는 위성설비의 임대를 포함하나 일반대중에게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그리고, 이 서비스는 국내간 연결(위성에 의한 이러한 신호의 국내 영역으로부터 국내 영역으로의 전송)은 포함하지 아니함.

19) “외국인의제법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대한민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함. (a) 외국인의제법인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²⁰⁾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 단, KT와 SK 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b) 외국인의제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0)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함.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음)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함.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를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부가서비스²¹⁾</u>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축적 및 전송, 축적 및 검색 포함한 고도 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 ²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데이터 전송서비스 공급을 허용함. ²³⁾

21) “부가서비스”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함.

2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23)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비스 및 임대회선의 단순재판매는 제외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통신 관련 서비스 a. 장비임대서비스 (CPC 7541) b. 통신단말장비의 도소매 서비스 (CPC 75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건설서비스 (CPC 511-518)	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유통서비스 ²⁴⁾			
A.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 단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중개인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4)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 (a) 총포·도검, 및 화약류 거래
 -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서비스
 -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
 -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u>도매서비스</u> (CPC 61111, 622**, 다만, 62211 중 곡물도매업, 62223 및 홍삼 도매업은 제외) ²⁵⁾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a) 중고자동차 도매업 (b)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주류 도매업을 하는 자는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5) 천연가스의 도매거래는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모든 분야 - 가스 산업” 하에 기재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소매서비스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사업 제외), 631**(담배, 쌀, 홍삼 제외), 632)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사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의약품 소매서비스(한약재 포함)를 공급하는 자는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PG 관련 소매거래</u> <u>및 주유소 사업</u>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u>프랜차이즈</u> (CPC 8929**) ²⁶⁾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6) 프랜차이즈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정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교육서비스²⁷⁾			
C. 고등교육서비스²⁸⁾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인평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교육서비스 다음을 제외함. (i) 보건·의료 관련 고등교육 (ii) 유아·초등· 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학교법인 ²⁹⁾ 만이 장관의 인가를 얻어 고등교육기관 설립이 가능. 다만 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 불필요. 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 수도권지역 ³⁰⁾ 에 사내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 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 ³¹⁾ 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한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27) 모든 서비스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전문직 실무수습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을 목적으로 하는 학위 인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8)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됨.

29) “학교법인”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함.

30)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31)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함.

www.parlament.gv.at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	현지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 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이 가능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의료인, 약사, 의사, 한약사, 의료기사,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의 연간 학생정원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의 총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성인교육서비스</u>³²⁾ (CPC 924**) 사립성인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교육서비스 다음을 제외함. (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졸업장을 수여 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서비스 (ii) <i>고용보험법</i>, <i>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i> 및 <i>선원법</i>에 따른 정부지원 직업훈련 서비스 (iii) 방송을 통한 교육서비스, 그리고	1) 보건·의료 관련 성인교육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으로 한정됨. (a)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³³⁾ 그리고 (b)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외의 성인 평생교육시설로서 (i)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언론 기관에 부설된 것, (ii) 지식·인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 또는 (iii) 온라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1) 보건·의료 관련 성인교육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32)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33)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서비스	수도권 지역에서 총 건평 3,000 평방미터 이상의 성인교육시설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서비스			
다음 분야별 약속에 기재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내의 서비스를 제외한 CPC 9403 및 CPC 9406에 따른 서비스에 관련하여,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 제7.6조 및 7.12조(내국민대우)의 의무는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형태 1부터 3에 대하여 적용됨.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5조 및 제7.11조(시장접근)의 의무는 그러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함.			
A. <u>폐수서비스</u> 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CPC 94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CPC 94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비산업폐수서비스 관련 관리계약을 위한 경쟁절차에서 유럽연합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함. 이전 문단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지방 차원에서의 동 서비스 공급은 공공 독점 또는, 예를 들어 양허계약을 통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공 당국은 다음의 가능성을 보유함. (a) 배타적 권리의 적용 (b) 서비스 관리계약의 자유로운 선택 (c) (공개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배타적 권리 부여 방식의 선택, 그리고 (d) 하나의 관리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예를 들어, 양허계약 종료시 공공 독점으로의 복귀)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u>폐기물처리서비스</u> 산업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³⁴⁾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기타</u>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환경시험평가서비스 (CPC 9406**, 9409**) ³⁵⁾ 토양 및 지하수 정화 (CPC 9406**) 환경컨설팅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5)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금융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대한민국 양허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 금융서비스			
두주(頭註): 모든 금융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제7.11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³⁶⁾ - 제7.11조 및 제7.1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함. -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 함. - 대한민국이 자신의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허용은 대한민국이 그러한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구매권유를 허용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한민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정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한 약속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한민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 밖의 건진성 규제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공개할 경우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할 비밀 영업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임.			

36) 이 두주(頭註)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양 당사자는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7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함³⁷⁾: 한국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³⁸⁾ 7. 대한민국은 (a) 다음 금융서비스 공급자 중 하나 이상에(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대하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 수산업협동조합 (b)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더 큰 규모의 자본 대비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조세의 면제 8.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9.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이 이 양허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을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 자연인 또는 그 법인에게 공급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함.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음.			

37)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장은 이 항에 명시된 실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함.

3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이 항의 목적상,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서비스공급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위의 두주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감독되는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제7장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공급자로 간주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11. 대한민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함. 다만, 대한민국은 (a)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b)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설립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제되고 감독되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³⁹⁾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d)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위 (a)와 (b)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중개서비스 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d)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위 (a)와 (b)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중개서비스 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39) “컨설팅”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함.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강제적인”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는 고려되지 아니함.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음. 3)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투명성을 위하여,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와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이 제한될 것이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한 제한이 부과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강제적인”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는 고려되지 아니함.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www.parlament.gv.at

40)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에서 언급되는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해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다음 종류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서비스공급자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음. (a) 신용협동조합 (b) 상호저축은행 (c) 여신전문금융회사 (d) 종합금융 (e)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 (f) 신용정보 (g) 일반사무관리회사 (h)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i) 채권평가회사 대한민국에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현지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음. 대한민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기존의 두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됨.	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해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⁴¹⁾”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음. 투명성을 목적으로, (a)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함. (b) 자연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c)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외의 기업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그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41)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한국거래소만이 대한민국에서 증권 또는 선물시장을 운용할 수 있음. 증권예탁결제원만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증권회사 계정 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대한민국에서의 각 지점 설치에 개별 인가를 요구함.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현지법인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대한민국 지점은 운영자금을 대한민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함.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됨.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됨. 대한민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u>A. 호텔 및 레스토랑</u> (CPC 641, 6431**) 단, CPC 6431 중 철도·항공운송 관련 시설서비스는 제외 음식제공서비스 (CPC 6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B. 여행알선대행서비스</u>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C. 관광안내서비스</u>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A. <u>엔터테인먼트서비스</u>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뉴스제공서비스</u> (CPC 962)	1)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국내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함.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사 또는 지국은 대한민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의 대표자 또는 편집인,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a)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b)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음. (a) 외국정부 (b) 외국인 (c)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d) 외국인이 100분의 25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a)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b)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c)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u>레크리에이션파크 서비스</u> (CPC 96491 단, CPC 96191, 96192 및 해변서비스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www.parlament.gv.at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서비스			
A. <u>해운서비스</u> 국제운송 (CPC 7211, 7212) 연안운송제외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제한 없음. (b)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동자: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전기공급 등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주석 :			
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 함.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해운 부수 서비스</u> 해상화물취급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업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CPC 748**) ⁴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서비스 (CPC 748**, 749**) ⁴³⁾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 ⁴⁴⁾ (CPC 886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2) CPC 748 중 자기의 명의 (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43) CPC 748**, 749** :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매매를 위한 중개서비스.

44)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원포함 선박대여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검정·검량 서비스 (CPC 745**) ⁴⁵⁾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5) 검수·검정·검량 서비스는 해상운송 분야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항공운송서비스</u> ⁴⁶⁾ 컴퓨터예약시스템 (CRS)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기 유지 및 보수 (CPC 8868 중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6)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정의에 따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승무원포함 항공기임대 (CPC 734) ⁴⁷⁾	1)2)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항공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사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됨.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항공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사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됨.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7) 이 서비스는 포괄임차에 한정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지상조업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u>철도운송서비스</u>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산업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철도 유지 및 보수 (CPC 8868 중 일부) ⁴⁸⁾ d.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의 일부, CPC 7113의 일부) ⁴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9)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소유철도시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u>도로운송서비스</u>			
a. 내륙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화물운송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운전자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 (CPC 712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도로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7의 일부, CPC 6112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u>파이프라인 운송</u> (CPC 7131**) 오직 석유제품 운송에 한정 ⁵⁰⁾ ,LPG 운송을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u>운송 부수 서비스</u> b. 항만구역 외의 창고업 (CPC 742**) 농·축·수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u>기타 운송서비스</u> 복합운송서비스 철도화물 주선 ⁵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u>기타 서비스</u> b. 머리미용 및 기타 미장 서비스 (CPC 97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0)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은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모든 분야-가스 산업”에 기재됨.

51) “철도화물 주선”이란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 화물적재/ 하역 및 배달 등을 포함하는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부수서비스를 말함.

첨부 1 (고등교육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2.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첨부 2 (성인교육서비스)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 관련된 다음의 과목을 교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등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된다.

- (a)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공예, 환경, 교통, 안전관리
- (b)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c)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상담, 텔레마케팅
- (d)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 (e)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f)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상품, 관광
- (g) 간호보조: 간호조무사
- (h)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 (i)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j)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k)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옹변

(1) 독서실⁵²⁾: 학교 교과 교습 학원 교습 과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독서실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평생성인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시민단체, 학교, 그리고 언론기관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 지식 및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 시설 및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52)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가는 장소

나.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¹⁾

주 해

1. 아래의 약속 목록(이하 “이 양허표”라 한다)은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된 경제적 활동과, 유보에 의해 그 활동에서 유럽연합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이 양허표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대한민국에 의해 약속이 수행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와,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열

나.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11조에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그리고

다.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12조에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세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양허표에 언급되지 아니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설립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대한민국 양허표의 이미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 양허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7.11조 및 제7.12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7.11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7.12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²⁾

1)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1. 수평적 약속”에 기술된 핵심인력, 대졸 연수생 및 상용서비스 판매자에 대한 제한은 관련있는 경우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또한 적용된다.

2) 이 항의 목적상 제7.12조에 따라 규정된 대우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이며 이 협정의 서명 이후 발효될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속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다.

4. 제7.11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종류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대한민국에 의해 유지 또는 채택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5. 대한민국은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한 경제적 활동에서의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하여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관한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수행되는 대한민국의 약속은 그들의 일시적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가 허용된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는 대한민국의 이민 및 노동 법을 준수한다.

6.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확인함에 있어,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7.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제7.11조 및 제7.12조의 의미 내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양허표는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요구,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요구,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요구 및 일정한 활동이 환경적으로 보호받는 구역 또는 특정한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이익이 있는 지역에서 수행될 수 없도록 하는 비차별적 요건)은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제7.1조에 따라, 이 양허표는 대한민국에 의해 부여되는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이 양허표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토지 취득</u> 외국인에 의한 토지취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취득이 계속 허용됨. (1) <i>외국인토지법</i> 제2조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2)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i>외국인토지법</i>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단, <i>외국인토지법</i>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a) 정상적인 사업 활동 (b) 고위경영진의 주거, 또는 (c)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 요건의 충족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투자</u>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³⁾⁴⁾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지식경제부장관령에 따라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비율과 같은 문제의 변경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이 허용됨. 방위산업의 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신규발행된 공모주 외에 방위산업의 공모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3) 이 유보는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4) 이 유보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취약집단</u>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⁵⁾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국가소유의 전자/ 정보 시스템</u> 국가의 재산권적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 기능 및 권한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 정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이 유보는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총포, 도검, 화약류 등</u>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야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u>원자력 에너지</u> 원자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u>전력산업</u>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그러한 조치는 D(a)a) (ISIC 개정판 3.1 : 401)상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전력산업에서 허용되는 외국소유 총합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음. <u>가스산업</u> 천연가스의 수입 및 도매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그러한 조치는 D(a)b) (ISIC 개정판 3.1 : 402)상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가스산업에서 허용되는 외국소유 총합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음.	

5) 취약집단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조치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a) <u>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 활동</u> (ISIC 개정판 3.1: 011, 012, 013, 015)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대해 약속 안함. 외국인 투자자는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대해 약속 안함.
(b) <u>임업 및 벌목업</u> (ISIC 개정판 3.1: 0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B. 광업 및 채석업		
(a) <u>석탄, 갈탄의 채광; 토탄의 채광</u> (ISIC 개정판 3.1: 1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b) <u>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탐사를 제외한 원유 및 가스 채취에 수반된 서비스 활동</u> (ISIC 개정판 3.1: 11)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 없음: (a) 해저석유 ⁶⁾ 채취권은 정부만 보유할 수 있음. 그리고 (b) 이러한 권리는 제한된 기간 동안, 면허업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 단, 신청인은 비차별 및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제한 없음.
(d) <u>금속 광업</u> (ISIC 개정판 3.1: 1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 <u>기타 광업 및 채석업</u> (ISIC 개정판 3.1: 14)	제한 없음.	제한 없음.

6) “석유”는 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C. 제조업		
(a) <u>음식료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5, 곡물도정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b) <u>담배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6)	제한 없음.	제한 없음.
(c) <u>직물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7)	제한 없음.	제한 없음.
(d) <u>의복 제조업; 모피의 가공 및 염색</u> (ISIC 개정판 3.1: 18)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 <u>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가방, 핸드백, 안장,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9)	제한 없음.	제한 없음.
(f) <u>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목제품, 코르크 제품 제조업; 고공품 및 조물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g) <u>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h) <u>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사업</u> (ISIC 개정판 3.1: 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업 제외) ⁷⁾	제한 없음.	제한 없음.
(i) <u>코르크스 제조로 제품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3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j) <u>식유 정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3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7)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 중 기타 사업서비스 r)에서 확인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l) <u>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u> a) 기초 화학물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1 방사성동위원소 제조업 제외) b)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2) c) 합성섬유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m) <u>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5)	제한 없음.	제한 없음.
(n) <u>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6)	제한 없음.	제한 없음.
(o) <u>제1차 금속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7)	제한 없음.	제한 없음.
(p) <u>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8 원자로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q) <u>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u> a) 일반목적의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1) b)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 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9) c)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구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r) 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s)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t)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기기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u)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3, 방사선 발생 장치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v)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4)	제한 없음.	제한 없음.
(w) 기타 (비군사용) 운송장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5, 군함, 군용 항공기 및 기타 군사용 운송장비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x) 가구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6)	제한 없음.	제한 없음.
(y) 재활용 (ISIC 개정판 3.1: 37)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D.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a) <u>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 공급</u> a) 에너지 산업-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전력의 운송, 유통 및 판매 (ISIC 개정판 3.1: 401)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송전, 배전 및 판매 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함.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단일 주주의 지분은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b) 가스 제조; 가스배관을 통한 가스연료 공급 (ISIC 개정판 3.1: 402)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단일 주주의 지분은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c) 증기 및 온수 공급 (ISIC 개정판 3.1: 40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1. 제7.8조제2항 및 제7.14조제2항의 목적상, 중대하게 더 높은 수준이 되기 위해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규정된 의무는 서비스 및 설립에 관한 내부 시장¹⁾을 창설하거나 설립의 권리 및 법령의 근접화 모두를 포함한다. 의무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또는 수평적 약속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가. 이 항에 언급된 **설립의 권리**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발효 시까지 그 지역협정의 당사자들 간에 설립에 대한 모든 장벽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의무를 말한다. 설립의 권리는 그러한 설립이 시행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규정되는 조건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국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나. 이 항에 언급된 **법령의 근접화**란 다음을 의미한다.

- 1) 지역경제통합협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의 법령을 그 협정의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법령과 정합시키는 것, 또는
- 2) 공통되는 법령을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법적 질서에 통합시키는 것. 그러한 정합 또는 통합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국내 법적 질서 내로 입법화된 시점부터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양 당사자는 제7.8조제2항과 제7.14조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경제통합협정을 제7.3조에 언급된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지역경제통합협정의 서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3.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부속서의 제2항에 언급된 통보에 더하여, 양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또는 별개의 협의에서 그 지역경제통

1) 서비스 및 설립에 대한 내부시장이란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내부적 경계가 없는 지역을 말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서명 시 유럽경제지역(EEA)이 유럽연합의 제3국과의 유일한 내부시장이다.

합협정의 제7.8조제2항과 제7.14조제2항 및 이 부속서의 조건과의 합치성을 논의하고 검토한다.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유럽연합 당사자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 모든 분야	유럽연합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대우를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유럽연합은 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개정이 그 협정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모든 조치를 개정할 수 있음.	모든 국가	무기한	역진방지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적인 대우를 보호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 도로 운송	루마니아에서,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운송수단이 상품 및/또는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허가는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 간 도로 협정에 따름. 도로내륙운송은 국내에 등록된 운송수단에 유보됨.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위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이란,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시리아, 슬로베니아, 터키, 헝가리 및 향후 다른 국가도 가능	무기한	예외의 필요성은 도로운송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대한 지역적 특수성과 연관됨.
3. 철도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의 영역 내 그리고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 운영조건 및 운송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철도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영역 내 그리고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4.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공동체/ 유럽연합 또는 그 회원국과 제3국가 간 체결된 (복합운송 - 도로/ 철도 포함) 국제도로운임 및 여객운송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의 다음에 대한 규정 (a)- 계약당사자 간 또는 계약당사자의 영역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각 계약당사자에 등록된 운송수단에 유보하거나 제한 ¹⁾ 또는 (b)- 그러한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 면제	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 알바니아,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	무기한	예외의 필요성은 도로운송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됨.

1)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운수권에 관한 최혜국대우 면제 부분은 도로운송에 관한 양자간 협정 또는 도로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이외의 조치가 바람직한 모든 국가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5.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운송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체코공화국으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에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을 지나는 운송서비스 그리고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관련 채약당사자로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운송서비스를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철도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체코공화국 영역 내 그리고 관련 국가 간에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6.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핀란드에서 내륙운송을 유보한(복합운송, 도로 및 철도 포함)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상호 양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의 규정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협정이 발효 중인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서비스의 지역적 특수성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7.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오스트리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운송수단으로 외국 기업가들이 수행하는 국제여객운송으로 제한됨.	구 유고슬라비아 승계국들, 스위스 그리고 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 국연방 승계국(발트3국,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몰도바 및 우즈베키스탄 제외)	무기한	상호주의 및 국제여행 발전의 촉진
8. 도로운송서비스 - 여객 및 화물	사실상의 상호주의를 근거로 한 일정한 조건에 따른 오스트리아에서의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 면제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으로 제한됨.	이스라엘, 모나코, 산마리노, 터키, 교황청 그리고 미국	무기한	상호주의 및 국제여행 및/ 또는 국제상품운송 발전의 촉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9.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양자간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리투아니아 영역으로의 운송서비스, 리투아니아 영역을 통한 운송서비스 그리고 리투아니아 영역으로부터 관련 채약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 양자간 통과허가 및 그 밖의 운송허가를 포함하여 운영조건, 도로세 및 부과금을 명시하고 운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설정함.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을 보호하고 리투아니아 영역 및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10.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그 불가리아 영역에서의 또는 불가리아 국경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이러한 등록의 운송서비스 공급을 제한 및/또는 유보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환경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불가리아 영역 및 관련 국가 간 운수권의 규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1. 해상운송을 제외한 모든 여객 및 화물운송서비스	폴란드: 관련 국가들의 공급자들이, 관련 국가의 영역에서, 관련 국가의 영역으로, 그리고 관련 국가의 영역을 통과하는 운송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상호주의 요건	모든 국가	무기한	운송협력(또는 유사한 성격의 것),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보호 및 특히 양자적으로 합의된 허가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운송 쿼터를 이행하는 것에 관한 기존 및 미래의 상호적 협정의 체제
12.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로의 운송서비스, 슬로바키아에서의 운송서비스 그리고 슬로바키아로부터 관련 채약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운송서비스를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 기반시설의 무결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슬로바키아 영역 및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3. 도로운송 - 화물 (CPC 7123)	스페인에서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위한 인가는, 스페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거절될 수 있음.	모든 국가	무기한	스페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실효적인 시장접근 및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
14.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예약시스템(CR S)서비스, 그리고 (d)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서비스 및 공항운영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되거나 유효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모든 국가	무기한	기존 및 미래의 국제협정을 보호를 위해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5. 항공운송서비스의 컴퓨터예약시스템과 판매 및 마케팅	규정(EEC) 제3089/93호에 의해 개정된, 규정(EEC) 제2299/89호의 제7조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동등한 대우가 그 국가에서 유럽연합 당사자 컴퓨터예약 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에게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컴퓨터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 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의 의무가 그 국가의 컴퓨터예약 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함.	컴퓨터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가 소재하는 모든 국가	무기한	컴퓨터예약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다자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의 필요성
16.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내 상품과 관련한 서비스를 포함한 항만 내 화물취급서비스와 보관, 창고 서비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그리고 관련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불가리아에 의해 부여됨.	모든 국가	무기한	그러한 조치의 적용 목적은 그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불가리아 공급자에 대해 그 밖의 국가의 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7. 내수운송	내륙수로에의 접근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라인-마인-다뉴브 연결 협정을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에 관한 국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운영자를 위해 운수권을 유보하는 조치	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	무기한 일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통합협정이 체결되거나 완성될 때까지만 예외가 요구됨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륙수로에 대한 운송 능력을 규제하기 위함.
18. 내수운송	라인강 화물운송에 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 ²⁾	스위스	무기한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륙수로에 대한 운송 능력을 규제하기 위함.
19. 내수운송 - 여객 및 화물	오스트리아에서, a. 일정한 운수권은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선박을 위하여 유보됨(소유에 관한 국적 요건), 그리고 b.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증명과 면허가 인정됨.	구 유고슬라비아 승계국 그리고 구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승계국	무기한, 그리고 예외는 기존의 조치 및 새로운 조치에 적용됨.	역사적 발전, 그리고 특정한 지역적 측면

2) 다음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최혜국대우 면제가 적용된다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0. 내수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의 내륙수로에 대한 접근 및 내륙수로에서의 운수권을 외국의 운영자를 위해 유보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기반시설의 무결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슬로바키아에서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21. 해상운송	부속서 7-가에서 대한민국의 약속을 넘는 조치로서 해운회사의 설립,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조치	특정되지 않음.	무기한	전반적인 무역관계의 맥락에서의 국제협정
22. 해상운송 - 연안해운	특정된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된 선박을 핀란드에서의 연안해운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면제하는 조치로서 핀란드에 의해 취해진, 기존 또는 미래의 상호적 조치	모든 국가	무기한	연안해운의 지역적 특수성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3. 해상운송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된 선박을 스웨덴 연안해운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면제하는 조치로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스웨덴에 의해 취해진 상호적 조치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협정이 발효 중인 모든 국가	무기한	상호 협정에 근거한 연안해운 운수를 규제하기 위함.
24.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 리스 (CPC 83103)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7223).	독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의한 외국선박의 용선계약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모든 국가	무기한	독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 및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
25. 수산	유럽연합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발효되거나 서명된 수산을 포함한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모든 국가	무기한	기존 그리고 미래의 양자 및 복수국간 국제협정의 보호를 위해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6.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특히 발틱해 유역에서의 국제보존 관행 및 정책 또는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폴란드가 우호적인 수산물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 관련 국가들의 어업 관할권 지역에서의 - 특혜 대우	모든 국가	미정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뿐만 아니라 관행을 근거로, 특히 발틱해 유역에서의 어업 및 수산물 보전에 관한 협력
27. 법률서비스	외국변호사는 법률 지원에 관한 양자 협정에 따라서만 리투아니아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적법성과 책임을 통제할 능력을 보장할 필요
28. 법률서비스	불가리아에서,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완전한 내국민대우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 및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시민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특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국가	무기한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9. 보건의료서비스	양자간 협정이 서명되었거나 미래에 서명될 선택된 국가에서 사이프러스 시민에게 사이프러스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의료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것.	의료 협력이 바람직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무기한	그 조치는 사이프러스와, 사이프러스가 지리적 인접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제3국과의 양자간 협정이 존재하거나, 새로운 양자협정을 미래에 서명할 가능성 때문에 필요함.
30. 의료 및 치과 서비스	불가리아의 영역에서 외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및 치과 서비스와 관한 비용과 지출을 부담하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과 보상 계획 및 프로그램은 양자 협정의 틀 내에서 상호주의를 근거로 부여됨.	그러한 양자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국가	무기한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31. 공공 사회보장서비스	사이프러스와 일정한 국가들 간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양자 협정의 규정	호주, 이집트, 캐나다, 퀘벡주 및 미래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모든 국가	무기한	채약당사자의 사회보장법령의 적용대상이거나 적용대상이 된 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 사회보장권을 취득한 경우 사회보장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특히, 혜택을 받을 자격을 목적으로 채약 당사자에서 보험 또는 거주 기간의 합산을 규정하는 이 협정들은 사이프러스와 노동 이동이 있는 국가들 간에 체결됨.
32. 출판 (CPC 88442의 일부)	이탈리아에서 회사의 자본 및 의결권 49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이탈리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33.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의 일부)	프랑스어로 된 출판물을 출판하는 프랑스 회사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프랑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34.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의 일부)	프랑스에서의 시장접근.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프랑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35. 토지 구매	리투아니아공화국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헌법에 따라, 리투아니아가 개시한 유럽통합 및 그 밖의 통합의 기준을 준수해서 헌법에 따라 명시된 리투아니아에서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세 번 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외국인인 실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내국 실체는, 그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농경지가 아닌 토지를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 토지취득 절차, 조건 및 규제는 헌법에 따라 설정됨.	헌법에 따라 결정된 모든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³⁾ 북대서양조약기구 ³⁾ 회 원국, 및 유럽연합의 제후국	무기한	리투아니아와 관련 국가들 사이의 큰 경제적 협력을 위하여, 더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할 필요

3) 다만, 이 국가들이 1996년 6월 20일 이전에 경제개발협력기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인 경우에 한정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36. 관광안내서비스	리투아니아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관광안내는 상호주의적으로 관광안내서비스 지원에 관한 양자간 협정(또는 계약)에 따라서만 제공될 수 있음.	협정(또는 계약)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37. 모든 분야	사이프러스 :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와 관련하여 자본의 이동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지역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의 면제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	무기한	상업적 주재의 점진적 자유화.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중 일부 국가와의 상호 투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양자협정이 준비 중임.
38. 모든 분야	노르딕 협력 증진을 목표로 덴마크, 스웨덴 및 핀란드에 의해 취해진 다음의 조치 (a)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노르딕 산업기금) (b) 국제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 자금 조달 (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노르딕 기금), 그리고 (c) 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⁴⁾ 에 대한 재정적 지원(노르딕 환경 재정 공사)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무기한	노르딕 협력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함.

4) 하나 이상의 노르딕 기업과 협력중인 동유럽 기업들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39. 모든 분야	폴란드 : 부속서 7.가에 포함된 폴란드를 위한 제한을 넘어서는, 다음에 포함된 상업적 주재의 개념 (a) 통상 및 항해 조약 (b) 사업 및 경제 관계 조약, 그리고 (c) 외국인 투자협정의 증진 및 보호	모든 국가	미정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의 상호주의 규정
40. 모든 분야	폴란드는 폴란드가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의 강제 중재 절차를 규정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기하거나, 그와 관련된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의 강제적인 중재를 수락함.	모든 국가	미정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보호
41. 모든 분야	상호주의적으로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의 이탈리아에서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허가	모든 국가	무기한	상호주의 요건은 그 밖의 국가에서의 이탈리아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42. 모든 분야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이 행하는 일정한 활동 및 직업을 위한 국적 요건의 면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앙골라, 브라질, 카포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및 상투메프린시페)	무기한	이 조치는 포르투갈과 이러한 국가들 간의 역사적 연계성을 반영함.
43. 모든 분야	일정한 유럽연합 회원국 ⁵⁾ 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 간의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자연인과 법인의 설립권을 규정하는 조치	산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그리고 교황청	무기한	유럽연합 회원국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 간의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연계성

5) 다음의 회원국들이 적용대상이 됨: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대한민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1.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서명된 다음의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상 국가들에 대해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가) 수산, 또는 (나)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2.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 대우를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대한민국은 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개정이 그 협정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모든 조치를 개정할 수 있음.
3.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예약시스템(CPS)서비스 (d)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서비스 및 공항운영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된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4. 취약집단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게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5. 사회서비스	대한민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범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교육
6.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서비스	대한민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서비스와 디지털 오디오서비스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보장과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7.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서명된 철도운송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상 국가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8.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택시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9.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서비스는 제외)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국내운송은 제외)과 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도로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10. 운송서비스 - 내수운송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내수운송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11.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대한민국은 유아·초등·중등교육, 보건·의료 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한 성인 교육은 제외), 그리고 그 밖의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 유보항목은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시험 운영에 적용되지 않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시험을 선택하고 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대한민국은 사람을 인간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 유보항목은 <i>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i>(법률 제9616호, 2008.12.26.) 및 <i>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i>(법률 제9526호, 2009.3.25.)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13.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 서비스 - 영화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14.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서비스와 연안해상운송	대한민국은 아래의 조치를 포함한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하고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연안해상운송은 대한민국선박에 유보되어 있음.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소재하고 있는 모든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함.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함. (a)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국토해양부 산하 설립기관이 소유한 선박 (b)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c)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으로서,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 책임자, 회장, 또는 유사한 주요 수석 상사)가 대한민국 국민인 기업 소유의 선박. 1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부속서 7-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정보의 이전

1. 양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의 보호,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규제기관의 능력,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과 같은 분야를 다루면서, 금융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자신의 규제제도에 대한 수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¹⁾

기능의 수행

2. 양 당사자는 당사자 영역 내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나. 데이터처리²⁾,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관리 및 비서 업무를 포함한 행정서비스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마. 은행계좌조정,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재

1) 이것은 특히, 투명성의 준수와 본국의 금융규제기관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보고 요건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이전을 포함한다.

2) 당사자가 제7.43조에 따라 자신의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자는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또한 허용한다.

산 회계를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신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정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그 본점 또는 계열사가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에 적용 가능한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5. 당사자의 우편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그 당사자의 우편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자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우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6.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그러한 서비스가 자신의 영역에서 동종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³⁾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7.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우위를 제공하여서는 아

3) 이 약속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권 내의 우편서비스 공급자가 그 영역 내에서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유럽연합에 또한 적용된다.

니 될 것이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당사자는 그러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 보험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동종서비스에 자신이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8.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분야별 협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자율규제기구

9. 한국보험개발원은 제7.40조 원칙의 적용대상이다. 이 확인은 이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 또는 다른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의 그 밖의 모든 기구의 지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0.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금융규제당국이 보험에 관련된 기능을 자율규제기구 또는 그 밖의 비정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그 당국은 위임받은 기능에 따라 그 기구 또는 다른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제7.39조(투명성) 및 제7.23조(국내 규제)제2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양해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즉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에 대하여

가.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나.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양 당사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그러한 공급이 유럽연합에 설립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가 공급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설립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설립을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공급은 금융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내 설립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협이가 그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해 지속된다. 유럽연합 당사자는 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향후에 협의를 갖자는 대한민국의 제안을 환영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¹⁾

이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유럽연합 대표단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의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자신의 우편개혁계획의 다음의 측면에 유럽연합 대표단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대한민국은 허용되는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우편법*, 관련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가. 그러한 개정이 입법화된 후,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신서의 범위는 그 개념의 재정의를 통해 더 명확히 될 것이며, 신서 독점에 대한 예외는 중량, 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확대될 것이다.

나. 그러한 개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국내시장 조건, 우편 자유화를 이룬 그 밖의 국가의 경험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향후 3년 이내에 이러한 개정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편법시행령* 제3조를 또한 개정하여, 이 협정의 발효 시까지 모든 국제서류 특급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것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의 국제 및 국내 특급배달 서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우편 서비스 독점의 적용대상

1) 이 양해는 비구속적이며 제14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아니다.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이 협정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대표단 간에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인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해,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 2) 다른 쪽 당사자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그 당사자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제7.22조(투명성 및 비밀정보), 제7.23조(국내 규제) 및 제7.36조(통신분쟁의 해결)와 합치하는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용도지역지구제·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이 협정의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시점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내에 적용 가능한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자는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하여 규제가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비차별적이며 비수량적인 조치를 구성하는 한, 이러한 규제가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양해를 공유한다.

위의 공동의 양해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다음의 법률에서 유지하는 특정한 조치들이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양 당사자는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8 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 8.1 조 경상지급

양 당사자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거주자 간에 국제수지의 경상 계정에 관한 모든 지급 및 송금이 자유교환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제 8.2 조 자본 이동

1. 국제수지의 자본 및 금융 계정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유치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접 투자,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따라 자유화된 투자 및 그 밖의 거래, 그리고 그러한 투자 자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청산 및 본국 송금과 관련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해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2.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자는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제수지의 자본 및 금융 계정에 관한 거래에 대해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특히 다음과 관련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치국의 법에 따라 보장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거주자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

나. 금융 대부 및 신용, 또는

다. 지속적인 경제적 연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의도가 없는 법인에 대한 자본 참여

3.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거주자 간의 자본이동에 대하여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약정이 더 제한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자본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 8.3 조 예외

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자본이동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안보 및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나.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1) 형사 범죄나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 또는 계약 불이행의 효과(파산, 지급불능 및 채권자 권리의 보호)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2)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 3) 유가증권, 옵션, 선물 또는 그 밖의 파생상품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 4)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5)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8.4 조 세이프가드 조치

1.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자 간의 지급 및 자본이동이 대한민국이나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¹⁾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엄격하게 필요한 자본 이동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²⁾는 관련 당사자³⁾에 의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⁴⁾동안 취해질 수 있다.

2.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채택을 즉시 통보받고 그 제거를 위한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 받는다.

-
- 1)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 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특히, 이 조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가. 필수적이지 아니할 것
 - 나.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 다. 제한된 자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 마.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그리고
 - 바.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신속하게 공표될 것
- 3) 유럽연합이나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
- 4)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초로 채택할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 또는 동등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은 해당 당사자에 의해 한번 더 6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전에 모든 제안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조율한다.

부속서 8

제 9 장 정부조달

제 9.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이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상의 자신의 권리 및 의무와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무역 기회를 더욱 확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자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것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검토에서, 그리고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계속 협력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 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합의된 개정 정부조달협정 협정문(이하 “개정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¹⁾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가. 그 밖의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개정 정부조달협정 제4조제1항나호 및 제2항)

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개정 정부조달협정 제5조)

다. 참가조건(개정 정부조달협정 제8조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

1) 2007년 11월 19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negs 268(Job No[1].8274)에 포함되었다.

받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사전 작업 경험이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때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기구(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1조), 그리고

마. 최종 규정(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2조)

5. 제4항에 따른 개정 정부조달협정 적용의 목적상,

가.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협정”이란 “장”을 말한다. 다만,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란 “비당사자”를 말하며, “협정의 당사자”란 “당사자”를 말한다.

나.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그 밖의 당사자”란 “다른 한 쪽 당사자”를 말한다. 그리고

다.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위원회”란 “작업반”을 말한다.

제 9.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은 그 개정 또는 대체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및 그에 따른 주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9에서 정의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이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라 한다)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9의 적용을 받는다.

제 9.3 조

정부조달 작업반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부조달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위하여 회합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회부된 정부조달과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문제의 검토

나.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과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기회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의 논의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 1 조

정의

1. 대한민국의 경우,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2. 유럽연합의 경우,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란 사업 시행에 대한 대가가 오로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권리에 있거나 이 권리와 지급에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계약과 동일한 유형의 계약을 말한다.

공공사업 계약이란 중앙품목분류 제51대분류의 의미에서의 활동들의 하나와 관련된 사업의 시공이나 설계 및 시공 모두, 또는 수단을 불문하고 계약당국이 명시한 요건에 상응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이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일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건축 또는 토목 사업의 산출물을 말한다.

제 2 조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 가능한 규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그 당사자가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는 국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

3. 각 당사자는 조달기관이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예정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공고를 이 부속서 제4조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적인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공표하도록 보장한다. 공고는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무료로, 가능하다면 단일 접근점을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계약의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예정된 계약의 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조달기관을 접촉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정보
- 나. 계약에 대한 기술

- 다.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 주소와 마감일자
- 라. 제출되는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
- 마.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과 간략한 기술, 그리고
- 바. 계약의 낙찰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

낙찰 공고

4.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각 계약의 낙찰 후 적절한 기간 이내에,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4조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조달기관 및 낙찰자의 명칭과 주소를 적시하여 그 계약의 낙찰이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재심

5.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재심제도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특별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제도의 창설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규칙 및 절차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조건으로, 이 부속서는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법령에 따라 수행한 조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안보 및 일반적 예외

7.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달에 관련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당사자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의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되는 조치

제 3 조

적용범위

1. 이 부속서는 15,000,000 특별인출권을 넘는 금액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된다.

2. 유럽연합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유럽연합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 대한민국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대한민국이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¹⁾

1)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공표수단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있는 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 공공조달 정보 시스템: [http:// simap.europa.eu/ index_en.html](http://simap.europa.eu/index_en.html)

유럽연합 관보

제 10 장 지적재산

제 1 절 일반규정

제 10.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 당사자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나.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

제 10.2 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그들이 당사자인 지적재산을 다루는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이 장의 규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나. 특허와 관련된 권리
- 다. 상표
- 라. 서비스표
- 마. 디자인
- 바. 집적회로 배치설계
- 사. 지리적 표시
- 아. 식물품종, 그리고
- 자. 미공개정보의 보호

3. 지적재산의 보호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967)(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제10조의2에 언급된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제 10.3 조 기술의 이전

1. 양 당사자는 각각의 영역 내 및 제3국과의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관행 및 정책에 관하여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정보의 흐름, 사업 합작, 라이선싱 및 종속계약을 촉진하는 조치를 특히 포함한다. 특히 인적자본 및 법적 체제의 개발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유치국에서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국가 간 기술 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싱 관행 또는 조건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 10.4 조

소진

양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소진에 대한 자신의 제도를 수립할 자유가 있다.

제 2 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제 1 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 10.5 조 부여되는 보호

양 당사자는 다음을 준수한다.

-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1961)(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 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 다.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라 한다) 저작권 조약 (1996)(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그리고
- 라.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제 10.6 조

저작자 권리의 존속기간

각 당사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 10.7 조 방송사업자

1.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최초 송신 50년 이후에 만료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¹⁾

제 10.8 조 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협력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이 항의 목적상, 당사자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자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상의 재송신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10.9 조

방송 및 공중전달

1. 이 조의 목적상,

가. **방송**이란 소리, 또는 이미지와 소리, 또는 그 표현물을 공중의 수신을 위해 무선수단에 의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그러한 송신도 또한 “방송”이다.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되는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도 방송이다. 그리고,

나. **공중전달**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음반에 고정된 소리나 소리의 표현물을 방송 외의 모든 매체에 의해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5항의 목적상, “공중전달”은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 당사자는,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된 실연이거나 고정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에게 제공한다.

3. 각 당사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사용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자신의 법령에 규정한다. 양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나누는 조건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
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법 사안이다.

제 10.10 조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양 당사자는 예술가의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대한 견해와 정
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도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제 10.11 조

제한 및 예외

양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
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제10.5조
부터 제10.10조까지에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제한 또는 이에 대
한 예외를 자신의 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제 10.12 조

기술조치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장치, 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3.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암호화, 스크램블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령과 제10.5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 10.13 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제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 10.14 조

경과규정

대한민국은 제10.6조 및 제10.7조의 의무를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완전하게 이행한다.

제 2 관

상표

제 10.15 조

등록절차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고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또한 이해 당사자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제 10.16 조

국제협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상표법조약*(1994)을 준수하며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제 10.17 조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각 당사자는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을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로서 규정하며, 그 밖의 제한적인 예외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관

지리적 표시²⁾³⁾

제 10.18 조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인정

1. 대한민국에서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통제 및 보호에 관련되는 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그 이행규칙과 함께 검토한 후, 유럽연합은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2. 유럽연합에서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통제 및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510/2006호*와 그 이행규칙, 그리고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1234/2007호*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3.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로서,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의 명세서 요약서를 검토한 후, 유럽연합은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에 따라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4. 제2항에 언급된 법령에 따라 유럽연합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로서,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 명세서의 요약서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에 따라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관의 “지리적 표시”는 다음을 지칭한다.

가.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 규정(EC) 제510/2006호*, 2008년 1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 1991년 6월 10일자 *이사회 규정(EEC) 제1601/1991호*, 1999년 5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와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 또는 이러한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 원산지 명칭,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포도주 및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테이블 포도주,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

3) 이 관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5. 제3항은 제10.24조에 따라 추가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적용된다.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통제를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는 것에 합의한다.

가. 각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등재하는 등록부

나.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적시하는 것임을 검증하는 행정절차

다. 등록된 명칭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제품 명세서가 규정되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특정제품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

라. 생산에 적용되는 통제규정

마. 등록된 명칭이 해당 명세서에 부합하는 농산물 또는 식품을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법적 규정, 그리고

바. 명칭이 지적재산의 형태로서 보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명칭의 선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도록 허용하는 이의절차

제 10.19 조

포도주⁴⁾·방향포도주⁵⁾ 및 증류주⁶⁾에 대한 특정 지리적 표시의 인정

4) 이 관에서 의미하는 포도주는 HS 제22.04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이다.

가.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 2009년 7월 10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606/2009호*, 2009년 7월 14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607/2009호*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준수하는 제품

5) 이 관에서 의미하는 방향포도주는 HS 제22.05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이다.

가. 1991년 6월 10일 *이사회 규정(EEC) 제1601/1991호* 및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준수하는 제품

6) 이 관에서 의미하는 증류주는 HS 제22.08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이다.

가. 2008년 1월 1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와 1990년 4월 24일 집행위원회 규정(EEC) 제1014/90호*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준수하는 제품

1. 대한민국에서는,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유럽연합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호된다.

2. 유럽연합에서는,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호된다.

제 10.20 조

사 용 권

이 관에 따라 보호되는 명칭은 해당 명세서에 부합하는 농산물, 식품, 포도주, 방향포도주 또는 증류주를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 10.21 조

보호의 범위

1.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행위로부터 보호된다.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나.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유사상품⁷⁾에 상품의 산지

7) 모든 상품에 대하여, “유사상품”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에 대하여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 또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대하여 증류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항에 맞게 해석된다.

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2. 이 협정은 인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영업상 전임자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결코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이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 당사자의 지리적 표시가 동음인 경우, 선의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표시에 보호가 부여된다. 지리적 표시 작업반은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음의 지리적 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이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가 제3국의 지리적 표시와 동음인 경우, 각 당사자는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음의 지리적 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이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이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원, 등록되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해당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사용에 의하여 확립된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법령에 그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제10.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제 10.22 조

보호의 집행

양 당사자는 제10.18조부터 제10.23조까지에 규정된 보호를 당국의 적절한 개입에 의하여 직권으로 집행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호를 집행한다.

제 10.23 조

상표와의 관계

1.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제10.21조제1항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의 유사상품에 대한 등록은, 상표 등록 출원이 해당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후에 제출되는 한, 양 당사자에 의하여 거절되거나 무효화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가.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이다. 그리고

나. 제10.24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거나 인정해 달라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을 당사자가 접수한 날이다.

제 10.24 조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⁸⁾

8) 제10.18조제1항, 제10.18조제2항 및 제10.19조 각주에 언급된 것 외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법을 통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의 의미에서의 지리적 표시로서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된 원산지 명칭을 이 협정에 추가하려는 제안이 다음과 같이 제기된 경우, 양 당사자는 그 지리적 표시가 이 관에 따라 이 협정에 추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10.18조제2항 및 제10.19조 각주에 규정된 유럽연합 법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제안이 제기된 경우, 또는

나. 유럽연합에 의하여 제10.18조제1항 및 제10.19조 각주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법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제안이 제기된 경우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제10.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해 달라는 다른 쪽의 요청을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3. 명칭이 포도의 품종을 포함하여, 식물의 품종 또는 동물의 종의 명칭과 충돌되고 그 결과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명칭은 지리적 표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제 10.25 조 지리적 표시 작업반

1.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리적 표시 작업반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작업반은 컨센서스로 권고를 하고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회의 장소는 양 당사자 간 교대로 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자가 상호 결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그리고 화상회의를 포함한 방식으로 회합하나, 요청 후 90일 이내에는 회합한다.

3. 작업반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가. 적용 가능한 경우 제10.18조제3항 및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보호될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개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기 위해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는 것

- 나. 원산지 당사자⁹⁾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더 이상 다른 쪽 당사자에서 지리적 표시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개별 지리적 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가호에 언급된 부속서를 수정¹⁰⁾하는 것, 그리고
- 다. 이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의 발효 후 특정일에 개정되고 대체되어 효력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4. 작업반은 또한 이 관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 이행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을 담당한다.

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입법 및 정책 발전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 이 협정에 따라 그 보호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

5. 작업반은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어떠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다.

제 10.26 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

이 관의 규정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4 관

9)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중단하는 결정은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로 하는 당사자의 전속 책임이다.

10) 이는 명칭 및 제품 범주를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 그 자체의 수정을 말한다. 제10.18조제3항 및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명세서의 수정 또는 제10.18조제6항라호에 언급된 책임 있는 통제기구의 수정은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로 하는 당사자의 전속 책임이다. 그러한 수정은 정보목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디 자 인

제 10.27 조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¹¹⁾

2. 이 보호는 등록에 의해 제공되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제 10.28 조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무역관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아니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 10.29 조

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11) 대한민국은 디자인등록을 위한 출원이 제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경우, 디자인이 새롭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은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위한 출원이 제출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었던 경우, 디자인이 독창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은 등록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또는 미등록 디자인의 공개일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디자인이 새롭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은 디자인이 정보가 있는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이 그러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 디자인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¹²⁾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제시¹³⁾,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한다.

제 10.30 조 보호기간

1. 등록 이후 양 당사국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15년에 달한다.
2. 미등록 외관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3년에 달한다.

제 10.31 조 예외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디자인의 보호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디자인 보호는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12) 이 조의 목적상,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미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외관”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등록 디자인” 또는 “미등록 외관”의 보호를 위한 조건은 다음에 규정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767호, 2007년 12월 21일), 그리고

나. 유럽연합의 경우, 2006년 12월 18일 이사회규정(EC) 제1891/2006호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 이사회규정(EC) 제6/2002호

13) 이 조의 목적상, 대한민국은 “제시”를 “양도, 대여 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로 간주하고, 유럽연합은 “제시”를 “제공” 또는 “출시”로 간주한다.

디자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디자인권은 공공정책 또는 인정된 도덕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 10.32 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관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이 창작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고정된 날부터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도 받을 자격이 있다.¹⁴⁾

제 5 관 특허

제 10.33 조 국제협정

양 당사자는 특허법조약(2000)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제 10.34 조 특허와 공중보건

1. 양 당사자는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

14) 저작권법상의 디자인 보호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전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고 한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도하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2. 각 당사자는 도하 선언 제6항에 관한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결정과 2005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이행에 기여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 10.35 조

특허보호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1. 양 당사자는 각각의 영역에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의약품¹⁵⁾ 및 식물보호제품¹⁶⁾은 자신의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적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최초허가의 결과로서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규정한다.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¹⁷⁾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5)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16) 식물보호제품은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형태로 활성물질, 완화제 또는 상승제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며, 다음의 용도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한다.

가. 식물 또는 식물제품을 모든 유해 유기체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러한 유기체의 활동을 방지하는 것, 다만, 이러한 제품의 주요목적이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 보호가 아니라 위생상의 이유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영양제 외의 것으로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식물제품을 보존하는 것, 다만, 그러한 물질이나 제품이 보존제에 관한 유럽연합의 특별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원하지 아니한 식물 및 식물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 다만, 제품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토양이나 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이 식물에는 조류는 제외한다. 또는

마. 식물의 원하지 아니한 성장을 저지하거나 방지하는 것, 다만, 제품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토양이나 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이 식물에는 조류는 제외한다.

17) 이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 소아과 사용을 위한 연장 가능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0.36 조

의약품¹⁸⁾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1. 양 당사자는 의약품 시판허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자료의 비밀성, 비공개 및 비원용을 보장한다.

2. 그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9조에 언급된 대로,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시판허가 보유자가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의약품의 또 다른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각자의 법령에 보장한다.

3. 자료보호기간은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획득된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5년이어야 할 것이다.

제 10.37 조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1. 양 당사자는 식물보호제품을 각각의 시장에 출시하도록 허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유효성 요건을 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식물보호제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시험, 연구보고서 또는 정보가, 최초 신청인이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 밖의 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 3자 또는 관련 당국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보호는

18)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이하 자료보호라 한다.

3. 자료보호 기간은 각 당사자에서의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0년이어야 할 것이다.

제 10.38 조 이행

양 당사자는 이 관에서 예견된 보호의 완전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한다.

제 6 관 그 밖의 규정

제 10.39 조 식물품종

각 당사자는 식물품종의 보호를 규정하고, 식물 신품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을 준수한다.

제 10.40 조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 자신의 법령을 조건으로, 양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

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 보존 및 유지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 하에 더욱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2. 양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관련 다자간 토론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가.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의 틀 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나. 세계무역기구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이라 한다) 간의 관계와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혜택공유에 관한 국제체제에 관련된 문제

3. 제2항에 언급된 관련 다자간 논의의 종결 이후,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다자간 논의의 결과 및 결론에 비추어 무역위원회에서 이 조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검토결과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3 절 지적재산권의 집행

제 10.41 조 일반적 의무

1. 양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그 협정 제3부상의 각자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¹⁹⁾의

19) 제10.2조제2항 가호부터 아호까지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어떠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허용되도록 다음의 보완적 조치, 절차 및 구제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그러한 조치, 절차 및 구제는

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한다.

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다.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한 기한 또는 부당한 지체를 수반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라.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하고,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제 10.42 조 자격있는 신청자

각 당사자는 다음의 인을 이 절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에 언급된 조치, 절차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인으로 인정한다.

가.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산권자

나.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모든 그 밖의 인, 특히 라이선스를 가진 자

다.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정기적으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라.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협회 또는 조합

제 1 관 민사조치·절차 및 구제

제 10.43 조 증거

각 당사자는,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은행, 재정 또는 상업 서류의 제출을, 적절한 경우 그리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10.44 조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조치

1. 각 당사자는, 사건의 본안에 관한 절차의 개시 이전이라도,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곧 침해되려고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침해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가, 침해상품,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의, 견본 수집 여부를 불문한 상세설명 또는 물리적 압류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진술없이 취해진다.

제 10.45 조

정 보 권

1.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 동안 그리고 원고의 정당하고 비례적인 요청에 대응하여,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침해자 및/또는 그 밖의 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근원 및 유통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이 항의 “그 밖의 인”이란 다음의 인을 말한다.

- 1) 상업적 규모로 침해상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2) 상업적 규모로 침해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3) 침해활동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상업적 규모로 제공하는 것으로 발견된 인, 또는
- 4)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배포나 서비스의 공급에 연루된 것으로 이 호에 언급된 인에 의하여 지목된 인

나. 정보는 적절한 경우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의도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 및 그 밖의 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 2) 문제가 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획득된 정보로서, 생산, 제조, 배달, 수령 또는 주문된 양과 가격에 관한 것

2. 이 조는 다음의 그 밖의 법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가. 권리자에게 더 완전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정

나. 이 조에 따라 전달된 정보를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규정

다. 정보권의 오용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법규정

라. 제1항에 언급된 인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자신 또는 가까운 친

죽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강요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규정, 또는

마. 정보원의 비밀성의 보호 또는個人資料의 처리를 규율하는 법규정

제 10.46 조

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임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신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그 침해행위의 계속을 금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계속이 권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간금지명령은 제3자에 의하여 중개자²⁰⁾의 서비스가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그 중개자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다.

2. 중간금지명령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상거래로 유입되거나 상거래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의 압류를 명령하기 위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3.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침해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을 위협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사법당국이 은행계정 및 그 밖의 자산의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혐의자의 동산 및 부동산의 예방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0.47 조

²⁰⁾ 이 항의 목적상,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자의 법령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침해상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하는 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시정조치

1. 각 당사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어떠한 손해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의 폐기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은 그러한 상품의 생성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도 명령할 수 있다.
2. 사법당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원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정조치에 대한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제3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간의 비례성의 필요가 고려된다.

제 10.48 조

금지명령

1.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판정하는 사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법당국이 침해의 계속을 금지할 목적의 금지명령을 침해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준수를 보장할 목적으로,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각 당사자는 중개자²¹⁾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가 그 중개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도록 또한 보장한다.

21) 이 항의 목적상,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자의 법령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침해상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하는 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제 10.49 조 대체조치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그리고 제10.47조 또는 제10.48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책임이 있는 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행동하였다면, 문제가 되는 조치의 집행이 비례적이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면,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면,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제10.47조 또는 제10.48조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는 대신 피해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10.50 조 손해배상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을 보장한다.

가. 사법당국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한다. 또는

나. 가호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당국은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또는 사전에 설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전설정 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 10.51 조 **법적 비용**

각 당사자는 승소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적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보장한다.

제 10.52 조 **사법적 결정의 공표**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침해자의 비용으로, 결정을 게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뚜렷한 광고를 포함하여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 그 밖의 추가적인 공표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제 10.53 조 **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이나 실체가 그러한 저작물 또는 대상물

의 지정된 권리자라는 추정을 규정한다.

제 2 관

형사집행

제 10.54 조

형사집행의 범위

각 당사자는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²²⁾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제 10.55 조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헌법 또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의 위조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수립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한다.

제 10.56 조

법인의 책임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원칙에 합치하게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수립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다.

2. 그러한 책임은 그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2) “저작권접권”이라는 용어는 각 당사자에 의해 자신의 국제의무에 따라 정의된다.

제 10.57 조 방조 및 교사

이 관의 규정은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방조 및 교사에 적용된다.

제 10.58 조 압수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의심상품, 위법혐의행위 수행에 주로 사용된 관련 재료 및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증거,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 10.59 조 벌칙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 선고를 포함한 벌칙을 규정한다.

제 10.60 조 몰수

1.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과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침

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및/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몰수된 상표위조 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상품이 인간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하지 아니하다는 조건하에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나아가 이 조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피고인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10.61 조

제3자의 권리

각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제 3 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 10.62 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²³⁾의 책임

23) 제10.63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간 또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위해 송신, 라우팅 또는 접속하는 제공자를 말하고, 제10.64조 및 제10.65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망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양 당사자는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전혀 연루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0.63조부터 제10.66조까지에 명시된 조치를 규정한다.

제 10.63 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단순도관”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제공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송신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송신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

나. 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제공자가 송신에 담긴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제공 행위는, 저장에 통신망에서 송신을 실행할 목적으로만 일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정보가 송신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아니하는 한, 송신되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64 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캐싱”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다른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서비스 수신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계속적 송신을 더 효율적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만 행하여지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할 것

나. 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조건을 준수할 것

다. 제공자가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라.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이용에 간섭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마. 제공자가 송신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보가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그러한 제거나 무력화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 자신이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65 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호스팅”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되

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 가. 제공자가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 또는
- 나. 제공자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제1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자의 권한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가 정보의 제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를 규율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66 조

감시할 일반적 의무의 면제

1. 양 당사자는, 제공자가 제10.63조부터 제10.65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행해진 불법행위의 활동이나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려줄 의무, 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저장계약을 맺고 있는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의무

를 수립할 수 있다.

제 4 관 그 밖의 규정

제 10.67 조 국경조치

1. 각 당사자는, 이 절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²⁴⁾의 수입, 수출, 재수출, 보세운송, 환적, 자유지역에의 장치²⁵⁾, 임시 절차²⁶⁾ 또는 보세창고에의 장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권리자가 세관당국이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것을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²⁷⁾를 채택한다.

2. 양 당사자는 세관당국이, 자신의 조치과정에서 그리고 권리자에 의해 신청이 제출되거나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24) 이 조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위조상품, 즉

- 1) 포장을 포함하여 같은 형태의 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를 허가 없이 지닌 상품
- 2) 가호1)목에서 언급된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분리되어 제시된다 할지라도, 모든 상표의 상징(로고, 라벨, 스티커, 소책자, 사용지침 또는 보증서류), 또는
- 3) 가호1)목에서 언급된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분리되어 제시되는, 위조상품의 상표를 지닌 포장재료

나. 각 당사자의 법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권리자의 동의 또는 제작국에서 권리자에 의해 정당하게 허락받은 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복제물이거나 복제물을 포함하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다. 세관조치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자의 법에 따라 다음을 침해하는 상품

- 1) 특허
- 2) 식물 품종권
- 3) 등록 디자인, 또는
- 4) 지리적 표시

25) “보세운송, 환적, 자유지역에의 장치”는 교토협약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26) 대한민국의 경우 “임시절차에의 장치”는 일시수입 및 보세공장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임시절차에의 장치”는 일시수입, 역내가공 및 세관통제하의 가공을 포함한다.

27)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나라의 시장에 판매된 상품의 수입에 그러한 절차를 적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때, 권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장을 이행하면서 확립된 수입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의무는 수출업자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상품의 보유자²⁸⁾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4. 대한민국은 각주24의 다호1)목 및 다호3)목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상의 의무를 협정 발효 2년 내에 완전히 이행한다.

제 10.68 조 행동규범

양 당사자는 다음을 장려한다.

- 가. 업종 또는 전문적인 협회 또는 조직이, 특히 자신의 제조근원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를 광학디스크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규범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 나. 행동규범 초안과 이러한 행동규범의 적용에 대한 평가를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는 것

제 10.69 조 협력

1. 양 당사자는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약속과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

28) 최소한 상품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처분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는 인을 포함한다.

되지 아니한다.

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체제와 보호 및 집행의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입법 진전 상황에 대한 경험의 교환

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 세관, 경찰, 행정 및 사법기관에 의한 중앙 및 지방 단계에서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른 나라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위조품의 수출 방지를 위한 조정

라. 역량 배양, 그리고

마. 특히 업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증진 및 전파, 소비자와 권리자의 공중인식 증진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제1항에 대한 보완으로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련된 주제와 그 밖의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적재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화체(지적재산 대화체)를 설치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 1 부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¹⁾²⁾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Tiroler Speck	햄	티롤러 슈페크
Steirischer Kren	고추냉이	슈타이리셔 크렌

체코공화국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České pivo	맥주	체스께 삐보 / 체스케 피보
Budějovické pivo	맥주	부데요비츠께 삐보 / 부데요비츠케 피보
Budějovický měšt'anský var	맥주	부데요비츠끼 므네슈뎀스키 바르 / 부데요비츠키 므네스탄스키바르
Českobudějovické pivo	맥주	체스꼬부데요비츠께 삐보 / 체스코부데요비츠케 피보
Žatecký chmel	홉	자떼츠키 흐멜 / 자데츠키 흐멜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Comté	치즈	콩떼 / 쿵테

1) 이탤릭으로 쓰여진 단어는 지리적 표시(이하 “지리적 표시”라 한다)의 일부가 아니다.

2) 지리적 표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 “Szegedi téliszalámi / Szegedi szalámi”, 이는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Reblochon	치즈	르블로송 / 레블로송
Roquefort	치즈	로끄포르 / 로크포르
Camembert de Normandie	치즈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 카망베르 드 노르망디
Brie de Meaux	치즈	브리 드 모
Emmental de Savoie	치즈	에멘탈 드 사부아 / 에멩탈 드 싸부아
Pruneaux d'Agen / Pruneaux d'Agen mi-cuits	조리건포도	프뤼노 다장 / 프뤼노 다쟁 프뤼노 다장 미뀌이/ 프뤼노 다쟁 미뀌이
Huîtres de Marennes-Oléron	굴	위트르 드 마렌느 올레롱 (마렌느 올레롱 굴)
Canards à foie gras du Sud-Ouest (Chalosse, Gascogne, Gers, Landes, Périgord, Quercy)	오리지방간	까나르 아 푸아그라 뒤 쉬드우에스트 (샬로스, 가스콘/가스꼴뉴, 제르스, 랑드/렁드, 페리고르/삐리고르, 케르시/께르시) (프랑스 남서부 푸아그라 오리)
Jambon de Bayonne	햄	장봉 드 바이온 (바이온 햄)
Huile d'olive de Haute-Provence	올리브유	월돌리브 드 오뜨 프로방스 (오뜨 프로방스 올리브유)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라벤더 에센스유	월 에쌍시엘 드 라벵드 드 오뜨 프로방스(오뜨 프로방스 라벤더 에센스 오일)

독일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Bayerisches Bier	맥주	바이어리췌스 비어
Münchener Bier	맥주	뮌헨너 비어

그리스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Ελιὰ Καλαμάτας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Elia Kalamatas)	올리브	엘리아 칼라마따스
Μαστίχα Χίου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Masticha Chiou)	검	마스티하 히우
Φέτα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Feta)	치즈	페따

헝가리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Szegedi téliszalámi / Szegedi szalámi	살라미	세게드 텔리살라미 / 세게드 살라미

이탈리아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Aceto balsamico Tradizionale di Modena	소스 - 양념	아체토 발사미코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모데나의 전통 발사믹 식초)
Cotechino Modena	돼지고기 소시지	코테키노 모데나 (모데나의 코테키노 <소시지의 일종>)
Zampone Modena	돼지고기	잠포네 모데나 (모데나의 돼지 앞발)
Mortadella Bologna	큰 돼지고기 소시지	모르타델라 볼로냐 (볼로냐의 모르타델라 <소시지의 일종>)
Prosciutto di Parma	햄	프로슈토 디 파르마 (생햄)
Prosciutto di S. Daniele	햄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 (생햄)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Prosciutto Toscano	햄	프로슈토 토스카노 (생햄)
Provolone Valpadana	치즈	프로볼로네 발파다나 (치즈의 일종)
Taleggio	치즈	탈레조 (베르가모 산 치즈의 일종)
Asiago	치즈	아시아고
Fontina	치즈	폰티나 (발다오스타 지역의 치즈의 일종)
Gorgonzola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의 일종)
Grana Padano	치즈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일종)
Mozzarella di Bufala Campana	치즈	모차렐라 디 부팔라 캄파나 (물소젖 치즈의 일종)
Parmigiano Reggiano	치즈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의 일종)
Pecorino Romano	치즈	페코리노 로마노 (로마의 페코리노 <양젖 치즈의 일종>)

포르투갈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Queijo de São Jorge	치즈	케이주 드 썬 조르쥬

스페인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Baena	올리브유	바에나
Sierra Mágina	올리브유	씨에라 마히나
Aceite del Baix-Ebre-Montsía / Oli del Baix Ebre-Montsià	올리브유	아쎬이테 델 바제브라몬시아/ 올리텔 바제브라몬시아 (바제브라몬시아 오일)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Aceite del Bajo Aragón	올리브유	아세이떼 델 바호 아라곤 (바호 아라곤산 기름)
Antequera	올리브유	안테께라
Priego de Córdoba	올리브유	쁘리에고 데 꼬르도바
Sierra de Cádiz	올리브유	씨에라 데 까디스
Sierra de Segura	올리브유	씨에라 데 세구라
Guijuelo	햄	기후엘로
Jamón de Huelva	햄	하몬 데 우엘바 (우엘바산 햄류)
Jamón de Teruel	햄	하몬 데 테루엘 (테루엘산 햄류)
Salchichón de Vic / Llonganissa de Vic	소시지	살치촌 데 빅/ 룡가니싸 데 빅 (빅산 살치촌, 육가공품의 일종)
Mahón-Menorca	치즈	마온-메노르까
Queso Manchego	치즈	께소 만체고 (라 만차산 치즈)
Cítricos Valencianos / Cítrics Valencians	감귤류	씨뜨리꼬스 발렌씨아노스 (발렌씨아산 감귤류)
Jijona	누가	히호나
Turrón de Alicante	과자류	뚜론 데 알리칸떼 (알리칸떼산 설탕 과자류)
Azafrán de la Mancha	사프란	아싸프란 데 라 만차 (라 만차산 사프란)

**제 2 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 (제10.18조제3항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보성녹차(Boseong Green Tea)	녹차	Boseong Nokcha
하동녹차(Hadong Green Tea)	녹차	Hadong Nokcha
고창복분자주(Gochang Black Raspberry Wine)	복분자주	Gochang Bokbunjaju
서산마늘(Seosan Garlic)	마늘	Seosan Maneul
영양고춧가루(Yeongyang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Yeongyang Gochutgaru
의성마늘 (Uiseong Garlic)	마늘	Uiseong Maneul
괴산고추 (Goesan Red Pepper Dried)	고추	Goesan Gochu
순창전통고추장(Sunchang Traditional Gochujang)	고추장	Sunchang Jeontong Gochujang
괴산고춧가루(Goesan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Goesan Gochutgaru
성주참외(Seongju Chamoe)	참외	Seongju Chamoe
해남겨울배추(Haenam Winter Baechu)	배추	Haenam Gyeoul Baechu
이천쌀(Icheon Rice)	쌀	Icheon Ssal
철원쌀(Cheorwon Rice)	쌀	Cheorwon Ssal
고흥유자(Goheung Yuja)	유자	Goheung Yuja
홍천찰옥수수(Hongcheon Waxy Corn)	찰옥수수	Hongcheon Charoksusu
강화약쑥(Ganghwa Mugwort)	약쑥	Ganghwa Yakssuk
횡성한우고기(Hoengseong Hanwoo Beef)	소고기	Hoengseong Hanwoogogi
제주돼지고기(Jeju Pork)	돼지고기	Jeju Dwaejigogi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자로의 음역
고려홍삼(Korean Red Ginseng)	홍삼	Goryeo Hongsam
고려백삼(Korean White Ginseng)	백삼	Goryeo Baeksam
고려태극삼(Korean Taekuk Ginseng)	태극삼	Goryeo Taekuksam
충주사과(Chungju Apple)	사과	Chungju Sagwa
밀양얼음골사과(Miryang Eoreumgol Apple)	사과	Miryang Eoreumgol Sagwa
정선헌기(Jeongseon Hwanggi)	황기	Jeongseon Hwanggi
남해마늘(Namhae Garlic)	마늘	Namhae Maneul
단양마늘(Danyang Garlic)	마늘	Danyang Maneul
창녕양파(Changnyeong Onion)	양파	Changnyeong Yangpa
무안양파(Muan Onion)	양파	Muan Yangpa
여주쌀(Yeaju Rice)	쌀	Yeaju Ssal
무안백련차(Muan White Lotus Tea)	백련차	Muan Baengnyeoncha
청송사과(Cheongsong Apple)	사과	Cheongsong Sagwa
고창복분자(Gochang Black Raspberry)	복분자	Gochang Bokbunja
광양매실(Gwangyang Maesil)	매실	Gwangyang Maesil
정선찰옥수수(Jeongseon Waxy Corn)	찰옥수수	Jeongseon Charoksusu
진부당귀 (Chinbu Dangui)	당귀	Chinbu Dangui
고려수삼(Korean Fresh Ginseng)	수삼	Goryeo Susam
청양고추(Cheongyang Hot Pepper)	고추	Cheongyang Gochu
청양고춧가루(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고춧가루	Cheongyang Gochutgaru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자로의 음역
해남고구마(Haenam Sweet Potato)	고구마	Haenam Goguma
영암무화과(Yeongam Fig)	무화과	Yeongam Muhwagwa
여주고구마(Yeaju Sweet Potato)	고구마	Yeoju Goguma
함안수박(Haman Watermelon)	수박	Haman Subak
고려인삼제품 (Korean Ginseng Products)	백삼 또는 태극삼 제품	Goryeo Insamjepum
고려홍삼제품(Korean Red Ginseng Products)	홍삼제품	Goryeo Hongsamjepum
군산찰쌀보리쌀(Gunsan Glutinous Barley)	보리	Gunsan Chalssalborissal
제주녹차(Jeju Green Tea)	녹차	Jeju Nokcha
홍천한우(Hongcheon Hanwoo)	소고기	Hongcheon Hanwoo
양양송이버섯(Yangyang Pine-mushroom)	송이버섯	Yangyang Songibeoseot
장흥표고버섯(Jangheung Oak-mushroom)	표고버섯	Jangheung Pyogobeoseot
산청곶감(Sancheong Persimmon Dried)	곶감	Sancheong Gotgam
정안밤(Jeongan Chestnut)	밤	Jeongan Bam
울릉도삼나물(Ulleungdo Samnamul)	삼나물	Ulleungdo Samnamul
울릉도미역취(Ulleungdo Miyeokchwi)	미역취	Ulleungdo Miyeokchwi
울릉도참고비(Ulleungdo Chamgobi)	참고비	Ulleungdo Chamgobi
울릉도부지갱이(Ulleungdo Bujigaengi)	부지갱이	Ulleungdo Bujigaengi
경산대추(Gyeongsan Jujube)	대추	Gyeongsan Daechu
봉화송이(Bonghwa Pine-mushroom)	송이버섯	Bonghwa Songi
청양구기자(Cheongyang Gugija)	구기자	Cheongyang Gugija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상주곶감(Sangju Persimmon Dried)	곶감	Sangju Gotgam
남해창선고사리(Namhae Changsun Fern)	고사리	Namhae Changsun Gosari
영덕송이(Yeongdeok Pine-mushroom)	송이버섯	Yeongdeok Songi
구례산수유(Gurye Corni fructus)	산수유	Gurye Sansuyu
광양백운산 고로쇠 (Gwangyang baekunsan Acer mono sap)	고로쇠수액	Gwangyang baekunsan Gorosoe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 1 부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¹⁾
(제10.19조제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 1 절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Beaujolais	보졸레
Bordeaux	보르도
Bourgogne	부르고뉴 / 버건디
Chablis	샤블리 / 샤블리스
Champagne	샹파뉴 / 샴페인 / 샹빠뉴
Graves	그라브
Médoc	메독 / 매독
Moselle	모젤
Saint-Emilion	생테밀리옹 / 생테밀리옹
Sauternes	쏘테른 / 소테른
Haut-Médoc	오메독 / 오매독
Alsace	알자스
Côtes du Rhône	코뜨 뒤 론 / 코트 뒤 론
Languedoc	랑그독
Côtes du Roussillon	코뜨 뒤 루시옹 / 코트 뒤 루시옹
Châteauneuf-du-Pape	샤또 네프 뒤 빠뻬 / 샤또 네프 뒤 파프

1) 이탤릭으로 쓰여진 부분은 지리적 표시의 일부가 아니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Côtes de Provence	코뜨 드 프로방스 / 코트 드 프로방스
Margaux	마르고 / 마고
Touraine	투렌느 / 투렌
Anjou	앙주 / 앙쥬
Val de Loire	발 드 루아르 / 발 드 르와르

독일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Mittelrhein	미털라인
Rheinhessen	라인헤센
Rheingau	라인가우
Mosel	모젤

그리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Ρετσίνα (<i>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Retsina</i>)	레찌나
Σάμος (<i>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Samos</i>)	사모스

헝가리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Tokaj	토카이

이탈리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Chianti	키안티
Marsala	마르살라
Asti	아스티
Barbaresco	바르바레스코
Bardolino	바르돌리노
Barolo	바롤로
Brachetto d'Acqui	브라케토 다퀴
Brunello di Montalcino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Vino nobile di Montepulciano	비노 노빌레 디 몬테 풀치아노
Bolgheri Sassicaia	볼게리 사씨카이아
Dolcetto d'Alba	돌체토 달바
Franciacorta	프란차코르타
Lambrusco di Sorbara	람브루스코 디 소르바라
Lambrusco Grasparossa di Castelvetro	람브루스코 그라스파로사 디 카스텔 베토로
Montepulciano d'Abruzzo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초
Soave	소아베
Campania	캄파니아
Sicilia	시칠리아
Toscana	토스카나
Veneto	베네토
Conegliano Valdobbiadene	코넬리아노 발도비아데네

포르투갈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Madeira	마데이라
Porto <i>or</i> Port	쁘르뚜
Douro	도우루
Dão	더웅
Bairrada	바이하다
Vinho Verde	비뉴 베르드
Alentejo	알렌떼쥬

루마니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Dealu Mare	데알루 마레
Murfatlar	무르파트라르

슬로바키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Tokajská <i>or</i> Tokajský <i>or</i> Tokajské	토카이스카 / 토카이스키 / 토카이스케

스페인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Málaga	말라가
Rioja	리오하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Jerez – Xérès – Sherry <i>or</i> Jerez <i>or</i> Xérès <i>or</i> Sherry	헤레스 – 헤레스 – 셰리, 헤레스, 헤레스 또는 셰리
Manzanilla - Sanlúcar de Barrameda	만싸니야 – 산루까르 데 바라메다
La Mancha	라 만차
Cava	까바
Navarra	나바라
Valencia	발렌시아
Somontano	소몬타노
Ribera del Duero	리베라 델 두에로
Penedés	빠네데스
Bierzo	비에르쑈
Ampurdán-Costa Brava	암뿌르단 – 꼬스따 브라바
Priorato <i>or</i> Priorat	쁘리오라또 / 뿌리오란
Rueda	루에다
Rías Baixas	리아스 바이샤스
Jumilla	후미야
Toro	도로
Valdepeñas	발데빠냐스
Cataluña	까탈루냐
Alicante	알리칸떼

제 2 절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증류주²⁾³⁾

오스트리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Jägertee / Jagertee / Jagatee	예거테
Inländerrum	인랜더룸
Korn / Kornbrand ⁴⁾	코언 / 코언브랜드

벨기에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Korn / Kornbrand ⁵⁾	코언 / 코언브랜드

사이프러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Ouzo ⁶⁾	우조

핀란드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Vodka of Finland	보드카 오브 핀란드
Finnish berry liqueur / Finnish fruit liqueur	피니쉬 베리 리퀴 / 피니쉬 프루트 리퀴

2) 이탤릭으로 쓰여진 부분은 지리적 표시의 일부가 아니다.

3) 지리적 표시가 다음과 같이 사용된 경우: “Korn / Kornbrand”, 이것은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5)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6) 사이프러스 또는 그리스의 제품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Cognac	꼬냑 / 코냑
Armagnac	아르마냑
Calvados	칼바도스 / 칼바도스

독일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Korn / Kornbrand ⁷⁾	코언 / 코언브랜드

그리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Ouzo ⁸⁾	우조

헝가리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Törkölypálinka	퇴르코이팔린카
Pálinka	팔린카

7)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8) 사이프러스 또는 그리스의 제품

아일랜드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Irish whiskey / Irish whisky	아이리쉬 위스키 (양주의 일종)

이탈리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Grappa	그라파

폴란드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Polska Wódka / Polish Vodka	폴스카 부드카 / 폴리쉬 보드카
Wódka ziołowa z Niziny Północnopodlaskiej aromatyzowana ekstraktem z trawy żubrowej / Herbal vodka from the North Podlasie Lowland aromatised with an extract of bison grass	부드카 지오워바 즈 니지느 푸노쯔노 포들라스키에이 아로마티조바나 예크 스트라크템 즈 트라브 쥬브로베이 / 허발 보드카 프럼 더 놀스 포들라시에 로우랜드 아로마타이즈드 위드 언 익 스트랙트 오브 바이슨 그라스
Polska Wiśniówka / Polish Cherry	폴스카 비쉬니우브카 / 폴리쉬 체리

스페인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Brandy de Jerez	브랜드 데 헤레스 (헤레스산 브랜드)
Pacharán	빠차란

스웨덴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Swedish Vodka	스웨디쉬 보드카 (스웨덴산 보드카)
Svensk Aquavit / Svensk Akvavit / Swedish Aquavit	스웬스크 아쿠아비트/ 스웬스크 아쿠아비트/ 스웨디쉬 아쿠아 비트 (스웨덴산 아쿠아비트)
Svensk Punsch / Swedish Punch	스웬스크 펀체 / 스웨디쉬 펀치

영국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Scotch Whisky	스카치 위스키

제 2 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증류주(제 10.19조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증류주

보호되는 명칭	로마자로의 음역
진도홍주(Jindo Hongju)	Jindo Hongju

제 11 장 경쟁

제 1 절 경쟁

제 11.1 조 원칙

1.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무역관계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아니한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상품, 서비스 및 설립에 무역 자유화 과정의 혜택이 반경쟁적 영업행위나 반경쟁적 거래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철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경쟁법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자는 각자의 영역 내에서 경쟁 제한적 합의, 동조적 행위¹⁾ 및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기업 간 결합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경쟁법을 유지한다.

3. 양 당사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이 협정의 적절한 기능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가. 당사자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경쟁의 금지,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기업 간 합의, 기업 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행위

나. 당사자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또는

다. 당사자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특히 지배적

1) 동조적 행위에 대한 이 조의 적용은 각 당사자의 경쟁법에 의해 결정된다.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 간 결합

제 11.2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6조, 기업 간 결합의 통제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 139/2004호*와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 나. 대한민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다. 이 협정의 발효 후 이 조에 규정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변경 사항

제 11.3 조 이행

1. 양 당사자는 제11.2조에 규정된 경쟁법의 이행을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하게 조직된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2. 양 당사자는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관련 당사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경쟁법을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무와 관련된 자신의 경쟁법 집행 활동과 법령에 관한 공공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 11.4 조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²⁾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

1.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 어떠한 당사자도 제11.1조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자는 그러한 기업들이 제11.2조에 규정된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들에게 맡겨진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한다.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1.5 조

국가 독점

1. 각 당사자는 상품이 조달되고 판매되는 조건에 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³⁾도 양 당사자의 자연인 간 또는 법인 간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상업적 성격의 국가 독점을 조정한다.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국가 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특별한 권리는 당사자가 객관적,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 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다.

3) **차별적 조치**란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내국민대우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이 조는 제9장(정부조달)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1.6 조

협력

1. 양 당사자는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더욱 제고하고 경쟁 증진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또는 반경쟁적 거래의 축소를 통해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경쟁당국 간 협력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2009년 5월 2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 협정*에 근거한 집행 협력, 통보, 협의 및 비밀 아닌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각자의 집행 정책에 관하여 그리고 경쟁법 집행에서 협력한다.

제 11.7 조

협의

1. 제11.6조제2항에 언급된 협정에 더 구체적인 규칙이 없을 때,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절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다른 쪽 당사자는 자신의 요청에,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2.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절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협의한다.

3. 협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11.8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2 절

보 조 금

제 11.9 조

원칙

양 당사자는 보조금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보조금에 의하여 야기된 경쟁의 왜곡을 경쟁법의 적용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거나 제거하고, 그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다.

제 11.10 조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1.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이다.

2.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적이다.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의미에서 특정적인 경우에만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 11.11 조 금지보조금⁴⁾⁵⁾

다음의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조건에 따라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금지된다.

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채와 채무의 금액 또는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 없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 특정기업의 부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보조금, 그리고

나.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 가능 상태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 없이, 그리고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비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보조금(대부 및 보증, 현금 무상교부, 자본 투입, 시장가격 미만의 자산 제공 또는 세금 감면 등). 이는 양 당사자가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청산 계획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오로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한정된 대부 보증 또는 대부의 형태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조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수령되는 보조금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나호 및 이에 부속된 각주 2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은 국내 및 수출시장 모두로 구성된다.

이 호는 공공서비스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여되는 보조금과 석탄산업에 부여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12 조

투 명 성

1. 각 당사자는 보조금 분야에서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특정적이고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유형 및 분야별 분배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매년 통보한다. 통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의 목적, 형태, 금액 또는 예산, 그리고 가능한 경우 수령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한 통보는 다음해 12월 31일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송되거나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보조금 계획과 특정적인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개별사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양 당사자는 직업상 및 영업상의 비밀 요건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을 고려하여 이 정보를 교환한다.

제 11.13 조

세계무역기구협정과 관계

이 절의 규정은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구제를 적용하거나 분쟁해결을 제기하거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1.14 조

감시 및 검토

양 당사자는 이 절에서 언급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발효 후 2년마다 이 절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 11.15 조

적용범위

1. 제11.9조부터 제11.14조까지의 규정은 수산보조금,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보조금, 그리고 농업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된다.

2. 양 당사자는 다자수준에서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발전시키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양 당사자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에 관하여 최초의 견해 교환을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하기로 합의한다.

부속서 11

제 12 장 투 명 성

제 12.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란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여 일반적 또는 추상적 행위, 절차, 해석 또는 그 밖의 요건을 말한다. 이는 특정인에 적용되는 판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란 제12.2조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따라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12.2 조 목적 및 적용범위

당사자 각자의 규제 환경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자는 경제운영자, 특히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하는 소규모 경제운영자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추구한다.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상의 그들 각자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투명성, 협의 및 더 나은 운영을 위한 명확화와 개선된 약정을 이에 규정한다.

제 12.3 조

공표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보장한다.

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될 것

나. 그러한 조치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 그리고

다. 법적 안정성, 정당한 기대 및 비례성의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조치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

2. 각 당사자는

가. 제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나. 이해관계인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그러한 기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그리고

다.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제 12.4 조

질의처 및 접촉선

1. 각 당사자는 제안되거나 발효 중인 것으로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그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

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질의는 이 협정상 수립되는 질의처 또는 접촉선을 통하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각자의 법과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규정된 응답은 최종적이거나 법적으로 구속적이지 아니하며 오직 정보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요청당사자가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당사자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관련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4. 각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임무를 가진 그 이해관계인을 위한 질의처 또는 접촉선을 확인하거나 창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과정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시간을 준수하며, 결과 지향적이고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당사자가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장소 또는 재심 절차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과정은 또한 제14장(분쟁 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상의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2.5 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들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특정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함에 있어,

가. 절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공이익이 허용하는 한, 그러한 이해관계인에게 최종적인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다. 자신의 절차가 자신의 법에 근거하고, 이에 따르도록 보장한다.

제 12.6 조 재심 및 상소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자는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자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근거한 결정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에 규정된 장소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 12.7 조

규제의 질 및 성과와 모범 행정 행위

1. 양 당사자는 각자의 규제 개혁 과정과 규제 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규제의 질과 성과를 증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자는 모범 행정 행위의 원칙에 동의하고, 정보와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 12.8 조

비 차 별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국의 이해관계인, 또는 제3국에 부여되는 투명성 기준 중 최선의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투명성 기준을 다른 쪽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한다.

부속서 12

제 13 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 13.1 조 배경과 목적

1.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 21,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UN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을 상기하며, 양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자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양 당사자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그들의 의도가 아니며, 제1항과 제2항의 문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역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임을 인정한다.

제 13.2 조 적용범위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13.1조제1항 및 제

13.1조제2항의 문맥상 노동¹⁾ 및 환경 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양 당사자는 환경 및 노동 기준이 보호주의적 무역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비교 우위를 문제 삼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주목한다.

제 13.3 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자신의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그러한 법과 정책이 제13.4조 및 제13.5조에서 언급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13.4 조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1. 양 당사자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고용 및 사회적 도전과 기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고용 및 노동에 대한 국제 협력과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관심있는 무역 관련 노동 및 고용 문제에 대해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자는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국제연합 경제*

1) 노동이 이 장에서 언급될 때에는 노동은 국제노동기구(이하 “국제노동기구”라 한다)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에서 합의한 양질의 일자리 의제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사회이사회 각료선언에 따라,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모든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국제 협력의 우선 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과, 남성, 여성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 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한다.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각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제 13.5 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자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해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그들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교토 의정서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발리행동계획*²⁾에 따라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발전에 관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제 13.6 조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익한 무역

1. 양 당사자는 무역이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해야 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핵심 노동 기준과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적 효율성, 혁신 및 생산성에 갖는 유익한 역할을 인정하고, 한편으로 무역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 고용 및 노동 정책 간의 더 나은 정책적 일관성이 갖는 가치를 강조한다.

2. 양 당사자는 관련 비관세 장벽의 처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환경기술,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적 제품 및 서비스와 에코 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포함한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체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상품의 무역을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13.7 조

법·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1.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 및 노동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아니 된다.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결정문-1/CP.13*

2.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법, 규정 또는 기준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법에 부여된 환경이나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13.8 조

과학적 정보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사회적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3.9 조

투명성

양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와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3.10 조

지속가능성 영향 검토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립된 절차와 제도뿐만 아니라 각자의 참여 절차와 제도를 통해, 예를 들어 무역 관련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점검 및 평가하기로 약속한다.

제 13.11 조

협력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 및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부속서 13에 규정된 대로 협력 활동을 개시하기로 약속한다.

제 13.12 조

제도적 장치

1. 각 당사자는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와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신의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2.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양 당사자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부속서 13에 따라 수행된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이 협정 발효 첫 해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내자문단(환경 및 노동)을 설치한다.
5. 국내자문단은 환경, 노동 및 기업 단체와 그 밖의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다.

제 13.13 조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1. 각 당사자의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양 당사자 간 무역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을 포괄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 시민사회포럼에서 회합할 것이다. 시민사회포럼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년에 한 번 회합할 것이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합의한다.

2. 국내자문단은 제13.12조제5항에 규정된 대로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자신의 위원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3. 양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시민사회포럼에 제출할 수 있다. 시민사회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제출될 수 있다.

제 13.14 조 정부간 협의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제 13.12조에서 언급된 국내자문단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제기되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된다.

2. 양 당사자는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기구 또는 기관의 업무 간에 협력과 일관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이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기구 또는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관련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양 당사자는 이러한 기구나 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해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속하게 소집되고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해결책은 공개된다.

4. 위원회는 한 쪽 또는 양 쪽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자문단은 또한 자체 발의로 의견을 그 당사자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3.15 조 **전문가 패널**

1.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제 13.14조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전달된 90일 후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에 입장제출을 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자, 국내자문단, 또는 제13.14조에 규정된 국제기구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된다.

2.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전문가 패널은 이 장을 이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공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은 마지막 전문가의 선출로부터 90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자문이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전문가 패널 권고의 이행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의해 점검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자의 국내 자문단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비밀정보와 관련해서는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칙)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비당사자 국민 최소 5인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최소 15인의 명부에 합의한다. 그 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나 국내자문단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들과 관계가 있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명부에서 1인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그러한 기간 내에 자신의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그 당사자의 국민 1인을 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2인의 전문가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의장을 결정한다.

제13.16조

분쟁해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13.14조 및 제13.15조에 규정된 절차만을 이용한다.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자는 제13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

가. 양 당사자가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이 협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이를 강화, 방지 또는 완화할 방법에 대한 견해의 교환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및 그 밖의 협약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비준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 에코 라벨부착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부착제도, 녹색공공조달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

마.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바.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문제, 무역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 그리고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사.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아.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증진하는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자. 불법 벌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산림벌채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차. 세관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카. 무역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노동시장 조정, 핵심 노동기준,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포용, 사회적 대화와 남녀평등 간의 상호 연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양질의 일자리 의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타.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또는
- 파.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2. 양 당사자는 그들이 개발한 협력 활동의 적용과 혜택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제 14 장 분쟁해결

제 1 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 14.1 조 목적

이 장은 이 협정의 신의성실한 적용에 관한 양 당사자 간 분쟁을 회피하고 해결하며 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¹⁾

제 2 절 협의

제 14.3 조 협의

1)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되는 분쟁에 대하여, 이 장에서 무역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문화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협의에 임함으로써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조치와 적용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시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요청으로 협의를 구한다. 협의 요청서의 사본은 무역위원회에 전달된다.

3.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양 당사자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하는 동안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

4.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²⁾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고, 요청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각각 규정된 기한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나,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제14.4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분쟁해결절차

제 1 관 중재절차

2) 계절 상품이란, 그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 중, 연중 분산되지 아니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 해의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상품이다.

제 14.4 조

중재절차 개시

1. 양 당사자가 제14.3조에 규정된 협의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그 요청에 적시하고,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4.5 조

중재패널 설치

1.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무역위원회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구성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의한다.

3. 양 당사자가 제2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패널의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무역위원회 의장이나 의장의 대리인에게, 제14.18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서 추첨으로 제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 피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과 의장 역할을 하도록 양 당사자가 선정한 개인 중 1인으로 된, 모두 3인의 구성원을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중재패널 구성원에 합의하는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동일한 절차로 선정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된 날이다.

제 14.6 조

패널 잠정보고서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중재패널이 내린 조사결과 및 권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도록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이내에,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도록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4. 잠정보고서에 관한 양 당사자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최종 중재패널 판정은 중간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제 14.7 조

중재패널판정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정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의 경우, 중재패널은 그 설치일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을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설치 후 75일을 초과하여 소요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재패널은 그 사건을 긴급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관한 예비 판정을 그 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릴 수 있다.

제 2 관 이행

제 14.8 조 중재패널 판정의 이행

각 당사자는 중재패널 판정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양 당사자는 그 판정을 이행하는 기간에 대해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제 14.9 조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1. 양 당사자에게 중재패널 판정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통보한다.

2.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할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피소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행한 통보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중재패널은 요청의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한다.

3.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은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35일이다.

4. 피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중재패널 판정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제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줄 것이다.

5.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 14.10 조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통보한다.

2. 조치의 존재나,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의 합치에 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에 대해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는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가 적시되고,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 양립불가능한지 설명된다. 중재패널은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제출한다.

3.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은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로부터 60일이다.

제 14.11 조

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

1. 피소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제14.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할 경우, 일시적 보상에 대한 제안을 한다.

2.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제14.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불합치한다는 제14.10조에 따른 중재패널 판정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14.2조에 언급된 모든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정지할 권한을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하는 즉시 갖는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자가 정지하고자 하는 의무의 수준이 명시된다. 피소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중재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 그 정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의무를 정지함에 있어 제소 당사자는 관세율의 인상으로 곱해진 무역량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의 가치와 같게 되도록 결정되는 무역량에 대하여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정지의 수준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피소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제2항에서 언급된 10일의 기간 만료 전에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원 중재패널은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의무의 정지 수준에 대한 판정을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원 중재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 전까지 의무가 정지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정지도 중재패널 판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5.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그 판정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4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이다.

6. 의무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고,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불합치하다고 판명된 조치가 제14.12조에 따라 정하여진 대로 그러한 규정에 합치되도록 철회 또는 개정된 때 까지, 또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제 14.12 조

의무의 정지 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제소 당사자가 신청한 의무의 정지에 대한 종료 요청을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2.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하여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한 요청

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중재패널 관정은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제출된다.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합치된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의무의 정지가 종료된다.

3.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그 판정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60일이다.

제 3 판 공통 규정

제 14.13 조 상호 합의된 해결

양 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장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모든 그러한 해결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통보되는 즉시, 절차는 종료된다.

제 14.14 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4-나의 규율을 받는다.
2. 중재패널의 모든 심리는 부속서 14-나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제 14.15 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를 포함하여 중재패널 절차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또한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문가의 관련 의견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된 정보는 양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양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부속서 14-나에 따라 외부조언자의 의견서를 중재패널에 제출하는 것이 승인된다.

제 14.16 조 해석 규칙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규칙을 포함한 국제 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을 해석한다. 이 협정상의 의무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의무와 동일한 경우, 중재패널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이하 “분쟁해결기구”라 한다)의 판정에서 수립된 관련 해석과 합치하는 해석을 채택한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제14.2조에 언급된 조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제 14.17 조 중재패널 결정 및 판정

1. 중재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로 결정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인의 반대의견은 공표되지 아니한다.

2. 중재패널의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판정은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판정을 전부 공개한다.

제 4 절 일반 규정

제 14.18 조 중재인 명부

1.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중재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개인 5인을 제안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면서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5인을 선정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명부가 이 수준으로 항상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2. 중재인은 법과 국제무역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어떠한 당사자 정부와 연계되지 아니하고, 부속서 14-다를 준수한다.

제 14.19 조 세계무역기구 의무와의 관계

1. 이 장의 분쟁해결 규정의 이용은, 분쟁해결 조치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 장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중 어느 한 쪽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당사자는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그 두 포럼에서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면, 선택된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그 의무의 시정을 구하는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협정상의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구하려는 주장을 다른 쪽 포럼에서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목적상,

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사자의 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분쟁해결기구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6조 및 제17.14조에 따라, 각 경우에 맞게,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를 채택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제14.4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중재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패널이 제14.7조에 따라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의무의 정지를 이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당사자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정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용되지 아니한다.

제 14.20 조 기한

1. 중재패널이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기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날이 된다.

2. 이 장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제 1 조 목적

이 부속서는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중개인의 지원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발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중개 메커니즘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과 이에 속하는 부속서상의 것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¹⁾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제 1 절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

제 3 조 중개절차의 개시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그리고 무역구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원활화,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 및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의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하여 관련된 무역 규칙을 포함한다. 이는 농산물 무역, 서비스 및 설립, 문화협력,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지급 및 자본이동, 그리고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제외한다.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중개절차에 임하도록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된다. 그 요청은 요청 당사자의 우려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충분히 자세해야 하고, 다음이어야 한다.

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할 것

나. 그 조치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미치는 것으로 요청 당사자가 믿는 주장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진술을 제공할 것, 그리고

다. 그러한 무역 효과가 어떻게 그 조치와 연결된다고 요청당사자가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

2.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그 요청의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서면 응답을 제공한다.

제 4 조 중개인의 선정

1. 중개절차를 개시한 경우, 양 당사자는 요청에 대한 응답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중개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장려된다. 양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중개인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추첨으로 중개인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요청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고,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며,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 3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그 명부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명부에서 최소한 하나의 이름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선정된 이름 중 추첨으로 중개인을 선정한다. 추첨에 의한 선정은 양 당사자 대표의 임석 하에 추첨에 의한 임명 요청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2. 중개인은, 문제되는 조치와 관련이 있는 대상 분야에서 전문가이어야

한다.²⁾ 중개인은, 양 당사자가 그 조치와 그 가능한 무역 효과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 5 조 중개절차 규칙

1.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중개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 특히 문제가 되는 조치의 운영 및 그 무역 효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중개인과 다른 한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제출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는 문제의 기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자신의 기술 또는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

2. 중개인은 초기단계를 수행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특히 양 당사자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인지,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들과 협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초기 단계에 이어, 중개인은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고려할 만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의견에서, 중개인은 문제되는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조치의 정책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의문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중개인은 상호 합의된 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회합할 수 있다. 이 절차 단계는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완료된다.

4. 중개절차는 비밀이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영역에서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장소에서나 방법으로 수행된다.

2) 예를 들어, 표준 및 기술 요건에 관한 경우, 중개인은 관련 국제표준제정기관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중개절차는 다음으로 종결된다.

가. 양 당사자의 해결 합의에 대한 서명으로, 그 서명일에

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합의 일에

다. 양 당사자와의 협의 후 추가적인 중개 노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는 중개인의 서면 선언으로, 또는

라. 중개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 그리고 중개인의 자문 의견 및 제안을 고려한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선언으로

제 2 절 이행

제 6 조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이행

1. 양 당사자가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과도한 지체 없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이행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단계나 조치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 3 절 일반 규정

제 7 조

분쟁해결과의 관계

1.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는 이 협정 또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해결절차에서 증거로서 다음에 의존하거나 이를 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중개절차 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취한 입장

나. 중개의 대상이 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쪽 당사자가 수용할 의향을 보였다는 사실, 또는

다. 중개인이 제시한 제안

2. 중개 메커니즘은 제14장(분쟁해결)상의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기한

이 부속서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제 9 조

비용

1. 각 당사자는 중개절차에의 참여로부터 발생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자는 중개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사안으로 발생한 비용을 분담한다.

제 10 조 검토

1. 양 당사자는, 제14.2조에 정의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안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그러한 사안을 다루는 상응하는 메커니즘³⁾의 설치에 합의할 경우, 그 중개 메커니즘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적용 범위의 확대는 그러한 합의의 적용일부부터이다. 이는 상응하는 세계무역기구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적 확대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5년 후, 양 당사자는 획득된 경험, 그리고 상응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메커니즘의 발전에 비추어, 중개 메커니즘을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

3) “상응하는 메커니즘”이란 아프리카 그룹, 캐나다, 유럽연합, 최빈개도국 그룹,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관한 11개 개발도상국 그룹,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및 스위스가 2007년 7월 23일자 문서 TN/MA/W/88“비관세장벽·비관세장벽에 대한 해결의 촉진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제안”에서 제안한 메커니즘, 또는 2007년 7월 23일자 문서 TN/MA/W/88을 대체하는 문서에서 제안된 그 밖의 유사한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는 양해한다.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제 1 조 일반 규정

1. 제14장과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자가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문하거나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14.5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당사자의 대표자란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당사자의 정부 또는 정부 부처의 고용인이나 정부 또는 정부 부처에 의하여 임명된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자란 제14.4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피소 당사자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중재패널이란 제14.5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2.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자는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양 당사자는 중재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한다.

제 2 조

통보

1. 양 당사자와 중재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2.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게 각 서면 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3. 모든 통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회 통상총국에 각각 제출된다.

4.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5. 문서 전달 마감일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제 3 조

중재 개시

1. 가. 제14.5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구성원이 추천으로 선정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제14.5조제3항에 언급된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대표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선정은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임석하여 이루어진다.
나.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될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또는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중재패널의 설치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과 회합하며 그 사안은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르게 될 것이다.
2. 가. 중재패널 설치일부터 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 문제되는 조치의 합치성에 관하여 판정하며, 제14.7조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것”

- 나.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에 대하여 합의된 위임 사항을 합의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 4 조 최초 서면 입장

제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20일 이내에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자는 최초 서면입장의 전달일 후 20일 이내에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제 5 조

중재패널 작업

1. 중재패널의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 심의에 보조인의 출석을 허락할 수 있다.
4. 판정문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정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한 규정과 양립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6.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한을 수정하거나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와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알린다. 제14.7조제2항의 기한은 수정될 수 없다.

제 6 조

교체

1. 중재인이 절차에 참여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교체되어야 할 경우, 후임은 제14.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다.

2. 중재인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부속서 14-다에 대한 중재인의 실질적인 위반의 바탕이 되는 상황을 알게 되었던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3. 의장을 제외한 중재인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며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중재인을 교체하고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정한다.

양 당사자가 중재인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그 사안이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중재인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장이 발견하는 경우, 그 의장은 원 중재인이 구성원이었던 제14.18조제1항에서 언급된 개인의 명부에서 추첨으로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한다. 원 중재인이 제14.5조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그 후임은 제14.18조제1항에 따라 제소 당사자와 피소 당사자가 제안했던 개인의 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4. 중재패널의 의장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며,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의장을 교체하고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정한다.

양 당사자가 의장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제14.18조제1항에 따라 의장 역할을 하도록 선정된 개인의 명부의 잔여 구성원 중 하나에게 그 사안이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의 이름은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대리인의 추첨으로 뽑혀진다. 의장을 교체할 필

요에 대한 이 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원 의장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이 인이 결정하는 경우, 그 인은 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제14.18조제1항에 언급된 개인의 명부의 잔여 구성원 중 하나를 추첨으로 새로운 의장으로 선정한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추첨에 의한 선정은, 당사자가 자신의 대표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임석하고,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6. 중재패널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 7 조

심리

1. 의장은, 양 당사자 및 중재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심리가 공중에게 비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자는 이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양 당사자 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패널은 심리를 열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제소 당사자가 대한민국일 경우 브뤼셀에서, 제소당사자가 유럽연합 당사자일 경우 서울에서 개최된다.

3. 중재패널은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4.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임석한다.

5. 다음의 인은 심리가 공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가. 양 당사자의 대표자

나. 양 당사자의 자문인

다. 행정 인력, 통역가, 번역가 및 법원서기, 그리고

라. 중재인의 보조인

양 당사자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심리일 5일 이전에 그 당사자 대신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다른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7. 중재패널의 심리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공중에게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양 당사자가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심리는 공중에게 공개된다. 당사자의 서면입장 및 주장이 상업적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8.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자와 피소 당사자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자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자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자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자의 반박 답변

9.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당사자에게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10.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고 양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전달되도록 주선한다.

11. 각 당사자는 심리일부터 10일 이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제 8 조

서면 질문

1. 중재패널은 절차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중재패널이 제기한 모든 질문서 사본을 받는다.

2.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또한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전달일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의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 9 조

비밀 유지

이 부속서 제7조제7항에 따라 심리가 비공개 회의로 열리는 경우, 양 당사자와 그 자문인은 그 중재패널 심리의 비밀을 유지한다. 각 당사자와 그 자문인은, 다른 쪽 당사자가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중재패널에 서면 입장의 비밀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 또는 제출일 중 더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입장에 포함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자가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일방적 접촉

1. 중재패널은 다른 쪽 당사자의 참석 없이 어느 한 쪽 당사자와 회합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재패널의 어떠한 구성원도 다른 중재인의 참석 없이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와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외부조언자의 서면입장

1. 중재패널을 설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을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해야 하고, 중재패널이 검토 중인 사실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2. 그 서면입장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3.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는 모든 서면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그러한 서면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서면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출된다.

제 12 조

긴급사건

제14.7조제2항에 언급된 긴급사건의 경우 중재 패널은 적절한 경우 이 부속서에 언급된 기한을 조정한다.

제 13 조

번역 및 통역

1. 제14.3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이 부속서 제3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회합 이전에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 앞에서의 절차를 위한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자가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서면 입장을 다른 쪽 당사자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도록 신속히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피소 당사자는 구두 입장을 양 당사자가 선택한 언어로 통역하도록 주선한다.

3. 중재패널 판정은 양 당사자가 선택한 1개 언어 또는 복수 언어로 제출된다.

4. 중재패널 판정의 번역으로 발생한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5. 어떠한 당사자도 이 조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번역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 기한 계산

이 부속서 제2조제5항의 적용을 이유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가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다.

제 15 조 그 밖의 절차

이 부속서는 제14.9조제2항, 제14.10조제2항, 제14.11조제3항 및 제14.1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이 부속서에 규정된 기한은 그 다른 절차에서 중재패널 판정의 채택을 위하여 규정된 특별 기한에 맞게 조정된다.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 1 조 정의

-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구성원** 또는 **중재인**이란 제14.5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 나. **중개인**이란 부속서 14-가에 따라 중개 절차를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 다. **후보자**란 그 이름이 제14.18조에 언급된 중재인의 명부에 있고, 제14.5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구성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 라. **보조인**이란 구성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 마.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상의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 바. 구성원에 대하여는, **직원**이란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구성원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제 2 조 절차에 대한 책임

모든 후보자와 구성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완전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구성원들은 이 부속서 제6조 및 제7조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공개 의무

1. 이 협정상 중재패널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2. 후보자 또는 구성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자의 검토를 위하여 무역위원회에만 전달한다.

3. 일단 선정되면, 구성원은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모든 단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구성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구성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자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무역위원회에 알림으로써 공개한다.

제 4 조

구성원의 의무

1. 선정되는 경우 구성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2. 구성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이 부속서의 제2조, 제3조 및 제7조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구성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1. 구성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어느 한 쪽 당사자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구성원은 그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재패널에서의 그의 지위를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하는 행동을 피한다.

4. 구성원은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수 없다.

5. 구성원은 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6 조

전임 구성원의 의무

모든 전임 구성원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중재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이 도출되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제 7 조

비밀 유지

1. 구성원이나 전임 구성원은 그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동안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성원은 이 협정에 따른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이나 전임 구성원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어느 구성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중개인

구성원 또는 전임 구성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부속서에 기술된 규율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중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5 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제 15.1 조

무역위원회

1.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와 유럽연합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위원회¹⁾를 설치한다.

2. 무역위원회는 브뤼셀과 서울에서 교대로 1년에 한 번 또는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무역위원회는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무역을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이 된다. 무역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

3. 무역위원회는

가. 이 협정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나.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며 협정의 일반 목표를 증진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 양 당사자 간의 무역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마. 제14장(분쟁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거나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과 방법을 구한다.

1) 문화협력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역위원회는 그 의정서에 관하여 어떠한 관할권도 가지지 아니하고 문화협력위원회는 문화협력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기능이 관련될 경우에 그 의정서에 관하여 무역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 바. 양 당사자 간 무역의 발전을 연구한다. 그리고
- 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관심 사안을 검토한다.

4. 무역위원회는

- 가. 전문위원회, 작업반 또는 다른 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 마. 이 협정이 상정한 대로 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 바.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 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무역위원회는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과 전문위원회, 작업반 그리고 다른 기관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6. 제14장(분쟁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라도 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7. 당사자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무역위원회, 전문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8. 투명성과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중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

의 관행을 확인한다.

제 15.2 조 전문위원회

1. 다음의 전문위원회가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 가. 제2.16조(상품무역 위원회)에 따른 상품무역 위원회
 - 나. 제5.10조(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원회)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 다. 제6.16조(관세위원회)에 따른 관세위원회. 세관협정의 배타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서 관세위원회는 그 협정에 따라 설치된 세관 협력 공동위원회로서 기능한다.
 - 라. 제7.3조(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에 따른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 마. 제13.12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그리고
 - 바.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 4에 따른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설치된 전문위원회의 활동범위와 임무는 이 협정의 관련되는 장과 의정서에서 정의된다.
2. 무역위원회는 자신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기능을 결정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적절한 급에서 브뤼셀과 서울에서 교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전문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의제를 정한다.

다.

4. 전문위원회는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무역위원회에 알린다. 전문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위원회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어떠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무역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전문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 15.3 조 작 업 반

1. 다음의 작업반이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 제9조(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제2항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나.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5조(규제 협력)제3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다. 부속서 2-마(화학물질)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작업반

라. 제3.16조(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제1항에 따른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마. 제7.21조(상호인정)제6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바. 제9.3조(정부조달 작업반)에 따른 정부조달 작업반, 그리고

사. 제10.25조(지리적 표시 작업반)에 따른 지리적 표시 작업반

2. 무역위원회는 특별 임무 또는 대상을 위한 다른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작업반의 구성, 임무 및 기능을 결정한다. 그 작업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양 당사자 간 모든 정기 또는 임시 회합은 이 조의 의미에서 작업반으로 간주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급에서 회합한다. 작업반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작업반은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의제를 정한다.

4. 작업반은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무역위원회에 알린다. 작업반은 무역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작업반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어떠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무역위원회는 작업반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작업반을 해산할 수 있다.

제 15.4 조 **의사결정**

1.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

2. 취해진 결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양 당사자는 취해진 결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무역위원회는 또한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과 권고를 작성한다.

제 15.5 조 **개정**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15.6 조 접 촉 선

1.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조정자를 지정한다. 조정자의 지정은 이 협정의 특정 장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특정한 지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조정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계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을 제공한다.

3. 자신의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에 대해 자신의 조정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에 관한 다른 쪽 당사자의 질의에 신속히 답변한다.

제 15.7 조 과세

1. 이 협정은 과세조치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이,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과 각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조세 협약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대한민국과 각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조세 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데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자가 각자의 재정법령 관련 조항의 적용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는 납세자를, 특히 납세자의 거주지와 납세자의 자본이 투자된 장소에 대하여, 구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그 밖의 조세 약정 또는 국내 재정법령의 과세 조항에 따라 조세의 방지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의 채택이나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5.8 조

국제수지 예외

1. 당사자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험에 처한 경우 그 당사자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및 설립에 대한 제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제한 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어떠한 제한 조치라도 비차별적이고 그 기간이 제한되며,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이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수립된 조건을 따르고 적용 가능한 대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과 합치된다.

3. 제한 조치 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유지하거나 채택한 당사자는 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그 제거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한다.

4. 제한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협의가 신속히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는 관련 당사자의 국제수지 상황과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을 특히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가.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의 성격과 범위

나. 대외 경제 및 교역 환경, 또는

다.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정 조치

협이는 제한 조치가 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다룬다. 환율, 통화 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되는 국제통화기금(이하 “국제통화기금”이라 한다)이 제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는 수용되어야 하고, 결론은 관련 당사자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근거한다.

제 15.9 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정보를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생산이나 거래와 관계되거나 군사 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는 조치
-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 3)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자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목적을 위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 15.10 조

발효

1. 이 협정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해 승인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3.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언급된 통보의 교환 전에 2005년 10월 20일 파리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의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협약의 비준서를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기탁한 날의 다음 세 번째 달 첫째일부터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적용한다.

4. 통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과 유럽연합 이사회 사

무충장에게 송부된다.

5. 가.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가 그들 각각의 관련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달 첫째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나.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잠정 적용을 할 수 없는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잠정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통보한다. 가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어느 규정이 잠정 적용될 수 없다는 통보로부터 10일 이내에 잠정적용에 반대하지 아니 할 경우, 통보되지 아니한 이 협정의 규정은 통보의 다음달 첫째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보로 잠정 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보의 다음달 첫째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라.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라는 용어는 잠정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15.11 조 존속기간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5.12 조

의무이행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상의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 또는 특정 조치를 한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이 협정의 폐기의 경우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5.13 조

부속서·부록·의정서 및 주석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5.1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및/또는 유럽공동체 및/또는 유럽연합 간의 이전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해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기본협정이 규율하는 전반적인 양자관계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이 협정은 기본협정의 의미에서 무역 규정에 효과를 부여하는 특정 협정을 구성한다.

3.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는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세관 협정을 대체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 15.15 조 영역적 적용

1. 이 협정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적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그 조약들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이 협정에서 “영역”이라는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다.

2. 상품의 관세 대우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한, 이 협정은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유럽연합 관세영역지역에도 적용된다.

제 15.16 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부속서 15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목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제2부	‘원산지 제품’의 정의
제2조	원산지 제품
제3조	원산지 누적
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7조	원산지 자격 단위
제8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9조	세트상품
제10조	중립재
제11조	재료 구분 회계
제3부	영역 요건
제12조	영역 원칙
제13조	직접 운송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4부 환급 또는 면제

제14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제5부 원산지 증명

제15조 일반 요건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제17조 인증수출자

제18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제19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제20조 분할 수입

제21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제22조 증빙 서류

제23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제25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제6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26조 주소의 교환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제28조 분쟁해결

제29조 벌칙

제30조 자유지역

제 3 절

세우타 및 멜리야

제7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제32조 특별 조건

제 4 절

최종규정

제8부 최종규정

제33조 의정서의 개정

제3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부속서 목록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공동 선언

안도라공국에 관한 공동선언

산마리노공화국에 관한 공동선언

이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규정

제 1 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 나. **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 다. **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 라. **상품**이란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마.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바.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 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 아.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사호에 정의

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 자. **류, 호 및 소호**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 차. **분류된**이란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 타. **HS**란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제로 그 일반해석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제 2 부

‘원산지 제품’의 정의

제 2 조

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제 3 조 원산지 누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1. 제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 나. 당사자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 다.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당사자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 마. 1) 당사자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뚝사냥, 또는 당사자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 2) 당사자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 제품
- 바. 당사자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 사.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 아. 당사자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자.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차. 당사자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는

카.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 내에서 생산된 제품

2. 제1항 바호 및 사호에서 ‘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제 5 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6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

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질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세분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더. 동물의 도살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나. 탁송화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제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제 9 조 세트상품

HS 통칙 3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모든 구성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고 세트와 그 제품 모두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

지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10 조 중 립 재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재료 구분 회계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2.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이 관세당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승인의 이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 3 부 영역 요건

제 12 조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이 조의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일정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에 따라 양 당사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3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4 부

환급 또는 면제

제 14 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1.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발효 1년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운영에 관해 이용 가능한 정보와 다음과 같은 상세한 통계를 상호적으로 교환한다.

1.1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를 시작으로 HS 2007 하의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분류된 재료의 수입에 대한 8단위/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 통계와,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수출 통계가 제공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계는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제공된다. 이 조의 제3항을 근거로 도입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제한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 정보가 교환된다.

2.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 협정의 발효 이후의 원자재 조달 방식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에 대한 가능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1 위에 언급된 조건은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다음의 증거를 근거로 입증될 것이다.

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당사자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재료의 관세부과대상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하는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 다만,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특히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그 당사자의 제품의 국내소비의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 외의 제품에 수입된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또는
-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그 당사자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나.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그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로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생산자에 대한 경쟁의 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련된 증거도 고려된다.¹⁾

3.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제14장(분쟁해결) 제14.5조(중재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의해 긴급사건²⁾으로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패널이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

1) 이 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평가하는 목적상, 기준년도는 이 협정의 발효 직전 최근 3년의 평균일 것이며, 각 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 연도이다. 증거는 해당 제품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로 사용된 모든 재료의 총합이나 그러한 재료의 하부집합에 근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관세 환급과 역내 가공에 대한 제한은 그 하부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기 전에는 제2항에 예견된 협의 외의 어떠한 추가 협의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예견된 협의의 기한은 제14.3조제4항의 기한과 같다.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 위한 기한은 제14.7조제2항에 적시되어 있다.

당사자는 관정으로부터 통상적으로 90일 이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환급될 수 있는 그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최대 관세율을 5퍼센트로 제한한다.

제 5 부 원산지 증명

제 15 조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 16 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 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 17 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 18 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외에 서류의 제출이 늦은 경우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제품이 제시된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수리할 수 있다.

제 19 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 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분할 수입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HS 통칙 2(a)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제 21 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4. 제3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미화 외의 통화로 제품에 대한 송품장이 발부될 경우, 유로화 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자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수입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현재 환율에 따라 정해진다.

제 22 조

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또는
-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제 23 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3.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신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4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25 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1.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외의 통화로 송품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한민국에 제출된다.

2. 탁송화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가 정한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3.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당 국가통화로 사용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

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당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이 금액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환산된 금액과 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3항에 규정된 연례 조정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으로 15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국통화를 환산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의 가치 감소를 유발할 경우 자국통화 상당액은 환산되지 아니한 채 유지될 수 있다.

5.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검토가 수행될 때, 관세위원회는 실질 가격으로 관련 한도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위원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수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 26 조

주소의 교환

양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유럽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담당하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제 27 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제 28 조

분쟁해결

1.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2.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제 29 조

벌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제 30 조

자유지역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 하에 교역되는 제품으로서 운송 도중 자신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1항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예외로,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원산지 증명 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취급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 그 행해진 취급 또는 가공이 이 의정서의 규정과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될 수 있다.

제 3 절

세우타 및 멜리야

제 7 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 31 조

의정서의 적용

1. “유럽연합 당사자” 용어는 세우타 및 멜리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세우타 및 멜리야로 수입된 경우, *스페인왕국과 포르투갈공화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법률의 의정서 2에 따라*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관세 체제를 향유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며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로부터 수입되었고 이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관세 체제를 부여한다.

3.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할 목 적상, 이 의정서는 제32조에 규정된 특별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 32 조 특별 조건

1. 제품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운송된 경우 다음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

- 1)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 2) 1)목에 언급된 것 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 가) 그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것, 또는
 - 나) 그 제품이 당사자를 원산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나.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 1) 대한민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 2) 1)목에 언급된 것 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대한민국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 가) 그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것, 또는

나) 그 제품이 세우타 및 멜리야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세우타 및 멜리야는 단일 영역으로 간주된다.

3. 수출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대한민국” 또는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 신고서에 기입한다.

4. 스페인 관세당국은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의 이 의정서의 적용을 담당한다.

제 4 절 최종규정

제 8 부 최종규정

제 33 조 의정서의 개정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4 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이 의정서 제5조의 의미에서 모든 제품이 충분히 작업되거나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요구된 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2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제품을 기술한다. 제1열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사용된 소호 번호, 호 번호 또는 류 번호를 제시하고 제2열은 그 소호, 호 또는 류에 대하여 그 체계에서 사용된 상품명을 제시한다. 처음 두 열의 각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3열 또는 제4열에 명시된다. 일부 사례에서,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되는 경우, 이는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에서 기술된 그 소호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여러 개의 소호 또는 호 번호가 제1열에 함께 그룹화되거나 류 번호가 제시되어, 제2열의 상품명에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에서 류의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되거나 제1열에서 함께 그룹화된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2.3. 하나의 소호 또는 호 내의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목록에 있는 경우, 각각의 들여쓰기 한 곳은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호 또는 호의 그 일부에 대한 상품명에 포함한다.

2.4.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과 제4열 모두에 명시되는 경우, 수출자는 제3열에 명시된 규정 또는 제4열에 명시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열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석 3

3.1.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제5조의 규정은, 이 원산지 지위가 이들 제품이 사용된 공장안에서 또는 당사자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예:

결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적시하는 제8407호의 엔진은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 제7205호 또는 제7224.10소호의 재료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재료가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비원산지 괴로부터 가공되었을 경우, 그 재료는 목록의 제7224.90소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 재료는 엔진의 가치 산정시, 그 재료가 동일한 공장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 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합산할 때 비원산지 괴의 가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2. 목록의 규정은 요구된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의 양을 나타내며, 더 많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또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더 적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이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의 특정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생산의 더 이전 단계에 허용되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더 늦은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주석3.2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들)의 재료가(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호의 재료까지도) 사용될 수 있다. 단, 그 어떠한 특정 제한이라도 그 규정에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2열에 제시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의 것을 제외한 모든 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모든 재료가 사용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제5208호에서 제5212호까지의 식물에 대한 규정은 천연섬유가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재료 중에서 화학재료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두 가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나 나머지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3.5.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식물에 관한 아래 주석 6.2 참조).

예:

곡물과 그 파생품의 사용을 명확히 배제하는 제1904호의 조제식품에 대한 규정은 곡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아닌 천연소금,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목록에 명시된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생산 단계에서 동일한 성격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ex 제62류 중 부직포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의류 물품의 경우, 오직 비원산지 사만의 사용이 이런 종류의 물품에 허용되는 경우, 부직포 옷감이 통상적으로 사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부직포 옷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 시작하는 재료는 통상적으로 사 이전의 단계인 섬유 단계이다.

3.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두 개의 비율이 제시되는 경우, 이들 비율은 합산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는 제시된 비율 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개별 비율은 그 개별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에 대하여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석 4:

4.1.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 섬유 외의 섬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는 웨이스트를 포함하여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를 포함한다.

4.2.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제0503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및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그리고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

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4.3. “방직용 펄프”, “화학 재료” 및 “제지 원료”라는 용어는 재생이나 반합성,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기술하기 위해 목록에서 사용된다.

4.4. “인조스테이플섬유”라는 용어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지칭할 때 목록에서 사용된다.

주석 5:

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3열에 규정된 조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 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 재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아래의 주석 5.3 및 5.4도 참조).

5.2. 그러나, 주석 5.1에 언급된 최소허용치는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 재료이다.

- 견
- 양모
- 조수모
- 섬수모
- 마모
- 면
- 제지 원료 및 종이
- 아마

- 대마
-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 사이잘삼 및 기타 아게부류의 방직용 섬유
-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합성 인조 필라멘트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 전도성 필라멘트
-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
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
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 제5605호의 기타 제품

예/:

제5203호의 면섬유 및 제5506호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제5205호의 사는 혼방사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합성 스테이플 섬유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총중량이 사의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5107호의 양모사와 제5509호의 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제

5112호의 모직물은 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성사 또는 원산지 규정(카드 또는 코움을 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방적처리를 위해 준비되지 아니한 천연섬유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양모사 또는 그 둘의 결합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총중량이 직물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5205호의 면사와 제5210호의 면직물로부터 만들어진 제5802호의 터후트직물은 면직물 그 자체가 두 개의 별도의 호에 분류된 사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직물이거나 사용된 면사 자체가 혼방인 경우에만 혼방 제품이다.

예:

해당 터후트직물이 제5205호의 면사 및 제5407호의 합성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경우, 사용된 사는 명백히 두 개의 별도의 기초 방직 재료이고 따라서 터후트직물은 그 자체로 혼방 제품이다.

5.3.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허용치는 이 사에 대해 20퍼센트이다.

5.4.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최소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 퍼센트이다.

주석 6: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목록의 제3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안감과 심감은 예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2. 주석 6.3을 저해함이 없이,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 제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예:

목록의 규정이 특정 직물물품(바지와 같은)에 대해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단추와 같은 금속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단추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는 지퍼가 통상적으로 직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는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HS	상품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제 1 류	산 동물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 3 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 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은 제외)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제 5 류	다른 류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제7류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8류	식용의 과일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사용된 제8류의 모든 과일 및 견과류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ex 제9류 0901 ex 0902 0902.10 0910.91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다음을 제외함.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녹차(발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혼합 향신료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0류	곡 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1류 1106.10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다음을 제외함.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분·조분과 분말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그리고 제2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의 종자와 과일,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301 ex 1302 1302.19	락과 천연검, 수지, 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발삼)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업과 펙틴산업,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중의 기타	사용된 제1301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211.20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1302.31 1302.32, 및 1302.39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의 돼지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0207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으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0506호의 뼈는 사용될 수 없음.	
1502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료와 제0506호의 뼈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7부터 ex1515까지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509 및 1510	올리브 기름과 그 분획물, 오로지 올리브로부터만 획득한 그 밖의 기름과 그 분획물	사용된 모든 식물성 기름의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2류의 것은 제외	

(1)	(2)	(3)	(4) 또는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러나, 제1507호, 제1508호, 제1511호 및 제1513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와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러나 제1507호와 제1508호, 제1511호 및 제1513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제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류의 동물로부터의 생산, 그리고/ 또는 -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701.9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이며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4) 또는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 꿀(천연꿀을 혼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및 과당 - 기타의 당류(고체상태인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기타	제1702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ex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 시에 생긴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4) 또는
1901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은 완전 획득되는 생산(다만, 듀럼밀과 그 부산물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2류와 제3류의 모든 재료가 그 제품 중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ex 1902.19	국수(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속을 채우지 않은, 분으로부터 획득된 것을 말한다. 듀럼밀 새물리나의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1902.30	라면(인스턴트 국수, 열을 가하거나 튀겨 조리되고, 고추분말과 소금, 마늘향의 분말과 양념 베이스를 포함한 혼합조미료와 함께 포장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4) 또는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프레이크상, 낱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08호의 감자전분은 제외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 식품류(예: 콘플레이크)와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은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806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과 분말(다만, 듀럼밀과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1905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류의 것은 제외	
ex 1905.90	미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20류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7류와 제8류 및 제12류의 모든 과일, 견과류, 채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006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과일, 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2007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과실 또는 견과류의 푸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008.11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중의 낙화생		
2008.19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중의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008.91 2008.92 및 2008.99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중의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ex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다음을 제외함.		

(1)	(2)	(3) 또는 (4)	
2103.30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103.90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104.10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용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002부터 제2005호까지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류는 제외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	(2)	(3) 또는 (4)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 주스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함. 다만,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211.20호와 제1302.19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207호 또는 제2208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증류주, 리큐르 그 밖의 주정음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207호 또는 제2208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ex 제23류 ex 2301 2303.10 2306.90 2309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다음을 제외함. 고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정한다)의 기타 사료용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제2류와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옥수수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올리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4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7류의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1)	(2)	(3) 또는 (4)	
ex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켈런(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와 담배부산물물의 중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산지재료인 생산	
2403.10	흡연용 담배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물의 중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산지재료인 생산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와 시멘트.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2504.10	천연흑연(분상 또는 플레이크상인 것에 한정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5.12	대리석, 트레버틴,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6.12	화강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8.2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2519	파쇄된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완전밀폐용기에 담긴 것에 한정한다)과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를 불문한다)을 포함하고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를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는 사용될 수 있음.	
ex 2520.20	플라스터(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된 것에 한정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2525.20	운모분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의 분쇄	
ex 2530.90	어드칼라(하소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에 한정한다)	어드칼라의 하소 또는 분쇄	

(1)	(2)	(3) 또는 (4)	
제26류	광, 슬랙 및 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8류	무기화합품 및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29류	유기화합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2905.19	메탈알코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올의 것)	제2905호의 다른 재료들을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이 호의 메탈 알코올레이트의 총 가치가 이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4) 또는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15호와 제2916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2932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황산화유도체 및 질산염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환식아세탈과 내연헤미아세탈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황산화유도체 및 질산염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09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2933	질소테로고리 화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32호와 제2933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32호와 제2933호 및 제 2934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ex 제30류 3001 3002 3006.91	의료용품. 다음을 제외함.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기관(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를 불문한다)기타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인혈, 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 (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장투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1류	비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ex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 그 밖의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다음을 제외함. - 질산나트륨 - 칼슘시아나미드 - 황산칼륨 - 황산마그네슘칼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 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201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205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³⁾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203호, 제3204호 및 제3205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3205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206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 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 제32류에 관한 주해3은 이러한 조제품이, 제32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다른 재료의 안료로 쓰이거나 안료 조제품 생산의 원료로 쓰이는 종류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1)	(2)	(3) 또는 (4)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앵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 불휘발성유,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이 호의 다른 "군"4)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품과 같은 "군"의 재료는 그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4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조제윤활제, 인조왁스, 조제왁스, 광택 또는 연마조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 치과용왁스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분탄왁스, 비늘왁스를 기제로 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ex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4) "군"은 세미콜론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호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1)	(2)	(3)	(4) 또는
3505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 전분(예:프리젤라티나 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 텍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 전분 에테르 및 에스테르 - 기타	제3505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08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507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팩으로 된, 천연색 사진용의 것) -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와 제3702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3702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와 제3702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3701호와 제3702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와 제3702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704	사진플레이트, 필름, 인화지,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ex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803.00	정제한 톨올오일	조상 톨올 오일의 정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805.10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황산테레빈유의 증류 또는 정제에 의한 정화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6.30	에스테르검	수지산업으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8	살충제, 살서제(취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 제제, 식물성장조절제소 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 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 지, 양초 및 파리잡이 끈 끈이)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9	완성가공제, 염색촉진 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 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 는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불임·멤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불임·멤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1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3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 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9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2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821.00	미생물용(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 인간, 동물 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22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에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콜		
3823.11 부터 3823.19 까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시 생긴 에시드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콜	제3823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901부터 3921까지	플라스틱(일차제품, 웨이스트, 페어링인 것에 한한다)과 플라스틱 부스러기, 플라스틱 반제품과 물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907.30 및 3907.40	에폭시수지 및 폴리카보네이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907.20 및 3907.91	기타 폴리에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922부터 3926까지	플라스틱 물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 고무(일차제품, 판,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천연 고무는 제외)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재생품 및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타이 어트래드 및 타이어플 랩		
ex 4012.11, ex 4012.12, ex 4012.13 및 ex 4012.19	- 재생 고무 타이어(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에 한한다) - 기타	중고타이어의 재생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011호, 제 4012호의 것은 제외	
ex 4017	경질고무 제품	경질고무로부터의 생산	
ex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4102.21 및 4102.29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 피(탈모한 것에 한한다)	탈모하지 않은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로부터 모를 제거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www.parlament.gv.at

(1)	(2)	(3)	(4) 또는
4403	원목[꺾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조겐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ex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 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합판용 단판 (길이의 방향으로 틀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 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 가공, 홈가공, 은축이음 가공, 경사이음가공, 브이형이음가공, 구슬형 가공, 주형가공,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연마, 엔드-조인트한 것인지를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또는 (4)	
ex 4410 부터 ex 4413 까지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구슬형가공된 스킨 및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	
ex 4415.10	목재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않은 보드로부터의 생산	
ex 4416.00	목재의 통, 배럴, 배트, 텀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조각 막대로부터의 생산 (양쪽 주 표면에 톱질 이상의 가공이 안 된 것에 한한다)	
ex 4418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셀룰라우드패널과 지붕 이 판자는 사용될 수 있음.	
ex 4421.90	-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가공품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 못 또는 핀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 모든 호의 나무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409호의 인발한 나무는 제외	
ex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제4501호의 코르크로부터의 생산	
제46류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ex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 (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셋플레이트 (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47류의 제지원료로부터의 생산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 봉합엽서, 우편엽서, 통신훈 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 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4818.10	화장지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의 생산	
ex 4820.10	편지지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49류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 문서, 타이프문서 및 도면.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4909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전언용,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 봉투,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909호와 제4911호의 것은 제외	
ex 제50류	견.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4) 또는
ex 5003	카드 또는 코옴한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 고치, 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견웨이스트의 카드 또는 코옴	
5004 부터 ex 5006까지	견사, 견방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⁵⁾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옴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옴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 주석⁵⁾를 참조

(1)	(2)	(3) 또는 (4)	
5007	견 직물(견 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⁶⁾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⁷⁾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51류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106부터 5110까지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 모사 또는 마모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⁸⁾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⁵를 참조

(1)	(2)	(3) 또는 (4)	
5111부터 5113까지	식물(양모, 섬수모, 조수모 또는 마모)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⁹⁾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옴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52류	면.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204부터 5207까지	면의 사 또는 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¹⁾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 의 방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1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4) 또는
5208부터 5212까지	면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 ¹²⁾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¹³⁾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 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 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 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 투·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 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 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306부터 5308까지	기타 식물성 섬유사 및 지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⁴⁾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1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309부터 5311까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¹⁵⁾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⁶⁾ - 코이어사 - 황마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웁 또는 그 밖의 방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401부터 5406까지	사 및 모노필라멘트와 인조필라멘트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⁷⁾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 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1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4) 또는
5407 및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¹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⁹⁾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501부터 5507 까지	인조 스테이플사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	
5508부터 5511까지	인조 스테이플 섬유사와 재봉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⁰⁾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2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4) 또는
5512부터 5516까지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²¹⁾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²⁾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 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 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칩 투, 수선 및 벨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 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ex 제56류 5602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펠트(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니들룸펠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³⁾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⁴⁾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섬유나 필라멘트가 9데시텍스 이하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604	- 기타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 한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⁵⁾ - 천연섬유 -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 스테이플섬유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5604.10	-고무사와 코오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고무사와 코오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하지 않은 것)로부터의 생산	
5604.90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⁶⁾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2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605	금속드리사(짐프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 스트립, 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만 해당한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⁷⁾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606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⁸⁾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2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 - 니들룸펠트의 것 - 기타 펠트의 것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⁹⁾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 또는 섬유가 9데시텍스 이하인 모든 종류는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³⁰⁾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³¹⁾ -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 천연섬유, 또는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2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ex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 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다음을 제외함.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³²⁾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³³⁾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칩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5805	고우벌린직, 플란더스직, 오버션직,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 트리(예:퍼티포인트, 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 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³²⁾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³³⁾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810	사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겜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사로부터의 생산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만 해당한다)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이하를 함유 - 기타	사로부터의 생산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	
5903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 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갈래(특정한 형상 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로부터의 생산 ³⁴⁾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 복재 -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침투, 도 포, 피복 또는 적층 - 기타	사로부터의 생산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³⁵⁾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 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 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 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 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47.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³⁴⁾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⁵를 참조

³⁵⁾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를 참조

(1)	(2)	(3)	또는 (4)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 퍼센트 이상을 함유한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기타 직물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³⁶⁾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화학재료로부터의 생산 사로부터의 생산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³⁶⁾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한다.

(1)	(2)	(3)	또는 (4)
5908 5909부터 5911까지	램프용, 스토브용, 라이터용, 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십지 (직조, 편조 또는 편직 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 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 여부를 불문한다) -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 기타 섬유제품(공업용에 적합한 종류의 것) -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펠트된 것과 아닌 것을 포함하며 침투 또는 도포여부를 불문하고, 단일 또는 복합 경편직 및/또는 웨프트를 자장한 관형 또는 순환형, 또는 제5911호의 복수의 경사 및/또는 웨프트를 자장한 평 직물에 한한다)	가스 맨틀용 관상편물로 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물 또는 엉마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로부터의 생산³⁷⁾ - 다음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 에틸렌의 사³⁸⁾ --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복합사에 한한다) --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메타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축합중합에 의해 획득된 것에 한한다)	

3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8)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1)	(2)	(3)	또는 (4)
	- 기타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모노필³⁹⁾ -- 합성방직섬유제의 사 [폴리(파라-페닐렌 테레프탈아마이드)의 것에 한한다] -- 유리 섬유제의 사(페놀 수지로 도포된 것과 아크릴사로 집프된 것에 한한다)⁴⁰⁾ -- 폴리에스테르 코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와 테레프탈산, 1,4-시클로헥산디탄올산 및 이소프탈산의 수지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제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⁴¹⁾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제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39)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40)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4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⁵를 참조

(1)	(2)	(3)	또는 (4)
제60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⁴²⁾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뜨개질(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동반하는 천연스테이플사 및/또는 인조스테이플사의 방적⁴³⁾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압출 또는 절단을 포함한 편직 및 제조(형성을 위해 절단되었거나 형성을 위해 직접 획득된 편직 또는 크로셋 직물 두 조각 이상의 조립)⁴⁴⁾⁴⁵⁾	

4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43) 소개주석5를 참조

44) 소개주석5를 참조

45) 소개주석6을 참조

(1)	(2)	(3)	또는 (4)
ex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⁴⁶⁾⁴⁷⁾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자수.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⁴⁸⁾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도포.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⁴⁹⁾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며 구성보다 선행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⁵⁰⁾⁵¹⁾	

46) 소개주석5를 참조

47) 소개주석6을 참조

48) 소개주석6을 참조

49) 소개주석6을 참조

5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51) 소개주석6을 참조

(1)	(2)	(3)	또는 (4)
ex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칼라, 커프스 및 컷아웃의 심감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63류 6301부터 6304까지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냅마. 다음을 제외함.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및 베드린넨 등, 커튼 등, 기타 가구제품 -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기타 -- 자수한 것 --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⁵²⁾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표백하지 않은 단사⁵³⁾⁵⁴⁾로부터의 생산, 또는 - 지수되지 않은 식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⁵⁵⁾⁵⁶⁾	

5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를 참조

53) 소개주석 6을 참조

54)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 6을 참고

55) 소개주석 6을 참조

56)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 6을 참고

(1)	(2)	(3)	또는 (4)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⁵⁷⁾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6306	타포린, 천막, 차양, 텐트, 돛 및 캠프용품 - 비직조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⁵⁸⁾⁵⁹⁾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6307	- 기타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 ⁶⁰⁾⁶¹⁾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6308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그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그러나, 비원산지 물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은 세트에 사용될 수 있음.	
ex 제64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착된 갑피의 조립으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5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5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59) 소개주석6을 참조

6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61) 소개주석6을 참조

(1)	(2)	(3)	또는 (4)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65류 6505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은 제외한다)의 레이스, 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만 해당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 또는 방직 섬유로부터의 생산 ⁶²⁾	
ex 제 66 류 6601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67 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구제품, 조화, 인모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 68 류 ex 6803.00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슬레이트 또는 집적된 슬레이트의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가공된 슬레이트로부터의 생산	

⁶²⁾ 소개주석 6을 참조

(1)	(2)	(3)	또는 (4)
ex 6812	석면 제품, 석면을 기재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재로 한 혼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6814	운모 제품(지,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된 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한다)	가공된 운모로부터의 생산(응결 또는 재생된 운모를 포함한다)	
제 69 류	도자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7006	제7003호, 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절연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SEMII 기준 ⁶³⁾ 에 따른 반도체 등급의 유리판 토대 -기타	제7006호의 코팅되지 않은 유리판 토대로부터의 생산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008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63) SEMII: 반도체장비재료협회

(1)	(2)	(3)	또는 (4)
7010	유리제의 카보이, 병 플라스크, 단지항아리, 약병, 앰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 뚜껑 및 기타 마개류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자르지 않은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7013	유리제품(식탁용, 주방용, 화장실, 사무용, 실내 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자르지 않은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또는 손으로 붙어서 만든 유리제품의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프린팅 제외), 사용된 손으로 붙어서 만든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ex 7019	유리섬유(단사 제외) 제품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채색하지 않은 슬라이버, 로빙, 실, 단연사 또는 - 글라스 울	
ex 제 71 류 7101 7102, 7103 및 7104 7106, 7108 및 7110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 변장식용품과 주화. 다음을 제외함.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꿰뚫,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꿰뚫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기타 귀석 및 반귀석 (천연, 합성 또는 재생된 것) 귀금속 - 가공하지 아니한 것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의 생산,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7106, 7108 호 및 제7110호의 것은 제외 또는 제7106, 7108 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 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가공하지 아니한 귀금속으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7107, 7109 및 7111	귀금속을 입힌 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않은 비금속 부분품으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72 류	철강.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7207	철 및 비합금 강철의 반제품	제7201, 7202, 7203, 7204, 7205호 또는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208부터 7216까지	철 및 비합금 강철의 평판압연 제품, 바 및 대, 봉, 형재 및 조각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7217	철 및 비합금 강철의 선	제7207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7218.91 및 7218.99	반제품	제7201, 7202, 7203, 7204호 또는 7205호 또는 제7218.10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219부터 7222까지	스테인리스 강철의 평판압연 제품, 바 및 대, 봉, 형재 및 조각	제7218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재료로부터의 생산	
7223	스테인리스 강철의 선	제7218호의 반제품재료로부터의 생산	
7224.90	반제품	제7201, 7202, 7203, 7204, 7205호 또는 제7224.10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또는 (4)
7225 부터 7228까지	비규칙적으로 감긴 고 리형태의 평판압 제품, 열압 바 및 대 기타 합 금 강철의 봉, 형재 및 조각 강철의 합금 또는 비합금 공동 드릴 바 및 대	제7206, 7207, 7218호 또 는 제7224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재 료로부터의 생산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제7224호 반제품 재료로 부터의 생산	
ex 제 73 류	철강의 제품. 다음을 제 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301.10	강시판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 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궤조, 책궤조와 치형궤 조, 침단궤조, 교차구 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 싱피스, 침목(크로스타 이), 계목판, 좌철, 좌 철썰기, 저판(베이스플 레이트), 궤조클립, 노 반, 격재 및 궤조의 접 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 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 다]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304, 7305 및 7306	철강제(주철제를 제외 한다)의 관과 중공프로 파일	제7206, 7207, 7218호 또 는 제7224호의 재료로부 터의 생산	
7307.21 부터 7307.29까지	스테인리스 강철의 관 연결구류	단조 반가공품의 터닝, 드 릴링, 리밍, 나선가공, 데 버링 및 모래 분사 다만, 사용된 버린 반가공 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7308	철강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물은 제외한다) 및 구조물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자주, 지붕, 지붕 틀, 문과 창 및 이들의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7301호의 용접된 형재는 사용될 수 없음.	
7315.20	스키드 체인	사용된 제 7315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74 류 7403.21, 7403.22 및 7403.29 7407 7408	동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동 합금 동의 봉과 프로파일 동의 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7409	동의 판, 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료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7411	동제의 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7601	알루미늄의 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열 또는 전해처리에 의한 생산	

(1)	(2)	(3)	또는 (4)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7605	알루미늄의 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7606	알루미늄 판, 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7607	알루미늄 박 [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와 제7606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7608	알루미늄 튜브 및 파이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7609	알루미늄제의 관연결 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7619.99	알루미늄제의 기타제 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제 77 류	HS에서 미래의 사용에 대비하여 확보되었음.		
ex 제 78 류	연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801	연의 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7802호의 웨이 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수 없음.	
ex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901	아연의 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7902호의 웨이스트나 스 크랩은 사용될 수 없음.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8206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그러나,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도구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도구는 세트에 포함될 수 있음.	
8207.13부터 8207.30까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프레스, 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8207.40부터 8207.90까지	탭핑, 드레딩용 공구 드릴링(착암용 제외)용 공구 보링 또는 브로칭용 공구 밀링용 공구 터닝용 공구 기타 호환성공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211.10 부터 8211.93 까지 및 8211.95	톱니 모양 불문의 칼과 절단용 칼날(전지용 칼을 포함한다)(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비금속의 칼날 및 손잡이는 이용될 수 있음.	
8214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조발기, 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 초퍼 및 민싱용 칼, 종이용 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비금속의 손잡이는 이용될 수 있음.	

(1)	(2)	(3)	또는 (4)
8215	스푼, 포크, 국자, 스키머, 케이크서버, 생선용 칼, 버터용 칼, 각설탕 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비금속의 손잡이는 이용될 수 있음.	
ex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302. 41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작구, 부작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8302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8302. 60	자동 도어 폐지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8302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8306. 21 부터 8306. 29까지	비금속제의 작은 조상 및 기타 장식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8306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ex 제 84 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04	제8402 또는 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5	폴리테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6	선박의 데릭 및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7	포크리프트 트럭, 기타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8	기타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텔레페릭)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29	자주식의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레벨러, 스크레이퍼, 메카니컬셔블, 엑스커베이터, 셔블로더,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0	기타의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핑, 콤팩팅,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만 해당한다), 향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라이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2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와 잔디 또는 운동장 롤러(토양 준비 또는 경작용의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3	수확기 또는 탈곡기(질 또는 결소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조란, 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44	인조섬유의 방사, 연신, 텍스처 도는 절단용의 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5	방직준비기계, 방적기, 합사기, 연사기와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6	직기(직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7	편물 기계, 스티치 본딩 집프사, 툴, 레이스, 자수, 트리밍, 끈끈 또는 네트 생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56	각종재료의 가공공작 기계(레이저는 기타 광선, 광자빔,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57	금속 가공용의 머시닝 센터, 유닛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만 해당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자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 보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 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0	디버링, 샤프닝, 그라인딩, 호닝, 래핑,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연마재, 고아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 (제8461호의 기어절삭기,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 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1	플레이닝용, 웨이핑용, 슬로팅용, 부로치용, 기어절삭기용, 기어연삭용, 기어완성가공용, 튜질용, 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2	단조, 해머링, 다이시스템 평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굽힘, 접음, 교정, 펼침, 전단, 편칭, 낮침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3	재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4	석, 도자기, 콘크리트, 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 기계와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65	목재, 코르크, 뼈, 경질 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 물의 가공기계(네일용, 스테이플용, 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6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가공물 홀더, 틀홀더,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틀홀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7	수지식 공구(압축 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장착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장착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9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 기계 (제8443호의 프린터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74	선별기, 기계식체, 부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연료, 세라믹페이스트, 굳지 아니한 시멘트, 석고,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만 해당한다) 및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은 제외한다), 금속 탄화물, 유리, 광물성물질,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4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예:정류기)와 유도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의 척, 크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 헤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8	진공청소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만 해당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11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자석발전기, 점화 코일, 점화플러그, 예열 플러그, 시동전동기)내연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 발전기,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2	전기식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 (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윈드스크린 와이퍼, 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과 자동차용의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5	전기식 (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 및 광자빔식, 초음파식, 전자빔식, 자기 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 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 드라이어와 헤어컬러, 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 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열 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단, 제 854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1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비디오 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3	디스크, 테이프,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 스마트 카드와 음성 및 기타 현상의 기록용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메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 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5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 기기(수신기거나 음성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6	레이더기기, 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 원격조절기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7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8	텔레비전 수신 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29	부분품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0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 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 (예: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와 제8532호의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퓨즈, 서지억제기,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 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와 광섬유, 광섬유다발 또는 케이블 용의 커넥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8	부분품(제8535호,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 유닛과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0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벨브와 튜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42.31 부터 8542.33까지 및 8542.39	모노리식 집적 회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알맞은 도펀트의 선택적인 주입에 의하여 반도체 기판에 집적회로를 형성하는 확산공정(비당사국에서의 조립 및/또는 테스트 여부 불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만 해당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5	탄소전극, 탄소브러쉬, 램프용 탄소, 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호의 전기절연체를 제외한다)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판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낸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601.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철도용 기관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603.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및 화차 (제8604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608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 안전, 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701부터 8707까지 및 8712 8708부터 8711까지 및 8713부터 8716까지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차체 및 제8701호에서 제8705호까지의 차량을 위한 엔진을 갖춘 새시, 자전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및 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 모터싸이클, 작업차 및 이들의 부분품, 유모차와 그 부분품,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및 이들의 부분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ex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8804. 00	로토슈트	제8804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8906호의 선체는 사용될 수 없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0 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01	광섬유, 광섬유다발, 제 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 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 프리즘, 반사경과 기타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 기기의 부분품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만 해당하며,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12	광학현미경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레이저 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2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22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을 불문하고 알파, 베타 또는 감마방사능을 사용하는 기기. 방사선사진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포함한다. 엑스선관과 기타 엑스선 발생기, 고압발생기, 제어패널, 책상, 스크린, 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27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 점도, 프로서티팽창, 표면 장력 등의 측정 도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 소리,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톱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030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의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및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와 운곽투영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05	기타의 클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만 해당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및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위의 제한 내에서, 사용된 제9114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113 ex 9113 .10 및 9113. 20	휴대용시계줄, 휴대용 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귀금속을 입힌 금속 또는 비(卑)금속제 (금 또는 은을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92 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93 류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4 류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406	조립식 건축물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5 류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9503	기타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9506.31 및 9506.39	골프채와 기타 골프 용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한 일차 성형된 반제품은 사용될 수 있음.	
ex 제 96 류	잡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9601 및 9602	가공한 아이보리, 뼈, 귀갑, 뿔, 사슴뿔, 산호, 자개와 기타 동물성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을 포함한다)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 스테아린, 천연수지 또는 모델링 페이스트제의 것만 해당한다)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 (제 3503호 젤라틴은 제외한다), 비경화젤라틴 재료의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9603	비, 브러쉬(마당비와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와 다람쥐 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모프와 깃 먼지떨이,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 바느질용,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될 규정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비원산지 물품이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은 결합될 수 있음.	
9606	단추, 프레스파스너,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스틸로그래프 펜과 기타의 펜, 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 펜슬홀더, 유사한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캡과 크립을 포함하여 제9609호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사용 될 수 있음.	
9612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 (잉크가 침투되어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폴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9613. 20	포켓형 라이터 (가스 주입식의 것으로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9613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9614	깍연용 파이프와 파이프 볼	일차 성형된 반제품으로부터의 생산	
제 97 류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공통규정

1. 아래 기술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 부속서 2에 명시된 규정 대신, 연간 쿼터에 의해 제한을 받을지라도, 다음의 규정이 또한 적용될 수 있다.

2. 이 부속서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영어 문구를 포함한다: “예외물량 - 의정서의 부속서 2-가...”.

3. 해당 제품이 예외물량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수출자가 서명한 신고서의 규정에 따른 이들 예외물량에 따라,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수 있다.

4. 원산지 증명이 어묵 조제품(ex 제1604.20호의 일부)에 대한 예외물량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은 어묵 조제품이 그 제품의 중량 당 최소 40퍼센트의 어류로 구성되고, 명태 종이 연육의 주요 원료⁶⁴⁾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된다.

5. 원산지 증명이 염색된 직물(제5408.22호 및 제5408.32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그 원산지 증명은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이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 한다.

6. 이 부속서에 언급된 모든 물량은 유럽연합 당사자에서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⁶⁴⁾ 필요시, 주요원료의 개념은 이 의정서의 제28조에 따라 관세위원회에 의하여 해석된다.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

7. 아래 표에 적시된 쿼터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들 예외물량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출된 물량은 유럽연합 당사자로의 수입을 근거로 산정될 것이다.

HS	상품명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연간 수출쿼터
(1)	(2)	(3)	(4)
ex 1604.20	제품의 중량 당 최소한 40퍼센트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 ⁶⁵⁾	제3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이행 1년차 연간 쿼터: 2,000 메트릭톤 이행 2년차 연간 쿼터: 2,500 메트릭톤 이행 3년차 및 그 이후 연간 쿼터: 3,500 메트릭톤
ex 1905.90	비스킷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연간 270 메트릭톤의 쿼터
2402.20	궐련(담배를 포함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연간 250 메트릭톤의 쿼터
5204	면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86 메트릭톤의 쿼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100분의 8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2,310 메트릭톤의 쿼터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100분의 85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377 메트릭톤의 쿼터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은 해당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92 메트릭톤의 쿼터

65) 특히 공통규정 제4항 참조

5408	인조 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 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표백·머어·서라이징·열처리·기모·캘린더·방축방지가공·영구·마감처리·증기처리·침투·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연간 17,805,290 SME의 쿼터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286 메트릭톤의 쿼터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3,437 메트릭톤의 쿼터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1,718 메트릭톤의 쿼터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203 메트릭톤의 쿼터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²⁾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불가리아어 본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¹⁾)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ъдето ясн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 ⁽²⁾.

스페인어 본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 ...⁽¹⁾)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²⁾.

체코어 본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

⁽¹⁾) prohlašuje, že krom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²⁾.

덴마크어 본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¹⁾),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 ...⁽²⁾.

독일어 본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 ...⁽¹⁾)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erenzbegünstigte ...⁽²⁾ Ursprungswaren sind.

에스토니아어 본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kinnitus nr. ...⁽¹⁾)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²⁾ sooduspäritoluga, vä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그리스어 본

Ο 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 αριθ. ...⁽¹⁾)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ησηακής καταγωγής ...⁽²⁾.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

프랑스어 본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¹⁾)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²⁾.

이탈리아어 본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¹⁾)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²⁾.

라트비아어 본

Eksportētājs produktiem,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pilnvara Nr. ...⁽¹⁾), deklarē, ka, izņ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iekšrocību izcelsme no ...⁽²⁾.

리투아니아어 본

Šiame dokumente išvardin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ės liudijimo Nr. ...⁽¹⁾)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²⁾ preferencinės kilmės prekės.

헝가리어 본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¹⁾) kijelentem, hogy eltérő jelzés hiányában az áruk kedvezményes ...⁽²⁾ származásúak.

몰타어 본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¹⁾) jiddikjara li, hlief fejn indikat b'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gini preferenzjali ...⁽²⁾.

네덜란드어 본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¹⁾),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 oorsprong zijn ⁽²⁾.

폴란드어 본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¹⁾) de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²⁾ preferencyjne pochodzenie.

포르투갈어 본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ção aduaneira n.º ⁽¹⁾),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 ...⁽²⁾.

루마니아어 본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b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ția vamală nr. ...⁽¹⁾) declară că,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țială ...⁽²⁾.

슬로베니아어 본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¹⁾)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²⁾ poreklo.

슬로바키아어 본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¹⁾) vyhlasuje, že okr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²⁾.

핀란드어 본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 ...⁽¹⁾) ilmoittaa, että nämä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ätuotteita ⁽²⁾.

스웨덴어 본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 ...⁽¹⁾)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 ursprung ⁽²⁾.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자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안도라공국에 관한 공동 선언

1. HS의 제25류에서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안도라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 당사자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위에 언급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산마리노공화국에 관한 공동 선언

1.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 당사자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위에 언급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동 선언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고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합의한다. 양 당사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생산 공정, 가격 변동 및 그 밖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 2

는 HS의 정기적인 개정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주해를 수립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주해는 양 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주 해

1. 제1조의 목적상, 생산은 수확, 덧사냥, 생산, 번식 및 분해를 포함한다.
2. 제1조사호의 목적상, **확인 가능한**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을 말한다.
3. 제5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를 포함한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품의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4.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재료의 생산으로 초래된 모든 비용과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추가된 이윤과 동등한 이윤 금액을 포함한다.
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

6. 제10조의 목적상, 중립재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

다. 기계 및 도구, 그리고

라.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니하는 상품

7. 제11조의 목적상,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제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8. 제11조의 목적상, 특정한 “기간”이란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거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가.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원산지 증거가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 증거가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10. 안도라공국에 대한 공동 선언의 목적상, 안도라공국의 관세당국은 안도라공국의 공동 선언의 적용을 담당한다.

11. 산마리노공화국에 대한 공동 선언의 목적상, 이탈리아공화국의 관세당국은 산마리노공화국의 공동 선언의 적용을 담당한다.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 정 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관세 법령**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규율하고, 금지, 제한 및 통제조치를 포함한 그 밖의 세관 체제 또는 절차 하에 상품을 두는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을 말한다.
- 나. **요청 당국**이란 당사자에 의해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되고 이 의정서에 근거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권한 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
- 다. **피요청 당국**이란 당사자에 의해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되고 이 의정서에 근거하여 협조를 요청받는 권한 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
- 라. **개인 자료**란 확인된 또는 확인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 마. **관세 법령 위반행위**란 관세 법령의 모든 위반행위 또는 위반을 시도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양 당사자는 특히 관세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조사 및 방지를 통해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분야에 서 이 의정서에 규정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2. 이 의정서에 규정된 관세 사안에서의 지원은 이 의정서의 적용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의 어떠한 행정당국에도 적용된다. 이는 형사 사

안에서의 상호 지원을 규율하는 규칙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사법 당국의 요청으로 행사된 권한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그러한 정보의 전달이 그 당국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루지 아니한다.

3. 관세, 세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요청에 따른 지원

1.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주목된 또는 계획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세 법령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요청 당국에 제공한다.

2.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요청 당국에 다음을 알린다.

- 가.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제대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 나.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제대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3.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신의 법 또는 규정의 틀 내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한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가.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되어왔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다량의 상품이 조립되어 왔거나 조립될 수 있는 장소
-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수 있는 상품
-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운송 수단

제 4 조 자발적 지원

양 당사자는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획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체 발의로 그리고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 가.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행위이면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행위
-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
-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되어왔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마.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제 5 조 전달·통보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신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수령인에게 요청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이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가. 모든 문서를 전달하거나

나. 모든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피요청 당국에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취한다.

문서의 전달 또는 결정의 통보에 대한 요청은 서면으로 피요청 당국의 공식 언어 또는 그 당국에 수용 가능한 언어로 한다.

제 6 조

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의정서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그 요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그 요청에 첨부된다. 사태의 긴급성으로 인해 필요한 때에는, 구두요청도 수용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요청 당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과 이유

라. 관련된 법 또는 규정과 그 밖의 법적 요소

마. 조사의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

바. 관련 사실과 이미 수행된 조사의 요약

3. 요청은 피요청 당국의 공식 언어 또는 그 당국에 수용 가능한 언어로 제출 된다.

4. 요청이 위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 정정 또는 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 그동안, 사전예방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제 7 조

요청의 수행

1. 피요청 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신의 다른 당국의 요청을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과 이용 가능한 자원의 한도 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수행한다. 이 규정은 피요청 당국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 피요청 당국에 의해 그 요청이 전달된 그 밖의 모든 당국에도 적용된다.

2. 지원요청은 피요청 당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3.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 공무원은 이 의정서의 목적상 지원 요청 당국이 필요로 하는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와 그 당사자에 의해 설정된 조건하에, 제1항에 따라 피요청 당국의 사무실 또는 그 밖의 다른 관계 당국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4.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당사자 공무원은, 관련된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와 그 당사자에 의해 설정된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 8 조

정보전달의 형태

1. 피요청 당국은 관련 문서, 인증사본, 또는 그 밖의 자료와 함께 조사 결과를 지원 요청 당국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2. 이 정보는 전산화된 형태일 수 있다.

3. 원본문서는 인증사본이 불충분할 경우, 요청에 의해서만 전달된다. 이 원본은 가능한 조기에 반환된다.

제 9 조

지원을 제공할 의무에 대한 예외

1. 당사자가 이 의정서에 따른 지원이 다음에 해당한다는 의견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가. 이 의정서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주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나. 특히 제10조제2항에 언급된 사례에서, 공공정책, 안보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다.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한다.

2. 지원은 진행 중인 조사, 기소, 또는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피요청 당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 당국과 협의한다.

3. 요청 당국이 그렇게 요청받을 경우 그 자신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당국은 자신의 지원요청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그러한 지원요청에 어떻게 응할지는 피요청 당국이 결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에, 피요청 당국의 결정과 그 이유는 지체없이 지원요청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 10 조

정보 교환 및 비밀유지

1. 이 의정서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되는 정보는 각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 성격의 것이 된다. 교환되는 정보는 공식적인 비밀 준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며, 정보를 받은 당사자의 관련 법과 유럽연합 당국에 적용되는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2. 개인 자료는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내에서 그 특정한 사례에 적용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3. 이 의정서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개시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증거의 기록, 보고서 및 증언에서와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고소에서,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참조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그 문서에 대해 접근을 제공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사용에 대해 통보받는다.

4. 획득된 정보는 오로지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는다. 그러한 사용은 그 당국에 의해 규정된 모든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제 11 조 전문가 및 증인

피요청 당국의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사안과 관련된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 소송에 필요한 물품, 문서 또는 그 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출석요청은 어느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해야 할 것인지와 어떠한 직위와 자격으로 신문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제 12 조 지원비용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및 증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서로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를 포기한다.

제 13 조 이 행

1. 이 의정서의 이행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집행위원회의 권한 있는 기관과, 적절한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위임된다. 그들은 특히 자료 보호 분야에서의 발효 중인 규칙을 고려하여 이 의정서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와 방안을 결정한다. 그들은 이 의정서에 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개정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서로 협의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이행 세부규칙을 추후 서로 통보한다.

제 14 조

다른 협정

1.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은

가. 그 밖의 국제 협정이나 협약상의 양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대한민국과 개별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수 있는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에 대해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다. 이 의정서에 따라 획득된 것으로서 유럽연합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관하여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 간 전달을 규율하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이 대한민국과 개별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수 있는 상호지원에 관한 양자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이 의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3. 이 의정서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이 협정 제6.16조(관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의 틀 내에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다.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양 당사자는,

2005년 10월 20일 파리에서 채택되고 2007년 3월 18일 발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유네스코 협약”)을 제15.10조(발효)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유네스코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그 이행의 틀 내에서 협력할 의도로 그 협약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협약의 규정들과 맞는 조치를 개발하고,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다면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이 협정에 의해 지지되는 과정이 공평한 성장과 양 당사자 간의 경제, 무역 및 문화 협력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이 의정서의 목적이 다음을 위하여 다른 체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및 미래의 정책 수단에 의해 보완되고 지지됨을 상기하면서,

가. 양 당사자의 문화 산업의 역량과 독립성의 강화

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의 진흥

다. 문화간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보호 및 증진, 그리고

라. 문화유산의 인정, 보호 및 증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방민의 인정 증진과 문화 정체성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유산의 가치의 인정

양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안별로, 특히 각국의 문화산업 발전 정도, 문화교류의 수준과 구조적인 불균형, 그리고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적용범위·목적 및 정의

1.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의정서는 양 당사자가 특히 시청각 분야를 포함하여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틀을 마련한다.

2.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이 이 의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3조 및 제3조의2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한다.

3.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역량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를 규율하는 조건을 개선하고 교류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비대칭적 패턴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이 의정서의 목적상,

문화적 다양성, 문화 콘텐츠,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은 유네스코 협약에서 정의되고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 전문가 및 실연자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자연인을 말

한다.

제 1 절 수평적 규정

제 2 조 문화 교류 및 대화

1.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결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육성하고, 자신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의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양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모범 관행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시청각 사안에 관해서 대화를 통해 공동 이해의 발전과 제고된 정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 대화는 적절한 경우와 시기에 그 밖의 관련 포럼에서뿐만 아니라 문화협력 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제 3 조 문화협력 위원회

1. 이 의정서가 적용된 후 6개월 이내에 문화협력 위원회가 설치된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문화적 사안 및 관행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각 당사자의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문화협력 위원회는 이 의정서가 적용된 후 1년 이내에,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제15장(제도·일반 및 최종 규정)의 제도적 규정을 이탈하여,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그러한 기능이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관련되는 경우 문화협력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관하여 무역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와의 국내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신의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5.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 및 시청각 대표자들로 구성된 문화협력에 관한 국내자문그룹을 설치한다.

6.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심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이후 신속하게 회합하여 그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함에 있어 문화협력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자의 국내자문그룹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자문그룹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 3 조의 2

분쟁해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이 의정서 제3조제6항에서 언급된 사안이 그 조항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14장(분쟁해결)이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 가. 무역위원회에 대한 제14장(분쟁해결)의 모든 언급은 문화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나.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의 목적상,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중재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가 중재패널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추첨에 의한 선정은 제14.18조(중재인 명부)에 따라 작성된 명부가 아니라 다호에 따라 작성된 명부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 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설립 후 신속하게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할 개인 5인을 추천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어느 쪽 당사자의 국민도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으로 활동할 개인 5인을 선정한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명부가 항상 이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중재인은 이 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지식 및 경험을 가진다.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분쟁에 관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를 준수한다.
- 라.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제14.11조(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제2항에 따라 정지할 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만 정지시킬 수 있다.
- 마. 제14.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 외의 분쟁에서 정지할 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

제 4 조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1. 양 당사자는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약속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의 그들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에 관여된,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예술가, 배우, 기술자, 그리고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또는

나. 그 밖의 다른 활동 중에서 예를 들어, 음악 녹음과 같은 문화활동에 관여하거나 문학 박람회 및 축제 같은 문화행사에 적극 기여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시각, 조형 및 공연 예술가와 지휘자, 작곡가, 작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자와 그 밖의 유사한 전문가 및 실연자와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다만, 이들이 일반 공중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자신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데 종사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예술가 또는 그 밖의 문화전문가 또는 실연자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지 아니한 법인과 그 당사자 내의 소비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틀 내에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는, 허용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중 90일까지의 기간 동안이다.

3.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의 훈련 및 그들 간의 접촉 증대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구성원

나.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

다. 서커스, 놀이공원 및 유사한 고객유인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그리고

라. 사교무도장 또는 디스코장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그리고 무용 교습가

제 2 절 분야별 규정

제 1 관 시청각물 관련 규정

제 5 조 시청각 공동제작물

1. 이 의정서의 목적상, **공동제작물**이란 이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 양측의 제작자가 투자하여 제작한 시청각물을 말한다.¹⁾

2.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간 새로운 공동제작협정의 교섭과 기존 공동제작협정의 이행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과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련된 양자간 공동제작협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자는 공동제작물에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1)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공동제작물에 대한 인정절차가 있다. 이 인정절차는 공동제작물이 제6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점검에 한정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부여될 것이다.

유럽연합 당사자의 제작자간 공동제작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4.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지침 2007/65/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89/552/EEC의 제4.1조 및 제3i.1조, 또는 그 후속 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청각물 진흥을 위한 요건의 목적상, 지침 2007/65/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89/552/EEC의 제1(n)(i)조, 또는 그 후속 개정에 따라 유럽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제3항에서 언급된 유럽연합 당사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²⁾

5.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9676호, 2009.5.21.) 제40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방송법*(법률 제9280호, 2008.12.31.) 제71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 2008.12.31.)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대한민국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제3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지방/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³⁾

6.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은 다음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

가.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에 의하여,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각각에 의하여, 직접적으로인지 또는 다수지분에 의한 것인지 관계없이, 소유되고 그 소유가 지속되는 기업 간 실현된다.

나. 공동제작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소유하며 그 영역 내에 거주함을 입증할 수 있다.

다.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각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2개국의 제작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애니메이션물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3개국으로부터의 제작자 참여가 필요할

2) 법령의 개정은 제10항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앞의 주석과 동일

것이다.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제작자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10퍼센트 미만인 것이 아니다.

라.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작자(모두 합하여)와 유럽연합 당사자의 제작자(모두 합하여) 각각의 최소 재정적 기여는 시청각제작물 총 제작비용의 30퍼센트 미만일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여는 총 제작비용의 35퍼센트 미만일 수 없다.

마. 각 당사자의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여는 효과적인 기술적 및 예술적 참여를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기여 간 균형이 보장된다. 특히,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서 각 당사자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2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총 기여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1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총 기여의 6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다.

바.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제3국 제작자의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참여는 가능한 경우 총 제작비용 그리고/또는 시청각물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의 최대 20퍼센트까지 수용된다.

7. 양 당사자는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는 상호 혜택을 보장한다는 것과 제6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물이 제6항의 기준에 추가적인 어떠한 조건 없이 제4항 및 제5항 각각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유럽 작품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8. 가.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는 이 의정서 적용 후 3년의 기간 동안 설정된다. 국내자문그룹의 자문에 따라,

그 만료 6개월 전에, 문화협력 위원회는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공동제작물에 대한 호혜적인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격 부여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율할 것이다.

- 나. 이 자격 부여는 3년의 존속기간으로 갱신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최초 또는 차후 기간의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자격 부여를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동일한 존속 기간만큼 추가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각 갱신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문화협력 위원회는 가호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평가를 시행할 것이다.
- 다. 양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영역에서 이러한 공동제작물의 첫 번째 방송 또는 상영일이 관련 기간의 만료일이전이면, 그러한 자격 부여의 종료는, 제6항의 조건에 따라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공동제작물이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9.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의 존속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특히 국내자문그룹을 통하여 제6항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문화협력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 그리고/또는 제6항에서 언급된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10.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동제작물을 위한 권리가 이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법령 변경의 결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언급된 자신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을 2개월 전 사전 통지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를 하기 전에, 통지하는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법령 변경의 성격 및 효과를 다른 쪽 당사자와 논의하고 검토한다.

제 6 조

그 밖의 시청각 협력

1. 양 당사자는 축제, 세미나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조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시청각물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제2조제2항에 언급된 대화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방송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

가. 권한 있는 당국 간 방송 정책 및 규제의 틀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교류 증진

나. 방송 산업간 협력 및 교류 장려

다. 시청각물의 교류 장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송 행사 방문 및 참여의 장려

3. 양 당사자는 시청각 기술의 양립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표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한다.

4. 양 당사자는 시청각물을 창작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악기 및 스튜디오 녹음 장비와 같은 기술 자재 및 장비의 대여와 임차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5. 양 당사자는 시청각 기록보존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7 조

시청각물 촬영 목적을 위한 자재 및 장비의 일시적 수입

1.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 목적을 위한 장소로서 각 당사자의 영역을 홍보하는 것을 장려한다.
2. 이 협정의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문화전 문가 및 실연자가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재 및 장비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검토하고 허용한다.

제 2 관

시청각 외 문화 분야의 증진

제 8 조

공연 예술

1. 양 당사자는 특히 오디션 참여, 네트워크의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의 증진을 포함하여 전문가 교류 및 훈련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연 예술의 실연자 간 접촉 증대를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촉진한다.
2.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 제작자와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제작자간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공동 제작을 장려한다.
3. 양 당사자는 적절한 표준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극장기술표준의 개발과 극장 무대 표시의 사용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을 촉진한다.

제 9 조

출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의 출판물 교류 및 전파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가. 박람회, 세미나, 문학 행사, 그리고 공공 독서용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 출판과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행사의 조직

나. 공동출판 및 번역의 촉진, 그리고

다. 사서, 작가, 번역가, 도서관매자 및 출판업자를 위한 전문가 교류와 훈련의 촉진

제 10 조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

양 당사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보호 사업을 유념하면서, 전문가 교류, 전문가 훈련에 대한 협력, 지역민의 인식 제고의 촉진과, 역사적 기념물과 보존 지역의 보호와 문화재와 관련된 조치, 특히 문화재를 지방 생활의 일부로 통합하는 조치의 입법과 이행에 대한 자문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문가의 교류와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우수 관행의 교환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서의 자신의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적절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장려한다.

